

기업의 준조세 실태와 정책방향

2010. 12

손원익

기업의 준조세 실태와 정책방향

2010. 12

손 원 익

서 언

과거에는 정부의 역할이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의 직접적인 공급자였지만 경제의 규모가 팽창하고 사회가 다변화된 현대는 제3자가 제공하는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의 구매자로서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예산외 지출이 증가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정부지출로부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야기되었다. 각국의 예산당국도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관련 제도를 구상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예산외 지출을 위한 재원으로 부담금과 같은 형태의 조세 이외 부담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이 준조세의 범주에 포함된다. 조세 이외의 부담은 기업에는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어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조세 이외의 부담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작업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행되었으며, 특히 준조세를 구성하는 각종 부담의 범위와 그 규모를 중립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업들이 지출하는 기부금의 자발성을 측정하여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 비중을 구하고, 이를 토대로 준조세에 포함되는 기부금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두 차례에 걸쳐 이미 수행한 손원익 외(1998), 손원익 외(2004)의 후속연구로 지난 연구의 내용을 개선하고 준조세의 규모를 최근의 자료로 업데이트하여 2009년 기준 준조세의 규모를 산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도출된 정책시사점을 반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부담금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부담금을 조세로 전환하는 등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부과를 확대하고, 동시에 지출도 예산의 틀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 부과와 지출 모두 근거가 명확해지고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본원의 손원익 선임연구위원이 수행하였으며, 저자는 방대한 규모의 자료수집과 정리에 노력한 남 희 연구원과 안상숙 주임행정원에게 사의를 표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0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원 윤 희

요약 및 정책시사점

현대 예산제도의 특징은 예산제도의 역할이 재정통제에서 재정사업 등 정책 구상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산의 지출의 수단을 활용하기 위한 재원으로 정부는 각종 부담금 성격의 부담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성격의 부담이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준조세의 성격과 매우 유사하다. 즉,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준조세는 예산외의 지출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 이외의 부담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조세 이외의 부담에 해당하는 준조세의 실태를 분석하고, 준조세의 범위를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여 그 규모를 산출하였다. 준조세가 GDP 및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변화추이를 분석하였으며, 준조세가 법인세수 및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분석하여 조금 더 미시적으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준조세의 부담규모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비자발적인 기부금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 규모를 산출하였다.

조세 이외의 모든 부담을 포함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사회보험의 사업주 부담분, 부담금 및 비자발적인 기부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을 기준으로 그 규모를 산출하였다.

사회보험의 경우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을 모두 합하고 소득공제를 고려하

면 20조 7,167억원에 이른다. 또한 부담금의 경우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담금의 총합계에서 소득공제를 고려하면 11조 5,477억원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기부한 기부금 중 설문조사 결과 비자발적으로 나타난 비중에 해당하는 준조세성 기부금의 규모는 비자발성의 범위에 따라 943억원 또는 3,573억원에 이른다. 이를 모두 합하면 광의의 준조세 규모는 32조 3,587억원 또는 32조 6,217억원에 달함을 알 수 있다.

협의를 준조세는 광의의 준조세에서 사업자의 부담이 1)사업자가 받게 되는 이득에 대한 보상이 아니며, 2)사업자의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닌 것으로 정의된다. 이 정의에 따르면 협의로 준조세에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부담금(부담금, 분담금, 부과금, 부가금, 예치금, 기금출연금, 기여금 등) 중 수익자 부담이나 원인자 부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사회보험료 중 기업의 부담분, 비자발적 기부금이 포함된다. 협의의 준조세 정의를 기준으로 준조세 규모를 산출하면 부담금 2조 3,822억원, 사회보험 사업주 부담분 20조 7,167억원, 비자발적 기부금 943억원 또는 3,573억원으로 총 23조 1,932억원 또는 23조 4,562억원에 이르고 있다.

GDP 대비 준조세의 비중을 보면, 광의 및 협의의 준조세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에는 광의는 약 3.04%, 협의는 약 2.17%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법인세수 대비 준조세의 비중은 법인세수의 등락에 따라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광의의 경우 2007년 93.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 조세 이외의 부담이 거의 법인세수와 유사한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출 300억원 이상 상공회의소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부금 지출의 비자발성 정도를 파악하고, 실제 기부금 지출액 중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 규모를 추정하였다. 기부금 중 준조세 성격의 금액은 기부금 총액에 '완전 강제적'과 '다

소 강제적'이라고 응답한 업체 수의 비중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른 기부금에 비해 법정기부금이 상대적으로 비자발적이며, 지출동기가 '완전 강제적' 또는 '다소 강제적'이라는 의견은 법정기부금에서는 8.2%, 특례기부금에서는 2.5%, 지정기부금에서는 1.3%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비자발성을 '중립적'이라는 응답까지 확대하는 경우, 비자발성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경우 18.2%, 특례기부금은 12.2%, 지정기부금은 11.3%로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 기부금의 자발성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법정기부금의 경우 건설업에서 기부금의 강제성에 응답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기부금의 비자발성을 '다소 강제적' 이상으로 할 경우 건설업과 금융업에서 각각 6.1%, 6.5%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중립적'까지 포함하면 건설업의 경우 20.0%, 금융업의 경우 19.6%로 제조업 10.0%, 도소매업 12.5%에 비해 비자발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부금의 자발성을 법인규모별로 보면, '다소 강제적' 이상은 대기업의 경우 4.6%, 중소기업의 경우 1.9%의 비중을 보이고, '중립적' 까지 확대할 경우 대기업은 17%, 중소기업은 11.3%로 대기업의 비자발성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분야별로 기부금의 자발성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 기부 분야 중 가장 강제성이 높은 분야는 '환경 생태계 보전' 영역으로 '다소 강제적' 이상에 응답한 기업이 33.3%를 차지하며, '중립적'에 응답한 기업까지 포함하면, 전체 기부 기업의 44.4%가 기부금이 비자발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두번째로 강제성이 높은 분야는 '지역사회 발전' 영역으로 '다소 강제적' 이상으로 응답한 기업이 4.6%에 불과하지만, '중립적'까지 확대할 경우 33.5%의 기업이 해당 기부금이 비자발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지출 동기가 '완전 강제적' 또는 '다소 강제적'이라고 응답한 업체의 비중을 이용하여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을 추정하면 943억원에

이르고, 비자발적 기부금의 범위를 '중립적'으로 응답한 기부금으로 확대할 경우 준조세에 포함되는 기부금의 규모는 3,573억원에 해당한다. 이상에서 산출한 비자발적인 기부금의 규모를 앞에서 구한 준조세의 규모에 추가하여 최종 준조세의 규모를 산출하면 최대 32조 6,217억원에 이를 수 있다.

제Ⅱ장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를 조세 이외에 비자발적으로 기업이 지는 부담으로 정의하였지만, 수익자부담원칙 및 원인자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의 경우 외부효과의 교정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담으로 분류되고, 사회보험료의 경우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세 또는 유사한 형태로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요구되는 준조세 부담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면, 2009년 기준으로 볼 때 개선이 요구되는 준조세 부담의 규모는 2조 3,822억원 정도이며, 비자발적인 기부금의 규모를 추가하면 전체 규모가 2조 4,765억원 또는 2조 7,395억원에 해당한다.

개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준조세의 규모에서 제외하고 최종 준조세의 규모를 산출하면 최대 31조 6,708억원에 이른다. 개인 부담 부담금을 고려하지 않고 산출했을 경우의 32조 6,217억원과 비교하여 약 9,509억원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는 0.09%, 협의의 준조세는 0.02%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나 그 변화의 폭은 미미한 수준이다.

미시적인 시각에서 보면, 개선이 요구되는 협의의 준조세에 포함된 부담금에 대한 정책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며, 협의의 준조세에 포함되지 않는 부담금 운영이 도입 취지 및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역시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이 요구된다. 현재 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담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며, 부담금관리기본법 도입 이후 부담금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이 요구되는 부담금이 상당수 있으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개별 부담금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은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부담금운용평가단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별 부담금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였으며, 개선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부담금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부담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강증진부담금의 경우 부담금 부과 취지인 국민건강증진사업에는 31.3%가 사용되는 반면, 건강보험재정을 위해 51.7%가 사용되고 있고,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경우도 대부분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지만 보건복지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하므로 부담금보다는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도입 취지를 보면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입 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부담금의 취지가 구체적이지 못하여 부담금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또한 부과대상을 보면, 시설물 사용자가 아닌 시설물 소유자가 부과대상이며, 경유자동차의 경우도 경유자동차 사용에 대한 부과가 아니고 소유에 대한 부과로 원인자부담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추가로 부과방법을 보면, 부담금 도입 취지에서 밝힌 오염 저감을 통한 환경개선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므로 본 부담금은 환경세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준조세를 축소하려는 노력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우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부담금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부담금을 조세로

전환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부과가 가능해지고, 동시에 지출도 예산의 틀 내에서 결정할 수 있어서 부과 및 지출 모두 근거가 명확해지고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 차

I. 서 론	21
II. 준조세의 개념 및 범위	25
1. 준조세의 개념	25
2. 준조세의 범위	28
III. 준조세의 분류 및 현황	32
1. 준조세의 분류	32
2. 부담금 현황	32
IV. 준조세의 규모	54
1. 준조세 규모 산출을 위한 부담금 분석	54
2. 준조세 규모 산출을 위한 사회보험료 분석	65
3. 2009년 준조세 규모 산출	75
4. 연도별 준조세 규모 산출 및 추이 분석	78
가. 사회보험료 제외	78
나. 사회보험료 포함	87
V. 기부금의 비자발성 조사	95
1. 기업의 기부금 실태조사	95
가. 실태조사 개요	95
나. 실태조사 결과	101
다. 준조세 산출	122

라. 개인부담을 고려한 준조세	125
VI. 요약 및 정책방향	140
참고문헌	146
〈부록〉 기업의 기부금 실태조사 설문 결과	148
1. 기부금별 설문 결과	148
가. 법정기부금	148
나. 특례기부금	150
다. 지정기부금	152
2. 기부금의 분야별 지출현황	156
가. Giving USA	160
나. 전경련 「사회공헌백서」	162
다. 아름다운재단	165
3. 기업의 기부금 실태조사 설문지	168

표 목 차

〈표 II-1〉 광의의 준조세의 종류	30
〈표 II-2〉 협의의 준조세의 종류	30
〈표 III-1〉 연도별 부담금 신설·폐지 현황	33
〈표 III-2〉 부처별 부담금 수	34
〈표 III-3〉 연도별 부담금 징수 규모	35
〈표 III-4〉 2009년 징수액 변동 내역	37
〈표 III-5〉 2007년 징수액 변동 내역	40
〈표 III-6〉 연도별 부담금 폐지 현황	41
〈표 III-7〉 GDP 대비 조세 비중의 증가율과 GDP 대비 부담금 비중의 증가율	43
〈표 III-8〉 부처별 부담금 징수실적 현황(2008~2009년)	45
〈표 III-9〉 지식경제부 귀속 부담금	46
〈표 III-10〉 보건복지부 귀속 부담금	47
〈표 III-11〉 귀속에 따른 부담금 분류(2009)	48
〈표 III-12〉 귀속주체별 부담금(2009)	51
〈표 III-13〉 분야별 부담금 사용추이	53
〈표 IV-1〉 연도별 부담금 징수액 추이	55
〈표 IV-2〉 각 부담금의 준조세 판단 근거	63
〈표 IV-3〉 연도별 산재보험 징수실적	66
〈표 IV-4〉 연도별 고용보험 징수실적(Ⅰ)	67
〈표 IV-5〉 연도별 고용보험료 징수실적(Ⅱ)	68

<표 IV-6>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법(2009년)	69
<표 IV-7> 연도별 건강보험 총보험료 현황	69
<표 IV-8> 연도별 건강보험 사업주 부담분 현황	70
<표 IV-9> 연도별 국민연금 징수실적	71
<표 IV-10> 연도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징수 현황	71
<표 IV-11>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	72
<표 IV-12>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징수 현황	73
<표 IV-13> 장기요양보험 사업장 가입자 징수 현황	73
<표 IV-14>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규모(2009년)	74
<표 IV-15> 연도별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규모	74
<표 IV-16> 준조세 규모(2009년)	75
<표 IV-17> 연도별 법인세율 현황	76
<표 IV-18> 법인세를 고려한 사회보험료의 준조세 규모(2009년)	76
<표 IV-19> 준조세에 해당하는 부담금 규모(2009년)	77
<표 IV-20> 법인세를 감안한 부담금 규모(2009년)	77
<표 IV-21> 연도별 준조세(사회보험료 제외) 징수액 추이	78
<표 IV-22> 연도별 준조세(사회보험료 제외) 징수액 증가율 추이	79
<표 IV-23> 정부의 세수 및 GDP에서 준조세(사회보험료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	81
<표 IV-24> 법인세를 감안한 연도별 준조세(사회보험료 제외) 징수액 증가율 추이	81
<표 IV-25> 정부의 세수 및 GDP 대비 법인세를 감안한 준조세 (사회보험료 제외)의 비중	83
<표 IV-26> 통합재정 세입 및 국세 대비 법인세를 감안한 준조세 (사회보험료 제외)의 비중	84
<표 IV-27> 법인세 징수액 대비 법인세를 감안한 준조세 (사회보험료 제외)의 비중	85

〈표 IV-28〉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 대비 법인세를 감안한 준조세 (사회보험료 제외)의 비중	86
〈표 IV-29〉 각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대비 준조세(사회보험료 제외) 의 비중	86
〈표 IV-30〉 연도별 준조세 징수액 추이	87
〈표 IV-31〉 연도별 준조세 징수액 추이(사회보험료 포함)	87
〈표 IV-32〉 법인세를 감안한 연도별 사회보험료의 준조세 규모 · 88	
〈표 IV-33〉 법인세를 감안한 연도별 준조세 규모(사회보험료 제외)	88
〈표 IV-34〉 법인세를 감안한 연도별 준조세(사회보험료 포함) 징수액 추이	89
〈표 IV-35〉 법인세를 감안한 연도별 준조세(사회보험료 포함) 징수액 증가율 추이	89
〈표 IV-36〉 정부의 세수 및 GDP 대비 준조세(사회보험료 포함)의 비중	91
〈표 IV-37〉 통합재정 세입 및 국세 대비 준조세(사회보험료 포함)의 비중	92
〈표 IV-38〉 법인세 징수액 대비 준조세(사회보험료 포함)의 비중 · 93	
〈표 IV-39〉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 대비 준조세(사회보험료 포함)의 비중	94
〈표 IV-40〉 각 사업연도 당기순이익(흑자법인) 대비 준조세 (사회보험료 포함)의 비중	94
〈표 V-1〉 준조세 설문조사 개요 비교	95
〈표 V-2〉 설문조사 표본집단 구성	96
〈표 V-3〉 2010년 업종 및 기업형태별 응답자 특성	97
〈표 V-4〉 2010년 조사대상 기업 현황	98
〈표 V-5〉 2004년 조사대상기업 현황	99

〈표 V-6〉 2010년과 2004년 조사대상 기업 현황	100
〈표 V-7〉 기부금 수혜단체의 특성	101
〈표 V-8〉 손금산입대상 기부금의 조사기업 결과	102
〈표 V-9〉 기부금별 자발성 결과(2010년)	103
〈표 V-10〉 기부금별 자발성 결과(2004년)	104
〈표 V-11〉 법정기부금 유형별 자발성 결과(2010)	105
〈표 V-12〉 2004년과 2010년 법정기부금의 지출항목별 기부금 및 강제성 정도	106
〈표 V-13〉 특례기부금의 유형별 자발성 결과(2010)	108
〈표 V-14〉 손금산입 대상 특례기부금의 지출항목별 기부금 및 강제성 정도(2004년)	109
〈표 V-15〉 지정기부금의 유형별 자발성 결과(2010)	110
〈표 V-16〉 손금산입 대상 지정기부금의 지출항목별 기부금 및 강제성 정도(2004년)	111
〈표 V-17〉 업종별 자발성 결과	112
〈표 V-18〉 법인규모별 자발성 결과	113
〈표 V-19〉 상장·비상장별 자발성 결과	114
〈표 V-20〉 기업의 기부 결정과 세제혜택의 관계 설문조사 결과	115
〈표 V-21〉 기부금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지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117
〈표 V-22〉 분야별 기부금에 대한 빈도와 비율	119
〈표 V-23〉 분야별 자발성 설문조사 결과	120
〈표 V-24〉 강제적 성격의 기부금 규모(완전강제적·다소강제적) (2009년)	122
〈표 V-25〉 강제적 성격의 기부금 규모(완전강제적·다소강제적· 중립적)(2009년)	123
〈표 V-26〉 강제적 성격의 기부금 규모(2009년)	124
〈표 V-27〉 기부금을 고려한 준조세 규모(2009년)	124

〈표 V-28〉 개인 부담 부담금(2009년)	126
〈표 V-29〉 해외여행 주목적(2005~2008년)	132
〈표 V-30〉 계약종별 판매수입(2009년)	133
〈표 V-31〉 개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감안한 준조세 규모(2009년) ·	135
〈표 V-32〉 준조세에 해당하는 부담금 규모(2009년)	136
〈표 IV-33〉 법인세를 감안한 부담금 규모(2009년)	136
〈표 V-34〉 정부의 세수 · GDP · 국세 대비 법인세를 감안한 준조세(사회보험료 제외)의 비중(2009년)	137
〈표 V-35〉 정부의 세수 · GDP · 국세 대비 법인세를 감안한 준조세(사회보험료 포함)의 비중(2009년)	138
〈표 V-36〉 강제적 성격의 기부금 규모(2009년)	138
〈표 V-37〉 기부금을 고려한 준조세 규모(2009년)	139
〈부표 1〉 법정기부금의 납부기업 결과	148
〈부표 2〉 법정기부금 자발성 설문조사 결과	149
〈부표 3〉 특례기부금의 납부기업 결과	150
〈부표 4〉 특례기부금 자발성 설문조사 결과	151
〈부표 5〉 지정기부금의 응답기업 구성	152
〈부표 6〉 지정기부금 자발성 설문조사 결과	153
〈부표 7〉 각각의 기부금으로 분류된 업종별 자발성 결과	154
〈부표 8〉 각각의 기부금으로 분류된 법인 규모별 자발성 결과 ·	155
〈부표 9〉 각각의 기부금으로 분류된 상장 · 비상장별 자발성 결과 ·	155
〈부표 10〉 분야별 기부금 지출금액	157
〈부표 11〉 분야별 기부금 지출 비율	159
〈부표 12〉 미국의 분야별 기부 비율	161
〈부표 13〉 미국과 한국 기업의 분야별 기부 비율 비교 (Giving USA, 한국조세연구원)	161
〈부표 14〉 분야별 기업기부 현황(2008)	162

〈부표 15〉 기업기부의 분야별 지출액 비중(2008)	163
〈부표 16〉 설문조사 결과 비교(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조세연구원)	164
〈부표 17〉 개인의 기부 분야	165
〈부표 18〉 개인의 기부 분야 (특정 분야 제외)	166
〈부표 19〉 개인과 기업의 기부 분야 비교	167

그림목차

[그림 II-1] 준조세의 범위	31
[그림 III-1] GDP 대비 조세 비중의 증가율과 GDP 대비 부담금 비중의 증가율	44
[그림 III-2] GDP 대비 조세 비중과 GDP 대비 부담금 비중	44
[그림 IV-1] 연도별 준조세(사회보험료 제외) 추이	79
[그림 IV-2] 연도별 준조세(사회보험료 제외) 증가율 추이	80
[그림 IV-3] 연도별 준조세(사회보험료 제외) 징수액 증가율 추이 ···	82
[그림 IV-4] 조세 및 GDP 대비 법인세를 감안한 준조세 (사회보험료 제외) 비중의 변화	83
[그림 IV-5] 법인세를 감안한 연도별 준조세(사회보험료 포함) 징수액 증가율 추이	90
[그림 IV-6] 조세 및 GDP 대비 준조세(사회보험료 포함) 비중의 변화	91
[부그림 1] 분야별 기부금 지출금액	156
[부그림 2] 미국 기업의 분야별 기부현황(n=197)	160

I. 서론

현대의 예산제도(modern budget systems)는 19세기 말에 유럽에서 도입되었고, 미국에서는 20세기 초에 도입되었다. 본 제도가 도입될 당시 제도 도입의 핵심적 목표는 재정통제(financial controls)에 있었다. 재정통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회계제도가 표준화되었고, 예산담당 공무원 조직이 구성되면서 각 정부부처의 지출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또한 공공기금의 운용에 대한 규정이 구체화되었으며, 감사절차도 개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195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재정통제를 위한 기본적인 요구조건들이 충족되었다.

예산제도의 기본목표가 달성된 상황에서 보다 더 야심찬 목표가 제시되었고, 이를 예산제도를 통해 달성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예를 들면, 추가적인 목표로 경제안정화 또는 재정사업계획 등이 해당된다. 계획재정사업 예산편성(planning programming budget: PPB) 등과 같은 당시 선진화된 예산제도 상의 테크닉은 예산제도의 주요 목표가 재정통제(financial control)에서 정책형성(policy formulation)으로 전환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경제환경의 변화와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들로 인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재편성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정부 예산담당자들은 재정통제가 현대 정부의 여러 조건들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었다.

예산이 지출을 통제하기보다는 지출이 예산을 통제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되었다. 즉, 예산제도가 재정통제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제도 내에서 재정과 관련된 결정이 이루어지고 집행되어야만 한

다. 그러나 예산제도 밖에서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집행되는 예산외 지출(off-budget expenditure)의 경우 예산제도의 재정통제 기능이 상실된다. 많은 국가들이 예산외 지출을 활용하게 되었으며, 그 수단으로 공기업, 정부대출, 규제정책, 조세감면 등이 활용되고 있다.

Schick(2007)에 의하면 예산외 지출이 증가하여 온 이유는 정부의 역할이 공공서비스 제공자에서 제3자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매자 및 소득 재분배자로 전환되어 온 것과 관련이 있다. 즉, 정부의 모든 지출이 예산통제하에 이루어진다면, 정부지출의 재원은 조세로 국한될 것이며, 정부지출에 대한 모든 비용 역시 정부 내로 국한될 것이다. 만일 정부의 사업이 공기업에 의해서 수행되는 경우, 비용이 내재화된다면 공기업의 서비스 사용자(users)가 비용을 부담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의 비용이 내재화되지 않고 공기업이 저금리 대출 등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은 납세자 또는 저금리 대출을 희망하는 다른 사업자에게로 전가되는 사회적 비용(social costs)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야기된다.

예산외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환경과 정부 역할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예산외 지출을 모두 예산제도의 틀 속으로 포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예산제도와 관련된 선진국들의 최근 동향을 보면, 직면하고 있는 경제환경과 정부 역할에 부응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 및 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예산외 지출의 수단을 활용하기 위한 재원으로 정부는 각종 부담금 성격의 부담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성격의 부담이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준조세의 성격과 매우 유사하다. 즉,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준조세는 예산외의 지출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 이외의 부담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세 이외의 부담과 관련된 예산외의 지출에 대하여 각국

에서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주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학문적 연구가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예산 이외의 지출과 관련된 연구는 어느 정도 있으나 조세 이외의 부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즉, 다른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의 부담이 조세의 형태로 부과되거나, 조세이외의 부담이 우리나라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관심이 크지 않고, 그 결과 관련된 연구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조세 이외의 부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커서 준조세에 대하여 수천 건의 언론 기사가 검색될 정도로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방대한 자료에 대한 수집과 분석이 요구되고, 또 준조세의 범위에 대한 정의가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차별화되는 등 문제가 있어서 학문적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 중립적인 시각에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손원익 외(1998)가 수행되었고, 손원익 외(2004)의 후속연구도 있었다.

기존에 수행된 준조세와 관련된 연구를 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손원익 외(2004)에서 정의한 준조세의 범위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거나 법적인 측면에서의 보완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신중익(2006)은 모든 준조세를 한 부처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신영수(2007)의 경우 각종 부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고용이(2008)는 전경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개별 부담금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데 전경련 실태조사의 경우 회원사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기부금과 성금을 모두 준조세에 포함하여 실제 규모보다 과다하게 산출된 측면이 있다.

손원익 외(2004)가 발표된 이후 수행되었던 준조세 관련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지난 연구가 수행된 지 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으며

로 그 기간 동안 2002년부터 시행된 부담금관리기본법의 효과가 관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준조세의 개념과 범위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교한 시각으로 논의한다. 제Ⅲ장에서는 준조세를 구성하는 부담금을 위주로 그 실태를 파악한다. 제Ⅳ장에서는 부담금과 사회보험을 구분하여 그 규모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산출과정을 소개한다. 제Ⅴ장에서는 기부금의 비자발성을 측정하여 준조세 성격에 해당하는 기부금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소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준조세의 성격에 해당하는 기부금의 규모를 산출한다. 제Ⅵ장에서는 전체 보고서를 요약하고 정책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Ⅱ. 준조세의 개념 및 범위

1. 준조세의 개념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준조세는 '조세 이외의 부담'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준조세를 "부담하지 말아야 할 불법적 또는 부적절한 조세 이외의 부담"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준조세의 의미를 해석할 경우 관련된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준조세의 규모를 산출하는 연구는 거의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준조세의 개념 및 범위를 정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준조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이 혼용되고 있어 준조세의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절에서 논의하는 준조세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정의는 손원익 외(2004)의 결과를 준용하였다.

준조세의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전에 준조세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개념들에 대해 논의한다. 준조세와 관련된 개념으로 흔히 사용되는 용어로는 부담금, 분담금, 공과금, 부과금, 예치금, 기금출연금, 기여금, 기부금, 성금 등이 있다. 이들 중 부담금, 분담금, 공과금, 부과금, 예치금, 기금출연금, 기여금 등은 의무가 법령에 의해 정해지지만, 기부금과 성금에 대한 의무는 법령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기부금과 성금의 경우에도 권유 등의 방법으로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선 준조세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담금에 대한 법률적 정의 및 특징에 대하여 알아본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부담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적 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을 제외한다)”로 정의되고 있다. 부담금의 특징이 잘 반영된 또 다른 정의로 이상우·임혁진(1995)에 따르면 부담금은 “특정의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라고 정의하고 있다.

부담금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담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부과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부담금은 강제성을 띠게 되며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강제적으로 한다는 면에서는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둘째,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는 특징을 가지므로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일반적인 정부사업을 위하여 일반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셋째, 개별 경제주체가 부담하게 되는 부담금의 규모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나 사업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데 비하여 조세는 담세 능력을 바탕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조세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특정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목적세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업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부담금과는 구분된다.

넷째,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된 금전적 부담이라는 특징이 있으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II. 준조세와 개념 및 범위 27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되는 금전적 부담은 부담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담금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거나 부담금에 포함되는 용어로는 분담금, 부과금, 부가금, 예치금, 기금출연금, 기여금 등이 있다. 분담금으로는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분담금,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방제분담금(해양환경관리법)등이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관리대상으로 되어 있다.

부과금은 부담금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일정액의 금전적 부담을 의미하며, 이때 부과되는 금전적 부담은 거래의 총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부과금의 예로는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 대기배출부과금, 총량초과부과금, 재활용부과금 등이 관리대상으로 되어 있다.

부가금은 부과금과 거의 흡사한 성격을 가진 금전적 부담이지만 부담의 기준이 거래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부과금과 차별화되며 부가금의 대표적 예로는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들 수 있다.

부담금에 포함되는 또 다른 금전적 부담으로는 예치금이 있다. 예치금은 정부가 특정 행동을 강제하기 위하여 금전적 부담을 지게 한 다음 정부가 의도한 행동을 하게 될 경우 금전적 부담을 해지시켜 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소하천소요공사비예치금, 원상회복예치금, 복구예치금 등이 대표적 예치금에 해당된다.

여러 가지 기금출연금도 부담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부담금의 한 종류로 분류되며 대표적 기금출연금으로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금, 신용보증기금출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 한국화재보험협회출연금,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금 등이 해당된다.

기여금의 경우도 기금출연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이 이에 해당된다.

공과금이란 용어는 국세기본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의되는 개념으로,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에 의하면,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입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으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조세와는 엄격히 구분되며, 부담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고용주가 부담하게 되는 각종 사회보험료도 공과금에 속하며, 과태료, 벌금·과료, 범칙금, 가산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도 공과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수수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 대하여 제공하는 인적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요금”으로 정의(법제연구원, 2002)된다. 따라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띠지 않는 부담금과는 차별된다.

사용료의 경우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사용의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으로 정의(법제연구원, 2002)되므로 수수료와 같이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부담금과는 차별된다.

기부금은 “기업 등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타인에게 금전이나 기타 자산 또는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공여하거나 증여한 경우에 그 금전이나 기타 자산의 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을 말함”으로 정의(손원익 외, 1998)되고 있다. 기부금은 현금, 성금, 찬조금, 후원금 등으로도 표현되며, 이러한 명칭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자발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부금의 납부에 있어서 공권력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의뢰·권유 등의 방법에 의해 강제성을 띠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부금은 성격상 부담금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2. 준조세의 범위

준조세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로 기업이 지게 되는 조세 이외의 부담과 관련된 개념으로 학문적 근거 또는 실정법에 기초하여 사

II. 준조세와 개념 및 범위 29

용되는 용어는 아니다.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생산비용 이외에 조세나 조세를 제외한 여러 가지 부담을 지게 되는데, 만약 조세를 제외한 여러 가지 부담이 강제성을 가지게 된다면 기업에게는 생산비용과 같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준조세를 정의하면, 기업의 부담이 강제성을 띠는지 여부와 직접적 반대급부의 성격을 띠는지의 여부가 준조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준조세의 정의에 있어서 핵심 요건이 되는 '강제성'에는 부담의 성격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법령에서 명백히 정해지는 금전적 부담처럼 강제성의 정도가 매우 큰 경우도 있으나, 기부금과 같이 법령에서 정해지지 않는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띠는 경우도 있다. 법령에 의해 명백히 정해지지 않은 금전적 부담의 경우에는 기업이 체감하는 강제성의 정도를 판단하기란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강제성의 정도를 파악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지닌 부담을 준조세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기업의 부담에 초점을 맞추어 준조세를 정의할 경우 기업 부담의 성격에 따라 광의의 준조세와 협의의 준조세로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광의의 준조세는 기업이 순수한 생산비용 이외에 비자발적으로 지게 되는 금전적 부담에서 직접적 반대급부의 성격으로 부담하는 것과 과태료 성격의 부담을 제외한 모든 부담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광의의 준조세에 포함되는 금전적 부담으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각종 부담금(부담금, 분담금, 부과금, 부가금, 예치금, 기금출연금, 기여금 등), 각종 공과금,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 그리고 강제성을 띠는 기부금·성금 등이 해당된다. 사용료와 수수료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는 직접적인 이득에 대한 보상에 해당되므로 준조세에 포함되지 않고, 각종 공과금 중 과태료, 벌금·과료, 범칙금, 가산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은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므로 준조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부금의 경우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띠어야

준조세의 범위에 포함될 것인지는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기부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추정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1〉은 광의의 준조세에 포함되는 금전적 부담을 나타내고 있다.

〈표 II-1〉 광의의 준조세의 종류

준조세의 종류	세 부 내 용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부담금	각종 부담금, 분담금, 부과금, 부가금, 예치금, 기여금, 기금출연금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비자발적 기부금·성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강제성을 띤 정치자금 등

광의의 준조세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 범위를 축소하여 협의의 준조세를 정의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광의의 준조세 중 사업자의 부담이 1) 사업자가 받게 되는 이득에 대한 보상이 아니며, 2) 사업자의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닌 것을 협의의 준조세로 정의하고 있다. 협의의 준조세에 포함되는 금전적 부담은 다음 표와 같다.

〈표 II-2〉 협의의 준조세의 종류

준조세의 종류	세 부 내 용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부담금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부담금(부담금, 분담금, 부과금, 부가금, 예치금, 기금출연금, 기여금 등) 중 수익자 부담이나 원인자 부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의 고용주 부담분
비자발적 기부금·성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강제성을 띤 정치자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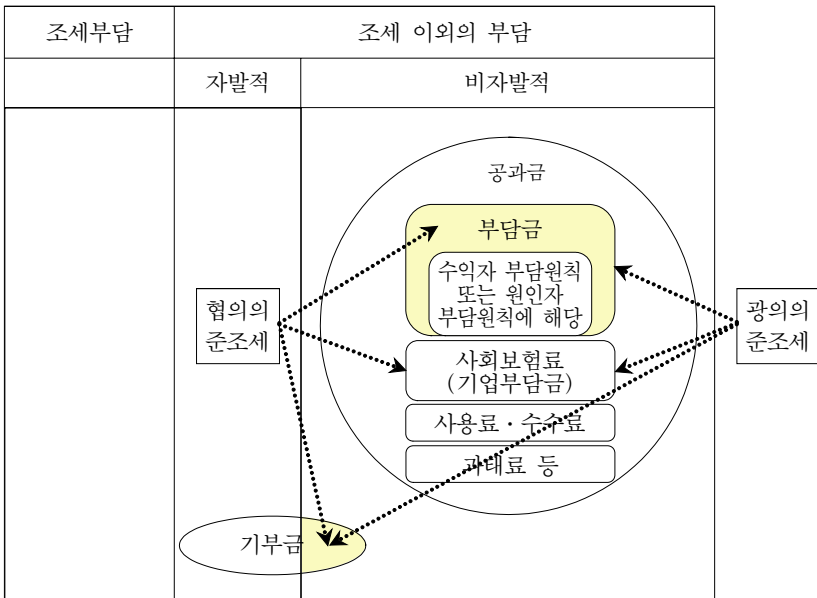
II. 준조세와 개념 및 범위 31

사용료와 수수료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는 직접적인 이득에 대한 보상에 해당되므로 협의의 준조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도 보험수혜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보험의 공급이라는 직접적인 이득에 대한 보상이므로 협의의 준조세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회보험료 중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기업이 얻게 되는 이득에 대한 보상이 아니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협의의 준조세에 해당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준조세의 정의는 절대적일 수 없으나, 앞에서 설명한 큰 틀 내에서 적절한 범위의 준조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에서 논의한 준조세의 범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II-1]과 같다.

[그림 II-1] 준조세의 범위

〈기업의 부담〉



- 주: 1. 사회보험료는 기업의 부담 부분만 광의 및 협의의 준조세에 해당됨
 2. 기부금, 성금 등은 강제성을 띠는 경우에만 준조세에 포함됨

Ⅲ. 준조세의 분류 및 현황

1. 준조세의 분류

준조세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담금은 성격, 사용용도, 소관부처 등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며 부담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부담금의 성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공공시설을 손괴한 자에게 그 수선·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손괴자 부담금)

둘째, 각종 시설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비용을 사용자에게서 징수하는 경우(이용자·원인자 부담금)

셋째, 공공시설로 인해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경우(수익자 부담금)

넷째, 해당사업의 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예치하고 복구 완료 후 반환하는 경우(예치금)

다섯째, 특정 공익사업을 수행하지만 부과대상과 사용내역 간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조세성 부담금)

2. 부담금 현황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2001년 12월 31일 개정·공포되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Ⅲ. 준조세의 분류 및 현황 33

〈표 Ⅲ-1〉 연도별 부담금 신설·폐지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담금은 1961년에 최초로 도입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며, 부담금관리기본법이 도입된 2002년 이후부터는 거의 일정한 수를 유지하고 있다. 1980년대에 부담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에는 62개의 부담금이 신설되어 가장 많은 부담금이 신설되었으며, 그 결과 총부담금 수가 부담금관리기본법 도입 직전인 2001년 말 기준 101개에 이르렀다. 부담금의 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도입 이후에는 거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며, 2000년대에는 100개를 기준으로 증감하고 있고, 2009년 말 현재 99개의 부담금이 운용되고 있다.

1998년 1개, 2001년 9개, 2002년 1개의 부담금이 폐지되었으나 신설되는 부담금이 더 많아서 부담금 수는 2002년까지 꾸준히 증가되었다. 2003년에는 부담금 평가에 따른 부담금 정비 결과 2004년 1월 1일 기준 운용·관리대상 부담금은 2002년보다 2개 감소한 100개가 되었다.

〈표 Ⅲ-1〉 연도별 부담금 신설·폐지 현황

(단위: 개)

	'60 년대	'70 년대	'80 년대	'90 년대	'00	'01	'02	'03	'04 ²⁾	'05	'06	'07	'08	'09 ¹⁾
증가	7	7	20	62	3	12	2	6	2	1	6	8	1	-
감소	-	-	-	1	-	9	1	8	-	1	8	6	2	2
누계	7	14	34	95	98	101	102	100	102	102	100	102	101	99

주: 1) '09년도 보고서는 예치금·보증금에 대해 현금예치 외에 보증보험, 공제조합 부담금 등을 포함하여 '09년도 및 그 이전의 부담금 수와 징수 실적을 산정

2) '04년 초 부담금 운용평가단의 평가 결과 '04년 1월 1일 부담금의 수는 100개로 감소했으나 농산물수입이익금(FTA법), 총량초과부담금(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07년부터 징수예정) 신설로 '04년 말 기준 102개

자료: 기획재정부, 『2009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10.

2003년도 부담금운용평가단의 평가 및 정비 결과 부담금운용평가단에서 건의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03년 12월 31일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반영되었다. 이를 통해 실효성을 상실한 부담금을 폐지하고, 개별법에서 이미 폐지되었거나 성격상 부담금에 해당하지 않는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삭제하였다. 그리고 사실상 부담금에 해당되는 기존의 6개 준조세를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부담금에 포함하여 지속 관리하도록 했다.

〈표 Ⅲ-2〉는 2009년 각 부처별 부담금 운용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환경부에서 23개의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어 전체 부처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국토해양부가 22개를 운용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운용하는 부담금은 모두 45개로 전체 부담금 수의 45.5%에 해당한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에 이어 농림수산식품부가 11개, 지식경제부가 10개, 금융위원회가 8개, 문화체육관광부가 6개, 산림청이 5개, 교육과학기술부가 3개,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노동부가 각각 2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이 각각 1개의 순서로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다.

〈표 Ⅲ-2〉 부처별 부담금 수

(단위: 개)

합계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방재청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99	23	22	11	10	8	6	5	3	각 2	각 1

주: 2009. 12. 31.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09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10.

〈표 Ⅲ-3〉은 연도별 부담금 징수 규모를 나타내며, 2009년 말 기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부담금 규모는 14조 8,047억원에 이르고 있

Ⅲ. 준조세의 분류 및 현황 35

다. 2009년도 부담금의 총징수실적은 2008년에 비해 4,660억원이 감소한 14조 8,047억원으로 GDP 대비 1.39%에 해당한다. GDP에서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며, 부담금관리기본법이 도입된 2002년 이후부터 2005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한 후 2006년에 증가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2009년 기준 부담금 규모는 전년 대비 3.05% 하락하였고, GDP에서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1.39%로 전년 대비 0.1%p 하락하였다. 2001년 이후 연도별 부담금 징수 규모를 보면 2009년에 처음으로 부담금의 규모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Ⅲ-3〉 연도별 부담금 징수 규모

(단위: 억원, %)

	부담금 징수액	부담금 증가율	GDP	GDP 대비 부담금 비중
2001	67,683	-	6,514,153	1.04
2002	79,012	16.74	7,205,390	1.10
2003	93,005	17.71	7,671,137	1.21
2004	101,508	9.14	8,268,927	1.23
2005	112,647	10.97	8,652,409	1.30
2006	121,132	7.53	9,087,438	1.33
2007	145,882	20.43	9,750,130	1.50
2008	152,707	4.68	10,264,518	1.49
2009	148,047	-3.05	10,630,591	1.39

주: GDP는 명목, 원화표시, 2005년 기준 연간지표
 자료: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각 연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10. 09. 27.

2001년 이후 처음으로 2009년에 부담금 징수 규모가 하락한 원인은 부담금의 총개수의 변화와 각 부담금의 증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담금의 신설 및 폐지 현황을 통해 부담금의 총개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9년 기준 부담금 수는 총 99개로 2008년과 비교하여 2개 감소하였으며, 2009년에 신설된 부담금은 없는 반면 2개의 부담금이 폐지되었다.

폐지된 부담금은 부대공사비용부담금('09.5)과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09.6)으로 이 두 가지 부담금은 2009년까지 부과·징수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부담금의 총개수의 변화는 부담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4>에 나타난 개별 부담금의 증감 내역을 통해 2009년 부담금규모의 감소 원인을 확인해 본다.

2009년에는 농지보전부담금(농림수산식품부), 산림복구비용예치금(산림청), 과밀부담금(국토해양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등이 감소하였다. 감소액이 가장 큰 농지보전부담금의 경우, 2007~2008년에 시행된 신도시, 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 규모가 예년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7,153억원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 결과 2009년 부담금 규모가 하락한 원인은 부담금 개수의 변화에 기인하기보다 각각의 부담금의 증감으로 인해 총징수 실적이 감소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III. 준조세의 분류 및 현황 37

〈표 III-4〉 2009년 징수액 변동 내역

(단위: 억원)

부담금명	'08실적	'09실적	증 감	주요 증감사유
사용후핵연료관리 부담금 (지 식 경 제 부)	-	1,792	△1,792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08년 제정, '09년 시행
개발부담금 (국 토 해 양 부)	1,266	2,734	△1,468	○ 개발사업 완료건수 증가
개발제한구역보전 부담금 (국 토 해 양 부)	1,171	2,619	△1,448	○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입지 증가 - 영등포교도소 이전(부담금 700 억원), 군포시 물류센터(부담금 600억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 (금 용 위 원 회)	7,472	8,656	△1,184	○ 부보금융기관의 예금 등의 평균 잔액 증가
농지보전부담금 (농림수산식품부)	14,126	6,973	▽7,153	○ '07~'08년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했던 징수규모가 예 전 수준으로 감소
산림복구비용예치금 (산 림 청)	10,340	9,114	▽1,226	○ 산지복구비용예치금 면제대상 증가 - 산지전용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 -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설치 사업인 경우
과밀부담금 (국 토 해 양 부)	1,558	586	▽972	○ 대형건축물 준공건수의 감소
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18,830	17,877	▽953	○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의 감소
▪ 소 계(A)	54,763	50,351	▽4,412	
▪ 그 외 부담금(B)	97,944	97,696	▽248	
▪ 총 계(A+B)	152,707	148,047	▽4,660	

자료: 기획재정부, 『2009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10, 재구성

〈표 III-3〉에서 2007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9년과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의 총부담금의 규모는 14조 5,882억원으로 전년 대비 20.43% 상승하여 2조 4,750억원이 증가하였다. 부담금 징수 규모는 경제성장에 따른 경제활동의 활성화로 인해 증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개별부담금의 증감에 의해서도 규모의 증감이 이루어진다.

2007년도에 징수액이 증가한 부담금은 65개이고, 감소한 부담금은 20개로 2007년에 부담금 규모가 크게 증가한 원인도 2009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범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총부담금 수의 변화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각각의 개별 부담금의 증감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부담금의 총개수 변화를 통해 2007년의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신규 설치된 부담금에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출연금(1,200만원), 국제빈곤퇴치기여금(33억 5,600만원), 수산물수입이익금(41억 2,300만원), 오염총량초과부과금(1,100만원),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2008.02.04부터 시행되므로 실적 없음), 영화상영관입장권부과금(124억 5천만원)¹⁾이 있다.

2007년의 폐지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원자부담금(부과·징수실적 없음)과 이용자부담금(부과·징수실적 없음), 유통단지개발촉진법상 원자부담금(2006년까지 부과·징수실적 없음)과 이용자부담금(2006년까지 부과·징수실적 없음),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2006년 기준 3,400만원)이 있다. 따라서 2007년의 경우 새롭게 신설된 부담금이 폐지된 부담금보다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체 부담금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별 부담금의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징수액이 증가한 부담금은 〈표

1) () 안은 2007년 기준 징수 실적

Ⅲ. 준조세의 분류 및 현황 39

Ⅲ-5)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증가한 부담금으로는 농지보전 부담금(농림부), 기반시설부담금(건설교통부), 산림복구비용예치금(산림청), 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재정경제부), 신용보증기금출연금(재정경제부) 등이 있다.

농지보전부담금의 경우에는 농지전용면적의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4,057억원 증가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년도에는 부과기간이 짧아 징수실적이 적었기 때문에 2007년의 경우 3,578억원이 증가하였다. 산림복구비용예치금은 복구비 현실화를 위해 예치금 기준액이 인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산지전용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2006년 대비 2,117억원 증가하였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의 경우에는 2006년도 부담금 중 선수납 조정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였다. 신용보증기금출연금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금의 증가 등에 따라 부담금이 증가하였다.

개별 부담금의 감소 현황을 보면, 2007년 기준으로 징수액이 감소한 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366억원), 농산물수입이익금(165억원),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144억원), 해양환경개선부담금(73억원), 골재채취법상복구예치금(48억원)이 감소하여 총 934억원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934억원의 감소는 증가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2007년도의 경우 부담금의 규모가 전년 대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결과적으로 2007년의 경우 새로운 부담금 신설로 인해 총부담금 징수 실적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별 부담금의 증감으로 인해 부담금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 부담금 폐지 현황은 <표 Ⅲ-6>에 나타나 있다.

〈표 III-5〉 2007년 징수액 변동 내역

(단위: 억원)

부담금명	'06실적	'07실적	증가	주요 증가사유
농지보전부담금 (농림부)	4,664	8,721	△4,057	○ 농지전용면적 증가 * ('06)16,215ha → ('07)24,666ha
기반시설부담금 (건설교통부)	254	3,832	△3,578	○ '06년도는 부과기간이 짧아 징수실적이 적었으며, 상대적으로 '07년도 증가효과 발생 * '06.7.12시행, 실질적으로 11월부터 징수
산림복구비용 예치금 (산림청)	7,982	10,099	△2,117	○ 산림복구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복구비용 예치금 기준액 인상 * 예시: 산지전용지(4.9% 인상) ('06)80,514천원/ha→('07)84,461천원/ha ○ 산지전용면적 증가 * ('06)8,901ha → ('07)10,544ha
기술신용 보증기금 출연금 (재정경제부)	2,008	4,006	△1,998	○ '06년도에 금융기관출연금에 대한 선수납 조정(2,245억원)으로 '07년도에 부담금이 증가한 효과 발생 * 선수납 조정 : '05년도 특별보증 부실에 따른 대위변제 여유자금 부족으로 '06년도에 부과할 금액 중 2,245억원을 '05년도에 부과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재정경제부)	5,369	6,940	△1,571	○ 중소기업 대출 증가 * ('06)303.3조원 → ('07)355.3조원
▪ 소 계(A)	20,277	33,598	△13,321	
▪ 그 외 부담금(B)	91,475	103,204	△11,729	
▪ 총 계(A+B)	111,752	136,802	△25,050	

자료: 기획재정부, 『2007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08.

III. 준조세의 분류 및 현황 41

〈표 III-6〉 연도별 부담금 폐지 현황

(단위: 백만원)

폐지 연도	소관부처	부담금명	부담금 징수액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03	건설교통부	원인자부담금(한국수자원공사법)	0	0	0	0	0	0	0
	문화관광부	문예진흥기금 모금(문화예술진흥법)	53,565	7,943	0	0	0	0	0
	산림청	병해충구제예방비용분담금	0	0	0	0	0	0	0
	산림청	보안림수익자부담금	0	0	0	0	0	0	0
	산업자원부	공동부담금	4,312	0	0	0	0	0	0
2003	산업자원부	전기사업자부담금(농어촌전회축진법)	6,870	0	0	0	0	0	0
	소방방재청	소하천수익자부담금	18	0	0	0	0	0	0
	소방방재청	소하천원상회복 예치금	0	0	0	0	0	0	0
	재정경제부	부실채권정리기금출연금	0	0	0	0	0	0	0
2005	건설교통부	원인자부담금(도시공원법)	0	0	0	0	0	0	0
2006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부담금(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0	0	1,982	0	0	0	0
	건설교통부	손괴자부담금(도로법)	0	0	0	0	0	0	0
	산림청	수익자부담금(사방사업법)	0	0	0	0	0	0	0
	해양수산부	어장정화·정비실시부담금	10	2	0	0	0	0	0
	환경부	배출부과금(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74	192	199	158	139	0	0
	환경부	손괴자부담금(하수도법)	0	0	0	0	0	0	0

〈표 III-6〉의 계속

폐지 연도	소관부처	부담금명	부담금 징수액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07	건설교통부	원인자부담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0	0	0	0	0	0	0
	건설교통부	원인자부담금 (유통단지개발촉진법)	0	0	0	0	0	0	0
	건설교통부	이용자부담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0	0	16	0	0	0	0
	건설교통부	이용자부담금 (유통단지개발촉진법)	0	0	0	0	0	0	0
	환경부	손괴자부담금(수도법)	1,319	1,436	1,130	1,698	1,523	0	0
	환경부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	20,358	19,635	19,305	20,638	0	0	0
2008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부담금(기반 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0	0	0	25,389	383,184	0	0
	행정자치부	농어촌도로 손괴자 부담금	0	0	0	0	0	0	0
2009	국토해양부	부대공사비용부담금	0	0	0	0	0	0	0
	해양수산부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	0	0	0	0	0	0	0
	환경부	협의기준초과부담금	490	288	1,088	721	271	0	0

〈표 III-7〉은 GDP 대비 조세의 비중과 GDP 대비 부담금의 비중 및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GDP 대비 조세의 비중은 연도에 따라 약간의 증감을 거듭하며, 2001년 이후 2009년까지 평균 19.48%를 기록하고 있다. 2009년 기준 GDP 대비 조세의 비중은 19.73%로 전년 대비 1%p 하락하였다.

Ⅲ. 준조세의 분류 및 현황 43

2001년 이후부터 2009년까지 GDP 대비 부담금의 비중은 평균 1.29%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08년부터 다소 하락하였다. GDP 대비 부담금 비중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전년 대비 0.57% 하락하였고, 2009년에는 2008년에 비해 6.39% 하락하였다.

〈표 Ⅲ-7〉 GDP 대비 조세 비중의 증가율과 GDP 대비 부담금 비중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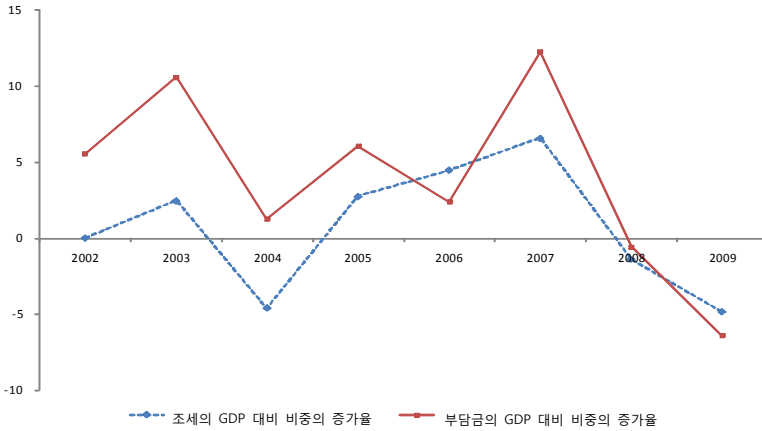
(단위: 억원, %)

연도	조세	GDP	GDP 대비 조세 비중	GDP 대비 조세 비중의 증가율	GDP 대비 부담금 비중	GDP 대비 부담금 비중의 증가율
2001	1,225,000	6,514,153	18.81	-	1.04	-
2002	1,355,000	7,205,390	18.81	0.00	1.10	5.54
2003	1,478,000	7,671,137	19.27	2.45	1.21	10.56
2004	1,520,000	8,268,927	18.38	-4.59	1.23	1.25
2005	1,634,000	8,652,409	18.88	2.74	1.30	6.05
2006	1,793,000	9,087,438	19.73	4.48	1.33	2.38
2007	2,050,000	9,750,130	21.03	6.56	1.50	12.25
2008	2,128,000	10,264,518	20.73	-1.40	1.49	-0.57
2009	2,097,000	10,630,591	19.73	-4.85	1.39	-6.39
평균	-	-	19.48	-	1.2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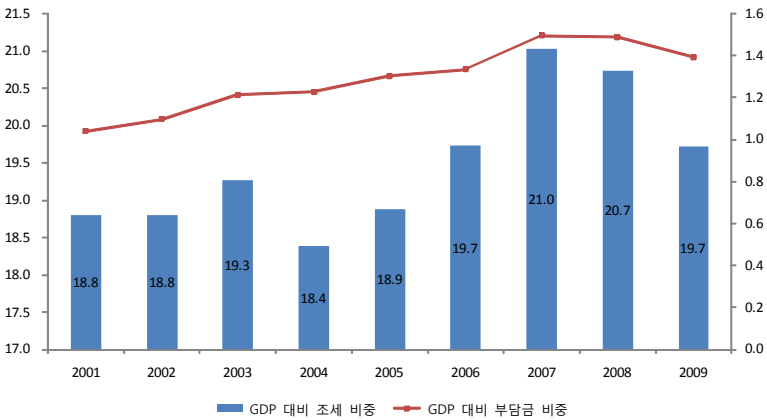
주: GDP는 명목, 원화표시, 2005년 기준 연간지표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II-1]을 통해 GDP 대비 조세 비중의 증가율과 GDP 대비 부담금 비중의 증가율을 살펴볼 수 있으며, [그림 III-2]는 GDP 대비 조세 비중과 GDP 대비 부담금 비중을 나타낸 결과이다.

[그림 III-1] GDP 대비 조세 비중의 증가율과 GDP 대비 부담금 비중의 증가율
(단위: %)



[그림 III-2] GDP 대비 조세 비중과 GDP 대비 부담금 비중
(단위: %)



Ⅲ. 준조세의 분류 및 현황 45

〈표 Ⅲ-8〉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각 부처별 부담금 징수 규모를 나타낸다. 2009년 기준 지식경제부의 부담금 징수 규모는 3조 6,259억 원으로 전체 부담금의 24.49%를 차지하여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의 뒤를 이어 금융위원회가 2조 8,057억 원으로 18.95%를 차지하고, 환경부가 2조 5,323억 원을 징수하여 17.10%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보건복지부가 1조 6,380억 원을 징수하여 11.06%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Ⅲ-8〉 부처별 부담금 징수실적 현황(2008~2009년)

(단위: 억원, %)

소관 부처	2009년		2008년	
	금액(구성비)		금액(구성비)	
금융위원회	28,057	(18.95)	26,105	(17.09)
기획재정부	-	(-)	-	(-)
교육과학기술부	3,577	(2.42)	3,558	(2.33)
외교통상부	506	(0.34)	516	(0.34)
행정안전부	538	(0.36)	1,133	(0.74)
문화체육관광부	3,569	(2.41)	3,715	(2.43)
농림수산식품부	8,200	(5.54)	15,266	(9.99)
지식경제부	36,259	(24.49)	35,472	(23.22)
보건복지가족부	16,380	(11.06)	16,369	(10.71)
환경부	25,323	(17.10)	24,323	(15.92)
노동부	2,559	(1.73)	2,496	(1.63)
국토해양부	10,435	(7.05)	9,653	(6.32)
소방방재청	5	(0.003)	35	(0.02)
산림청	10,541	(7.12)	11,939	(7.82)
방송통신위원회	1,399	(0.95)	1,574	(1.03)
중소기업청	698	(0.47)	626	(0.41)
합계	148,047	(100.00)	152,780	(100.00)

자료: 기획재정부, 『2009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10.

이처럼 지식경제부와 금융위원회가 부처별 부담금 징수실적의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두 부처의 부담금을 합하면 6조 4,316억 원으로 전체 부담금의 43.44%를 차지한다.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한 하위 부처는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와 소방방재청으로 각각 538억원, 506억원, 5억원을 징수하여 각각 0.36%, 0.34%, 0.003%로 나타났다.

〈표 Ⅲ-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식경제부가 운용하고 있는 부담금은 총 10개로 전체 99개 기부금의 10.1%를 차지하지만, 부담금 징수 규모는 3조 6,259억원으로 전체 부담금의 24.49%를 차지한다. 이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기 때문에 부담금 징수 규모가 전 부처 중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Ⅲ-9〉 지식경제부 귀속 부담금

(단위: 백만원)

귀속주체	부담금명	'09년 징수실적
중앙정부 기금 귀속 부담금	특정물질 제조업자·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302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1,191,734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부담금	141,590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179,182
	소 계	1,512,808
중앙정부 특별회계 귀속 부담금	안전관리부담금	105,274
	광물수입·판매부과금	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1,787,673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5,991
	소 계	1,898,938
공단 등 기타기관귀속 부담금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4
	집단에너지공급시설건설 비용부담금	214,062
	소 계	214,066

자료: 기획재정부, 『2009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10, 재구성

Ⅲ. 준조세의 분류 및 현황 47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도 운용하고 있는 부담금의 수는 2개로 매우 작지만, 그 징수 규모는 전체 부처 중에서 4위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가 부담금의 수에 비해 징수 규모가 큰 까닭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규모가 1조 6,379억원으로 전체 부담금의 11.06%에 해당할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표 Ⅲ-10〉참조).

〈표 Ⅲ-10〉 보건복지부 귀속 부담금

(단위: 백만원)

귀속주체	부담금명	'09년 징수실적
중앙정부 기금 귀속 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637,981
-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비용 부담금	-

자료: 기획재정부, 『2009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10.

부담금의 사용용도 즉, 납부된 부담금이 어디로 귀속되느냐에 따라 부담금을 분류하면 〈표 Ⅲ-11〉과 같으며, 귀속주체는 중앙정부기금, 중앙정부 특별회계, 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공단 및 기타 기관으로 나누어서 부담금을 분류하였다.

중앙정부 특별회계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등이 있다. 2009년도에 징수된 부담금의 22.5%인 3조 3,266억원이 5개의 중앙정부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귀속되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 1조 8,989억원(안전관리부담금 등 3개)으로 가장 많고, 환경개선특별회계가 8,226억원(생태계보전협력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12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 4,279억원(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 등 3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임산물 수입이익금) 1,252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광역교통시설부담금, 원인자부담금(도로법), 소음부담금) 520억원의 순서를 기록하고 있다.

이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모두 3개의 부담금을 수입의 일부로 하고 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2개의 부담금을 수입의 일부로 하고 있으며, 환경개선특별회계는 12개의 부담금을 수입의 일부로 하고 있다.

2009년도에 징수된 부담금의 3.9%인 5,797억원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귀속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 계상되는 준조세 수입은 주로 관련되는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특별회계로 계상되고, 일부가 일반회계로 계상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 귀속액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1,574억원(하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으로 가장 많고,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978억원(교통유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965억원(학교용지부담금),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722억원, 상수도특별회계 714억원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11〉 귀속에 따른 부담금 분류(2009)

귀속처	소관부처	부담금명
중앙 정부 기금	금융위원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출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 신용보증기금출연금, 공적상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특별기여금
	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
	외교통상부	국제교류기여금
	문화체육관광부	출국납부금, 카지노사업자납부금,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영화상영관입장권부과금
	농림수산식품부	농지보전부담금, 농산물수입이익금(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납입금, 양곡수입이익금(양곡관리법), 대체초지조성비, 축산물수입이익금, 농산물수입이익금(FTA법), 수산물수입이익금

Ⅲ. 준조세의 분류 및 현황 49

〈표 Ⅲ-11〉의 계속

귀속처	소관부처	부담금명
중앙 정부 특별 회계	지식경제부	특정물질 제조업자·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부담금,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환 경 부	물이용부담금(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영산강·섬진강수계)
	노 동 부	임금채권보장 사업주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국토해양부	해양환경개선부담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방송위원회	방송발전기금징수금
	지식경제부	안전관리부담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환 경 부	배출부과금(대기환경보전법), 수질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수질및수생태계보전법), 생태계보전협력금,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환경개선부담금, 폐수종말처리시설부담금, 금강수계 총량초과부담금, 낙동강수계 총량초과부담금, 재활용부과금(전기·전자제품)
	국토해양부	개발제한구역보존부담금, 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원인자부담금(도로법), 소음부담금
	산 립 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입산물수입이익금
자치 단체 귀속	광역자치 단체	학교용지부담금, 지방자치단체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수산자원조성금, 원인자부담금(수도법),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과밀부담금
	기초자치 단체	학교용지부담금, 지방자치단체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쓰레기유발부담금, 수산자원조성금, 원인자부담금(수도법),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폐수종말처리시설부담금,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개발구역밖의기반시설및추가설치비용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표 III-11〉의 계속

귀속처	소관부처	부담금명
공단 및 기타 기관	금융위원회	한국화재보험협회출연금(한국화재보험협회)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외교통상부	국제빈곤퇴치기여금(한국국제협력단)
	문화관광부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분담금(관광단지(보문/중문/지리산온천)),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부담금(관광단지(대천/무창포)), 회원제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개별회원제골프장운영자)
	농림수산 식품부	농지복구비용예치금(예치 후 환급), 쓰레기유발부담금(해당 도매시장)
	지식경제부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사업시행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건설비용부담금 (개별집단에너지사업자)
	환경부	원상회복예치금(예치 후 환급),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예치 후 환급),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예치 후 환급), 폐수종말처리시설부담금(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관리공사)
공단 및 기타 기관	국토해양부	복구예치금(예치 후 환급), 시설부담금(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사업시행자),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대한손해보험협회), 방제분담금(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공단)
	소방방재청	소하천소요공사비예치금(예치 후 환급)
	산림청	산림복구비용예치금(예치 후 환급), 산림복구하자보수보증금(예치 후 환급)
	중소기업청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자료: 기획재정부, 『2009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10.

Ⅲ. 준조세의 분류 및 현황 51

〈표 Ⅲ-12〉는 2009년 기준 부담금이 사용되기 위하여 귀속되는 귀속주체별 금액 및 비중을 나타낸다. 2009년 징수된 총 14조 8,047억원의 부담금 중에서 79.5%는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9.0%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었으며, 11.5%는 공단 등 기타기관에 귀속된다.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부담금은 기금과 특별회계로 분배되며,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부담금 중에서 기금으로 귀속되는 규모가 전체 부담금의 57.0%를 차지하고, 특별회계로 귀속되는 규모가 전체 부담금의 22.5%를 차지하여 기금에 귀속되는 규모가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규모의 거의 2배에 달함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부담금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분배되며, 광역자치단체로 귀속되는 부담금은 전체 부담금의 3.9%이고, 기초자치단체로 귀속되는 부담금은 전체의 5.1%로 나타났다.

〈표 Ⅲ-12〉 귀속주체별 부담금(2009)

(단위: 억원,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단 등 기타	계
	기금	특별회계	광역	기초		
징수금액	84,473	33,266	5,797	7,480	17,031	148,047
비율	57.0	22.5	3.9	5.1	11.5	100.0
징수금액	117,740		13,277		17,031	148,047
비율	79.5		9.0		11.5	100.0

자료: 기획재정부, 『2009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10, 재구성

2009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수입으로 귀속된 부담금은 전체 부담금의 5.1%인 7,480억원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 귀속액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3,398억원(하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

등 2개)으로 가장 많고, 상수도특별회계가 1,584억원(수도법상 원인자 부담금 등 2개),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363억원(교통유발부담금)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체 부담금 중 11.5%인 1조 7,031억원이 공단 등 기타기관의 수입으로 귀속되는데, 공단 등 기타기관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대부분은 납부의무자가 향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반환해 주는 예치금·보증금 성격의 부담금은 1조 2,680억원이다.

그 밖에 집단에너지사업자 2,141억원(집단에너지공급시설건설비용부담금), 신용보증재단 698억원(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대한손해보험협회에 437억원(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이 귀속된다. 손해배상보장사업자(국가로부터의 수탁사업자: 대한손해보험협회)가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을 사용하고 개별집단에너지사업자가 집단에너지공급시설건설비용부담금을 사용하였다. 그 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관리공사 등도 부담금을 사용한다.

2009년에 징수된 부담금의 기금귀속 부담금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이 있다. 2009년에 징수된 부담금 중 57.0%인 8조 4,473억원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국제교류기금, 농지관리기금 등 28개 중앙정부 기금의 수입으로 귀속되었다. 기금별 부담금 귀속액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이 1조 6,380억원(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이 1조 1,917억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8,656억원(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출연금)은 8,123억원, 농지관리기금(농지보전부담금) 6,973억원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Ⅲ. 준조세의 분류 및 현황 53

〈표 Ⅲ-13〉은 부담금의 분야별 사용 규모를 나타내며, 부담금 사용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정보·에너지 분야로 3조 6,258억원을 사용하여 전체 부담금의 24.5%를 사용하였다. 그 다음은 금융 분야로 2조 8,057억원을 사용하여 전체 부담금의 19.0%가 사용되었고, 환경 분야는 2조 5,323억원으로 17.1%를 사용하였다.

그 밖에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에는 11.1%를 사용하였고, 건설·교통 분야는 6.8%를 사용하였다. 산업·정보·에너지, 금융, 환경, 보건·의료 분야, 건설·교통 분야에 속하지 않는 기타 영역에 사용된 부담금이 총 3조 1,941억원으로 전체의 21.6%를 차지하여 부담금이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3〉 분야별 부담금 사용추이

(단위: 억원, %)

	산업·정보·에너지	환경	금융	보건·의료	건설·교통	기타	총계
2001	31,124 (43.90)	10,908 (15.39)	5,905 (8.33)	138 (0.20)	5,425 (7.65)	17,391 (24.53)	70,892 (100.00)
2002	27,456 (35.10)	13,348 (17.07)	6,949 (8.88)	5,109 (6.53)	5,630 (7.20)	19,724 (25.22)	78,215 (100.00)
2003	22,591 (24.60)	16,744 (18.23)	14,566 (15.86)	7,020 (7.64)	6,739 (7.34)	24,170 (26.32)	91,831 (100.00)
2004	25,094 (24.99)	18,217 (18.14)	16,158 (16.09)	8,061 (8.03)	8,164 (8.13)	24,721 (24.62)	100,415 (100.00)
2005	32,313 (28.27)	20,113 (17.60)	18,754 (16.41)	12,915 (11.30)	8,302 (7.26)	21,900 (19.16)	114,296 (100.00)
2006	31,336 (26.22)	19,425 (16.25)	18,008 (15.07)	14,940 (12.50)	9,286 (7.77)	26,539 (22.20)	119,534 (100.00)
2007	33,793 (23.5)	22,511 (15.7)	22,987 (16.0)	13,982 (9.7)	15,486 (10.8)	34,892 (24.3)	143,650 (100.0)
2008	35,464 (23.2)	24,323 (15.9)	26,105 (17.1)	16,369 (10.7)	9,162 (6.0)	41,284 (27.0)	152,707 (100.0)
2009	36,258 (24.5)	25,323 (17.1)	28,057 (19.0)	16,380 (11.1)	10,089 (6.8)	31,941 (21.6)	148,047 (100.0)

주: () 안은 분야별 구성비임.

자료: 기획재정부, 『2009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10.

IV. 준조세의 규모

본장에서는 제Ⅱ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준조세를 광의와 협의로 분류하여 그 규모를 산출하였다.

1. 준조세 규모 산출을 위한 부담금 분석

〈표 IV-1〉은 부담금을 징수하는 소관부서별로 분류하여 연도별 부담금 징수액 규모와 부담금이 준조세에 포함되는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각 부담금의 성격을 분석하여 포함되는 광의/협의를 준조세 범위를 결정하였다. 부담금이 광의와 협의에 모두 '○'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담금이 광의의 준조세에도 해당하고, 협의의 준조세에도 해당한다는 의미이며, 광의에 '○'로 표시되어 있으나 협의에 '×'로 표시되어 있으면 해당 부담금이 광의의 준조세에는 해당하지만, 협의의 준조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준조세를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여 그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 부담금의 특성을 분석하여 광의 또는 협의로 분류하였다. 2004년 이전에 설치된 부담금에 관한 분석은 한국조세연구원의 『기업의 준조세 부담과 정책방향』에서 도출된 결과를 참고하였으며, 그 이후 신설된 부담금에 국한하여 광의와 협의를 판단하였다. 〈표 IV-2〉는 2004년 이후 신설된 부담금에 대하여 준조세에 포함되는 범위를 결정한 그 판단 근거를 나타내고 있다.

〈표 IV-1〉 연도별 부담금 징수액 추이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부담금 분류(2009년 기준)	광의 협의	협의	징수액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금융위원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	○	×	110,998	125,864	136,950	142,510	246,698	430,633	421,037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금	○	×	32,041	43,769	48,124	88,112	124,769	160,086	174,187	
	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	○	×	212,202	228,174	609,702	200,821	400,633	437,873	470,217	
	신용보증기금출연금	○	×	424,270	456,280	305,976	536,947	694,021	769,336	812,363	
	한국화재보험협회출연금	○	×	10,095	10,451	10,876	10,915	11,172	10,277	10,553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금	○	×	0	41,759	43,489	44,202	43,627	55,094	51,65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	×	624,721	656,994	662,771	713,270	727,962	747,159	865,568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출연금(2007년 신설)	○	×						1	24	92
	연초경장지원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	○	41,715	52,808	57,510	64,017	49,581	0	0	
	학교용지부담금	○	×	195,307	178,870	38,838	119,744	168,391	149,097	137,299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	○	×	139,843	155,567	155,476	174,728	178,499	171,532	181,149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의비용부담금	○	×	22,625	25,155	27,315	31,150	35,302	36,510	39,237	
외교통상부	국제 교류기여금	○	○	28,475	33,888	37,205	43,160	44,972	36,629	36,746	

〈표 IV-1〉의 계속

소관부서	부담금 분류(2009년 기준)	광의 협의	징수액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외교통상부	국제빈곤퇴치기여금 (2007년 신설)	○ ○						3,357	14,892	14,206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수익자부담금	○ ○	142,012	142,905	134,158	102,004	105,149	113,308	53,781	
	출국납부금	○ ○	51,599	88,826	124,574	136,363	152,104	154,020	138,450	
	카지노사업자납부금	○ ○	82,528	99,173	111,714	118,859	121,167	151,672	169,313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부담금	○ ○	1,170	1,299	1,517	1,536	1,503	1,516	1,61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 ○	0	0	0	2,609	1,779	1,255	689	
	회원제골프장 시설임장료 부가금	○ ○	30,022	32,737	34,999	36,349	41,373	37,255	20,024	
	영화상영관임장권부과금 (2007년 신설)	○ ○						15,449	26,161	26,799
	농지 복구비용예치금	○ ○	24,282	29,764	25,162	29,736	26,219	25,111	32,904	
	농지보전부담금	○ ○	422,657	448,761	466,772	466,443	872,149	1,412,643	697,320	
	농산물수입이익금(농안법)	○ ○	60,787	64,356	59,977	76,162	59,706	42,098	63,135	
농림수산업부	쓰레기유발부담금	○ ○	1,553	1,321	1,073	279	4	3	3	
	양곡수입이익금(양곡관리법)	○ ○	474	627	657	10,276	23,597	36,557	12,360	
	농산물가격안정기금납입금	○ ○	205	399	121	228	173	236	406	

〈표 IV-1〉의 계속

소관부서	부담금 분류(2009년 기준)	광의 협의	징수액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농림수산식품부	부담금 분류(2009년 기준)											
	대체조지조성비	○ ×	1,203	781	3,044	3,152	2,284	1,319	2,891			
	축산물수입이익금	○ ○	1,554	2,143	1,032	1,799	1,047	1,357	1,441			
	농산물수입이익금(FTA범) (2004년 신설)	○ ○		14	32	0	1	22	32			
	수산물수입이익금 (2007년 신설)	○ ○					4,123	6,271	8,493			
	수산자원조성금	○ ×	824	713	964	631	589	956	990			
	안전관리부담금	○ ×	89,608	91,655	94,931	100,950	104,076	109,992	105,274			
	광물수입 · 판매부과금	○ ○	0	0	0	0	0	0	0			
	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 ×	26	21	15	3	5	5	4			
	석유 · 광석유 대체연료의 수입 · 판매부과금	○ ×	810,562	1,023,258	1,471,122	1,717,887	1,844,895	1,882,968	1,787,673			
지식경제부	특정물질 제조업자 · 수입 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 ×	1,236	1,116	802	778	470	298	302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 ×	997,084	1,065,177	1,112,102	1,006,243	1,044,087	1,110,614	1,191,734			
	집단지너지 공급시설 건설 비용 부담금	○ ×	126,196	116,401	106,895	136,562	198,365	249,669	214,062			
	광해방지업무자 부담금 (2006년 신설)	○ ×				0	10,508	10,227	5,991			
	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 부담금	○ ×	227,672	223,151	156,111	171,565	180,933	182,650	141,590			

〈표 IV-1〉의 계속

소관부서	부담금 분류(2009년 기준)	광의 협의	징수액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지식경제부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2009년 신설)	○ ×						0	179,182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	702,006	806,136	1,292,132	1,494,021	1,548,599	1,636,923	1,637,981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 비용부담금	○ ×	0	0	0	0	0	0	0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부과금	○ ×	6,850	6,655	7,076	6,384	7,447	5,446	6,000
	수질개선투자부담금	○ ×	13,325	14,638	16,979	18,958	19,356	21,750	19,028
	수도법상 원인가부담금	○ ×	160,759	189,008	158,605	147,284	268,716	218,168	176,085
	수질보전법상 배출부과금	○ ×	7,391	6,274	3,984	4,867	5,459	5,313	2,761
	원상회복예치금	○ ×	581	526	889	810	257	182	523
	생태계보전협력금	○ ×	11,946	34,629	36,881	42,728	58,993	85,221	111,794
	폐기물부담금	○ ×	46,786	35,211	44,880	50,538	56,614	46,476	56,189
	재활용부과금(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		4,109	3,533	4,204	3,373	4,129	5,234
	원인가부담금(하수도법)	○ ×	444,005	485,889	598,889	432,429	519,151	478,289	529,260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 ×	114,061	120,953	133,743	150,010	172,055	198,577	243,497

〈표 IV-1〉의 계속

소관부서	부담금 분류(2009년 기준)	광의 협의	징수액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환경부	오염총량조과부과금 (2007년 신설)	○ ×					0	0	0
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 ○	60,699	60,845	82,409	90,986	97,934	106,370	110,999
	장애인고용부담금	○ ○	104,301	118,669	125,910	136,298	151,269	143,249	144,860
국토해양부	개발제한구역역보전부담금	○ ×	101,061	102,510	116,257	167,912	131,284	117,128	261,901
	복구예치금	○ ×	58,768	59,509	51,259	67,467	62,690	65,945	54,594
	개발부담금	○ ×	53,012	77,069	122,123	136,833	188,162	126,637	273,444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	182,451	173,151	126,051	138,970	159,271	122,553	120,334
	מת건설 수익자부담금	○ ×	0	0	0	0	0	0	0
	원인지부담금(도로법)	○ ×	95	76	75	151	29	42	21
	공공시설관리자의비용부담금	○ ×	0	0	0	0	0	0	0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기반 시설 및 추가설치비용부담금	○ ×	0	6	3,013	1,080	8,143	18,998	7,407
	혼잡통행료	○ ×	15,545	13,823	14,617	14,529	16,109	15,553	15,805
	교통유발부담금	○ ×	99,075	111,077	122,444	129,457	139,126	154,341	162,730
시설부담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	0	0	0	0	1,107	0	738	

〈표 IV-1〉의 계속

소관부서	부담금 분류(2009년 기준)	광의 협의	징수액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국토해양부	부담금 분류(2009년 기준)	○ ×	48,151	126,057	115,246	94,410	193,172	155,821	58,586
	과밀부담금	○	0	0	0	0	0	0	0
	시설부담금 (불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 법률)	○ ×	0	0	0	0	0	0	0
	손해배상보장사업부담금	○ ○	129,648	136,182	144,033	132,390	130,229	131,067	43,661
	소음부담금	○ ×	3,132	2,938	2,927	3,179	3,658	3,762	3,797
	지하수이용부담금	○ ○				0	855	4,388	5,883
	재건축부담금(2006년 신설)	○ ○					0	0	0
	기반시설설치비용(2008년 신설)	○ ×						0	0
	방제부담금	○ ×	5,851	5,740	5,887	5,982	6,217	14,892	15,476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2006년 신설)	○ ×					742	4,321	6,908
해양수산부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2007년 공포, 2008년 시행)	○ ○					0	67	63
	해양환경개선부담금	○ ×	14,885	16,639	19,374	23,458	16,208	21,591	12,145
소방방재청	소하천소요공사비예치금	○ ×	1,359	4,323	650	1,345	2,382	3,486	493
산림청	임산물수입이익금	○ ×	555	942	675	1,554	2,497	978	303

〈표 IV-1〉의 계속

소관부서	부담금 분류(2009년 기준)	광의 협의	징수액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산림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 납부이행보증금	○ ×	67,470	80,764	91,871	86,646	113,826	135,961	124,929
	산림복구비용예치금	○ ×	738,003	695,807	473,854	798,225	1,009,906	1,034,048	911,352
	산림복구하자보수보증금	○ ×	9,720	13,540	10,527	21,728	28,627	22,916	17,502
	원인자부담금(사방사업법) (2004년 관리 추가)	○ ×	0	0	0	0	0	0	0
방송통신 위원회	방송발전기금징수금	○ ×	140,135	133,829	146,692	142,594	170,045	157,378	139,935
중소기업청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 증재단중앙회 출연금	○ ×				4,025	56,345	62,585	69,815
	광의의 부담금 합계		9,300,539	10,150,829	11,264,675	12,113,177	14,588,226	15,270,653	14,804,744
	협의의 부담금 합계		1,830,501	2,029,471	2,642,431	2,942,719	3,070,381	3,153,749	3,054,048

주: 부담금 징수액 총액은 폐지된 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각연도

〈표 IV-2〉 각 부담금의 준조세 판단 근거

부담금	판단 근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2007년 신설)	- 주택담보에 대한 보증의 대가로 부과하는 부담이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 → 협의에서 제외
국제빈곤퇴치기여금 (2007년 신설)	- 부담금 부담자(공항 출국자)와 수혜자(개도국)와 전혀 상관이 없는 대표적인 재원조달을 위한 부담금 → 준조세의 성격 → 협의에 포함
영화상영관입장권부과금 (2007년 신설)	-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구조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소비자의 경우 외국영화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모든 영화(한국, 외국)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한국영화의 질이 제고되어 그 수혜가 소비자에게 귀속된다는 논리는 무리가 있음. → 협의에 포함
농산물수입이익금(FTA법) (2004년 신설)	- '부담금 납부자와 부담금의 사용용도 및 수혜자'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사업자가 공매과정에서 낙찰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부담금 부과 타당성은 인정됨. - 수익자부담원칙, 원인자부담원칙에 해당하지 않음. - 물론, FTA로 수입업자는 이익을 보고, 농민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수익의 일부를 손해농민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하는 것이 일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부담금의 성격에는 부합하지 않음. → 협의에 포함
수산물수입이익금 (2007년 신설)	- 「농산물수입이익금(FTA법)」과 동일한 판단 → 협의에 포함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2006년 신설)	- 광산피해 방지 및 자연환경의 원상 회복을 위하여 광해방지의무자(사업자)가 비용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원인자부담금의 성격 → 협의에서 제외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부담금	-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부분적이나)하는 것으로 평가함. → 협의에서 제외

〈표 IV-2〉의 계속

부담금	판단 근거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2009년 신설)	- 사용 후 핵연료 처분비용을 사용자로부터 미리 확보하기 위한 부담금. 원칙에 부합 → 협의에서 제외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	-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해당 → 협의에서 제외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 원인자 부담원칙에 해당 → 협의에서 제외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부담금 (2007년 변경)	- 원인자 부담금 → 협의에서 제외 - 기존의 부담금 명칭이 변경된 것(근거법의 변경으로).
수도권대기환경개선 총량초과부과금 (2004년 신설)	- 원인자 부담원칙에 부합 → 협의에서 제외
재활용부과금(전기·전자제품 폐기자동차)(2008년 신설)	- 원인자 부담원칙에 부합 → 협의에서 제외
오염총량초과부과금 (2007년 신설)	- 원인자 부담원칙에 부합 → 협의에서 제외
지하수이용부담금	- 성격은 전형적인 원인자부담원칙에 해당하는 부담금이나, 현재 수질개선부담금 및 지역개발세와 유사(중복)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협의에 포함 → 협의에 포함
재건축부담금(2006년 신설)	-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성격상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으나,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과 문제 및 향후 집값 하락의 경우에 발생할 문제 등 폐지가 권고된 부담금 - 집값 안정이 부과의 목적이므로, 부담금보다는 조세로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협의에 포함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2006년 신설)	- 부담금의 부과요율이 다소 과하고 귀속되는 기금의 사용용도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지만, 원인자 부담원칙에 해당하는 부담금 → 협의에서 제외

〈표 IV-2〉의 계속

부담금	판단 근거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2007년 공포, 2008년 시행)	- 성격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부합하지만, 부담금의 사용용도가 '해양생태계 훼손방지 및 복원' 정도로 국한되어야 밀접한 연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부과대상 중 수입업자의 경우 전혀 연관성이 없는 문제가 있음 → 협의에 포함
기반시설설치비용 (2008년 신설)	- 지방세와 중복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부과 타당성은 인정됨 → 협의에서 제외
산림복구하자보수보증금	- 「예치금」의 성격이므로 협의 준조세에서는 제외 - 부담금평가단의 의견처럼 부담금 관리대상에서 제외를 검토할 필요 → 협의에서 제외
원인자부담금(사방사업법) (2004년 관리 추가)	- 대표적인 원인자부담금에 해당 → 협의에서 제외

2. 준조세 규모 산출을 위한 사회보험료 분석

사회보험료 역시 기업의 부담 중 하나로 준조세에 포함되며, 그 규모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 2009년 사회보험료 중에서 준조세에 해당하는 규모를 산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연금제도,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으며, 이들 보험은 일정 부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료의 준조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즉,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2009년 보험료 수입액에서 사업주 부담분을 산출하였다.

첫 번째로 살펴볼 사회보험은 산재보험으로 연도별 산재보험 징수 실적은 〈표 IV-3〉에 나타나 있으며,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산재보험에서의 보험료란 산재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으

로,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표 IV-3〉 연도별 산재보험 징수실적

(단위: 억원, %)

	합계		보 험 료		기 타 징 수 금		기 타 수 입	
	징수 결정액	수납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2000	25,047	19,555	22,892	18,764	1,846	485	309	305
2001	28,771	23,645	26,236	22,561	2,201	754	333	330
2002	32,094	27,156	27,446	23,953	2,298	856	2,350	2,347
2003	35,466	30,298	28,210	24,651	2,527	922	4,729	4,726
2004	35,210	29,590	33,365	28,961	1,845	629	-	-
2005	38,943	32,477	36,150	31,822	2,793	655	-	-
2006	44,700	38,273	41,684	37,495	3,017	778	-	-
2007	46,549	43,673	45,304	43,200	1,245	474	-	-
2008	50,699	47,887	49,445	47,349	1,254	537	-	-
2009	49,028	46,752	47,940	46,276	1,087	476	-	-

주: 1. '04년부터는 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급여징수금만 통계에 산정

2. '07년부터는 당해년도에 징수결정된 금액만 통계에 산정(이월된 징수결정액 제외)

자료: 근로복지공단, 「2009년도 산재보험·고용징수 실적분석」(분석 및 통계표)

기타징수금이란 가산금, 연체금 및 급여징수금을 말하며, 가산금이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법정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징수해야 할 금액 외에 그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다. 연체금은 보험

IV. 준조세의 규모 67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하고,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고 36개월까지 부과한다. 급여징수금이란 법정기한 내에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보험가입자로부터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2009년도 산재보험의 징수실적으로 미루어보아 산재보험의 준조세적 성격의 금액은 전체 수납액 중 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인 4조 6,276억원이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회보험은 고용보험으로 고용보험료는 연초에 사업주가 스스로 당해 보험연도의 근로자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고·납부하고(개산보험료), 다음 연도 초에 근로자의 실제 임금총액에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확정보험료를 보고·납부하여 정산(확정보험료)한다.

고용보험의 경우 다른 보험과 달리 보험료율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고용보험 징수실적을 통해 사업주 부담액을 도출하기 위해 연도별 고용보험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표 IV-4>와 같다.

<표 IV-4> 연도별 고용보험 징수실적(1)

(단위: 억원)

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2003	29,107	26,196
2004	32,992	29,041
2005	36,525	32,072
2006	38,656	34,467
2007	37,348	35,829
2008	40,712	39,233
2009	42,664	41,423

주: '07년부터는 해당연도에 징수 결정된 금액만 통계에 산정(이월된 징수결정액 제외) 징수실적에는 가산금 및 연체금까지 포함

자료: 근로복지공단, 「2009년도 산재보험·고용징수 실적분석」(분석 및 통계표)

산재보험의 경우 「산재보험·고용징수 실적 분석」을 통해 가산금·연체금 등이 제외된 순수보험료를 살펴볼 수 있었지만, 고용보험의 경우 순수보험료를 확인할 수 없어 또다른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5>에 있으며, 2009년 고용보험의 전체 보험료 수입은 4조 1,892억원이다. <표 IV-5>와 <표 IV-4>에 나타난 고용보험료의 징수실적이 다른 이유는 <표 IV-5>의 징수실적은 가산금과 연체금이 제외된 순수 보험료만 기록한 수치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사업주 부담분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수납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지만, 고용보험은 통계자료의 구조가 사업주 부담액과 근로자 부담액을 징수실적에 근거하여 분류하고 있어 징수결정액으로 사업주 부담금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2009년 기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의 차이(연체금 및 가산금 등)는 징수결정액의 2.9%에 불과하다.

<표 IV-5>를 살펴보면, 보험료 수입 중 사업주 부담액은 2조 8,428억원이고, 근로자 부담액은 1조 3,464억원으로 나타나므로 고용보험의 준조세적 성격의 금액은 2조 8,428억원이다.

<표 IV-5> 연도별 고용보험료 징수실적(Ⅱ)

(단위: 억원)

	보험료 전체금액	사업주 부담액	근로자 부담액
2003	25,936	17,865	8,071
2004	28,802	19,628	9,173
2005	31,796	21,635	10,160
2006	34,128	23,195	10,933
2007	36,373	24,735	11,639
2008	39,685	26,809	12,876
2009	41,892	28,428	13,464

주: 가산금 및 연체금 제외

자료: 근로복지공단

세 번째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으로 건강보험은 근로자·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분류된다. 이 중 공무원 및 교직원은 국가가 사용자로서 입장에서 부담하므로 기업의 부담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

IV. 준조세의 규모 69

립학교 교직원은 사용자가 30%를 부담하지만 여기에서의 사용자는 기업이 아닌 사립학교 법인이므로 산출하려는 준조세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므로 교직원과 공무원 을 제외한 직장가입자를 통해 준조세 규모를 도출하였다.

〈표 IV-6〉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법(2009년)

(단위: %)

	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로자	5.08(100)	2.54(50)	2.54(50)	-
공무원	5.08(100)	2.54(50)	-	2.54(50)
사립학교교직원	5.08(100)	2.54(50)	1.524(30)	1.016(20)

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 「2009년도 보험료 산정방법 안내」

〈표 IV-6〉에는 2009년 국민건강보험료가 나와 있다. 건강보험료율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여 사업장 가입자는 2008년과 2009년에는 5.08%를 납부하였고, 2010년 10월 기준 기준소득월액의 5.33%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용자가 납부하였다.

〈표 IV-7〉 연도별 건강보험 총보험료 현황

(단위: 억원)

	계	직장			지역
		소계	근로자	공·교	
2000	72,288	41,289	29,697	11,593	30,999
2001	88,562	52,408	39,573	12,834	36,154
2002	109,277	68,718	52,366	16,352	40,558
2003	137,409	91,683	71,836	19,848	45,725
2004	156,142	108,284	84,808	23,475	47,859
2005	169,277	121,209	97,109	24,100	48,068
2006	188,106	138,965	111,697	27,268	49,141
2007	217,287	163,485	133,223	30,261	53,802
2008	249,730	190,297	157,196	33,100	59,434
2009	261,661	202,377	167,441	34,936	59,284

- 주: 1. 2009년 결산기준
 2. 직장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 포함(부과기준)
 3. 직장의 4월 보험료에는 전년도 정산분이 포함됨
 4. 2007.8월부터는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포함
 자료: 건강보험공단, 「2009 건강보험 주요 통계」

건강보험료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비율은 5:5로 동일하므로 근로자의 경우 가입자와 사용자의 부담비율을 이용하여 준조세 규모를 추정하였다.

〈표 IV-8〉 연도별 건강보험 사업주 부담분 현황

(단위: 억원)

	직장	근로자 : 사업주	사업주 부담분
	근로자		
2000	29,697	5:5	14,848
2001	39,573	5:5	19,787
2002	52,366	5:5	26,183
2003	71,836	5:5	35,918
2004	84,808	5:5	42,404
2005	97,109	5:5	48,555
2006	111,697	5:5	55,849
2007	133,223	5:5	66,612
2008	157,196	5:5	78,598
2009	167,441	5:5	83,721

자료: 건강보험공단, 「2009 건강보험 주요 통계」

네 번째 사회보험은 국민연금보험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2010년 10월 기준 사업장 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고 있다. 반면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2005년 7월 이후 2010년 10월 기준 9%까지 상향 조정되었다.

연도별 국민연금 징수현황은 〈표 IV-9〉에 나와 있으며, 2009년 국민연금보험 징수실적은 총 218조 7,050억원에 해당한다.

〈표 IV-9〉 연도별 국민연금 징수실적

(단위: 십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징수액	53,002	62,177	79,082	94,788	111,954	130,512	150,628	172,268	195,090	218,705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2009년도 국민연금 통계연보」

주: 연도별 누적(연도별 누적은 국민연금제도 시행 이후부터 각 연도말 익월 10일까지의 누적고지 대비 징수 현황임)

〈표 IV-10〉 연도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징수 현황

(단위: 억원)

	사업장 가입자 징수액	사업주 : 근로자	사업주 부담분
	징수 금액		징수 금액
2003	124,413	5:5	62,206
2004	139,954	5:5	69,977
2005	154,060	5:5	77,030
2006	169,471	5:5	84,735
2007	185,398	5:5	92,699
2008	197,617	5:5	98,809
2009	205,291	5:5	102,645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통계연보」 각 연도

〈표 IV-10〉을 통해 2009년도 사업장 가입자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장 가입자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은 20조 5,291억원이다. 2006년 이전과 달리 2007년 이후 통계연보에서는 보험료계와 징수계를 따로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표 IV-10〉의 값은 보험료뿐만 아니라 연체료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순수 보험료에 비해 다소 과대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2004년의 경우 연체금은 267억 9,300만원으로 과대추정 가능성은 미미하다. 2009년 사업장 가입자 징수액 중 준조세에 해당하는 사업자부담분은 10조 2,645억원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복지부장관 소속 노인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²⁾. 장기요양보험은 2010년의 경우 건강보험료액의 6.55%를 징수하며,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다. 요율 변동은 <표 IV-11>에 나타나 있다.

<표 IV-11>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

(단위: %)

	2008년 6월 11일	2008년 12월 31일	2009년 12월 30일
장기요양보험료율	6.55	4.78	6.55

주: 사용자 및 근로자 개별 징수(2010년 기준 총 13.1%)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2007년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후 4월 27일 공포됨으로써,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 통계는 2010년 10월 현재 2008년과 2009년의 2개 연도에 불과하다. 또한 시행일(2008년 7월)로 인해 2008년 부과 및 징수액과 2009년 부과 및 징수액에 차이가 존재한다. 가입자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표 IV-12>와 같다.

2)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2010. 09. 06

IV. 준조세의 규모 73

〈표 IV-12〉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징수 현황

(단위: 억원)

	부 과			징 수		
	계	직장	지역	계	직장	지역
2008	4,784	3,583	1,201	4,523	3,531	993
2009	12,059	9,153	2,906	11,612	9,056	2,557

주: 1. 2009년 결산기준
 2. 직장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 포함(부과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 각 연도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초기에는 건강보험료의 4.78%의 보험료를 가입자와 사용주에게 각각 징수하였고, 2009년 12월 30일 이후 6.55%를 징수하고 있어 2010년 10월 기준 건강보험료의 총 13.1%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표 IV-13〉 장기요양보험 사업장 가입자 징수 현황

(단위: 억원)

	사업장 가입자 징수액	사업주:근로자	사업주 부담분 징수액
2008	3,531	5:5	1,765
2009	9,056	5:5	4,52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 각 연도

앞에서 살펴본 4대 사회보험의 기업부담분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사회보험료의 준조세 규모를 도출하면, 그 결과는 다음의 〈표 IV-14〉와 같으며 2009년 기준 사회보험료의 준조세 규모는 26조 5,598억 원으로 추정된다.

〈표 IV-14〉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규모(2009년)

(단위: 억원)

	광의	협의	부담금액
국민연금	○	○	102,645
고용보험	○	○	28,428
산업재해보험	○	○	46,276
국민건강보험	○	○	83,721
장기요양보험	○	○	4,528
계			265,598

자료: 근로복지공단, 『2009년도 산재보험·고용징수 실적분석』(분석 및 통계표)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
 국민연금관리공단, 『2009 국민연금 통계연보』
 건강보험공단, 『2009 건강보험 주요 통계』

2009년 사회보험료의 준조세 규모를 도출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도별 사회보험료의 준조세 규모를 도출한 결과는 〈표 IV-15〉에 나타나 있다.

〈표 IV-15〉 연도별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규모

(단위: 억원)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 보험	합계
2003	24,651	35,918	17,865	62,206	-	140,640
2004	28,961	42,404	19,628	69,977	-	160,971
2005	31,822	48,555	21,635	77,030	-	179,042
2006	37,495	55,849	23,195	84,735	-	201,274
2007	43,200	66,612	24,735	92,699	-	227,245
2008	47,349	78,598	26,809	98,809	1,765	253,330
2009	46,276	83,721	28,428	102,645	4,528	265,598

3. 2009년 준조세 규모 산출

앞에서 도출된 2009년 기준 사회보험료의 준조세 규모인 26조 5,598 억원을 부담금 규모에 합산하면, <표 IV-16>과 같이 광의 및 협의의 준조세 규모를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준조세 부담에서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준조세 규모와 사회보험료가 포함된 준조세 규모를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먼저 사회보험료를 제외할 경우 2009년 기업의 준조세 규모는 광의의 경우 14조 8,047 억원에 이르고 협의의 경우 3조 540억원에 달한다.

사회보험료를 포함하는 경우 기업의 준조세 부담은 광의의 경우 41조 3,645억원이고 협의는 29조 6,138억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사회보험료가 포함될 경우 광의의 준조세 부담은 사회보험료가 제외될 경우에 비해 2.79배에 해당한다.

<표 IV-16> 준조세 규모(2009년)

(단위: 억원)

	분류	부담금액
사회보험료 제외	광의의 준조세	148,047
	협의의 준조세	30,540
사회보험료 포함	광의의 준조세	413,645
	협의의 준조세	296,138

그러나 기업이 부담금 및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해당 금액이 비용처리가 되어 법인세 납부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준조세 규모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율은 2007년까지 1억원을 기준으로 25%/13%가 적용되었으

며, 2008년부터 기준금액이 2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세율은 25%/11%로 조정되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제시된 세율인하 일정에 따라 2009년에 높은 세율을 22%로 인하하였으나 2010년부터 20%로 추가 인하하려던 계획은 2012년으로 유예되어 있는 상황이다.

〈표 IV-17〉 연도별 법인세율 현황

(단위: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억원 초과(2007년 이전)							
2억원 초과(2008년 이후)	27	27	25	25	25	25	22
1억원 이하(2007년 이전)							
2억원 이하(2008년 이후)	15	15	13	13	13	11	11

주: 조합법인 등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9%의 세율 적용

법인세를 고려하여 사회보험료의 준조세 규모를 산출하면, 다음의 〈표 IV-18〉과 같다.

〈표 IV-18〉 법인세를 고려한 사회보험료의 준조세 규모(2009년)

(단위: 억원, %)

	광의	협의	법인세율 감안하지 않은 부담금액	법인세 최고세율	법인세율 감안한 부담금액
국민연금	○	○	102,645	0.22	80,063
고용보험	○	○	28,428	0.22	22,174
산업재해보험	○	○	46,276	0.22	36,095
국민건강보험	○	○	83,721	0.22	65,302
장기요양보험	○	○	4,528	0.22	3,532
계			265,598		207,167

자료: 근로복지공단, 2009년도 산재보험·고용징수 실적분석(분석 및 통계표)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
 국민연금관리공단, 『2009 국민연금 통계연보』
 건강보험공단, 『2009 건강보험 주요 통계』

IV. 준조세의 규모 77

사회보험료와 마찬가지로 부담금의 경우에도 법인세를 고려하여 부담금의 규모를 도출하면, 다음의 <표 IV-19>와 같이 산출된다.

<표 IV-19> 준조세에 해당하는 부담금 규모(2009년)

(단위: 억원, %)

	준조세에 해당하는 부담금	법인세 최고세율	법인세를 감안한 부담금
광의	148,047	0,22	115,477
협의	30,540	0,22	23,822

이 결과를 종합하여 법인세를 고려한 2009년 준조세의 규모를 도출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20>에 나타나 있다. 사회보험료를 포함하는 경우 2009년 기업의 준조세 부담은 광의의 경우 32조 2,644억원이고, 협의의 경우에는 23조 989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2009년 기업의 준조세 부담은 광의의 경우 11조 5,477억원이고, 협의의 경우에는 2조 3,822억원에 이른다.

<표 IV-20> 법인세를 감안한 부담금 규모(2009년)

(단위: 억원)

	분류	부담금액
사회보험료 제외	광의의 준조세	115,477
	협의의 준조세	23,822
사회보험료 포함	광의의 준조세	322,644
	협의의 준조세	230,989

4. 연도별 준조세 규모 산출 및 추이 분석

가. 사회보험료 제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준조세에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부담금 징수액 추이를 도출하면, 그 결과는 <표 IV-21>과 같으며 이는 사회보험료를 감안하기 전의 연도별 준조세 징수액 추이를 나타낸다.

<표 IV-21> 연도별 준조세(사회보험료 제외) 징수액 추이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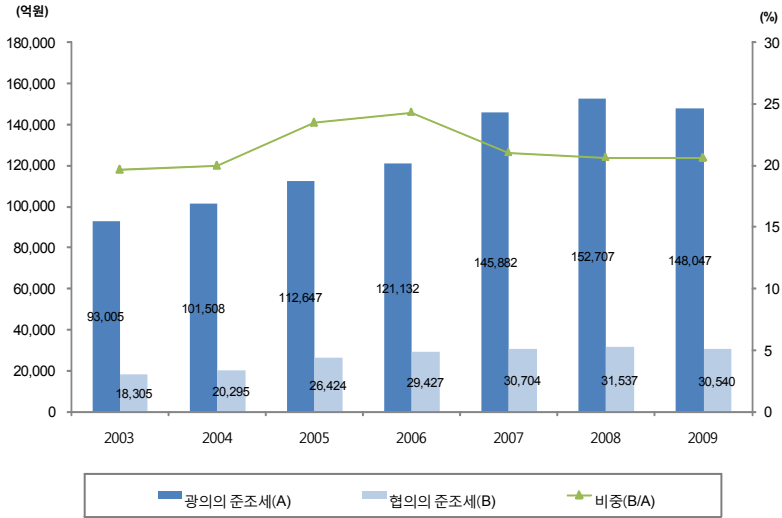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광의의 준조세(A)	93,005	101,508	112,647	121,132	145,882	152,707	148,047
협의의 준조세(B)	18,305	20,295	26,424	29,427	30,704	31,537	30,540
비중(B/A)	19.7	20.0	23.5	24.3	21.0	20.7	20.6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연도별 준조세 징수액의 추이를 [그림 IV-1]을 통해 살펴보면, 광의의 준조세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특히 2007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 이르러서는 다소 감소하였다.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협의의 준조세의 변화추이는 광의에 비해 완만하며 2009년에 이르러서는 다소 감소하였다.

IV. 준조세의 규모 79

[그림 IV-1] 연도별 준조세(사회보험료 제외) 추이

(단위: 억원, %)



준조세의 연도별 준조세 징수액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표 IV-22>와 같으며, 이는 [그림 IV-2]를 통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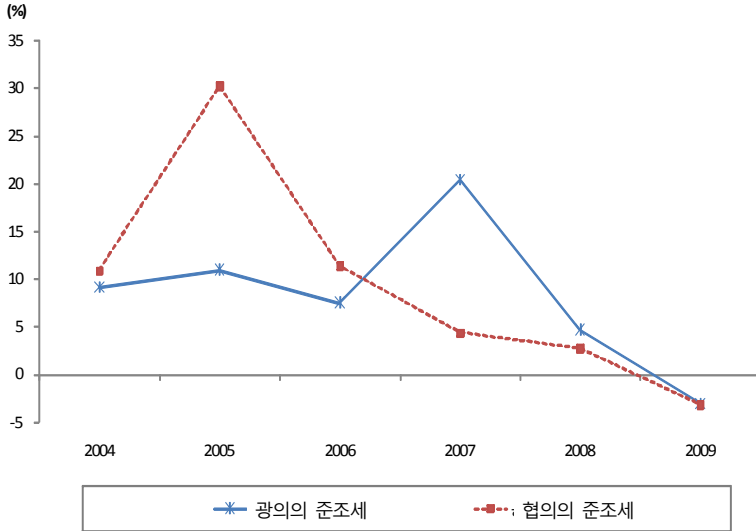
<표 IV-22> 연도별 준조세(사회보험료 제외) 징수액 증가율 추이

(단위: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광의의 준조세	9.14	10.97	7.53	20.43	4.68	-3.05
협의의 준조세	10.87	30.20	11.36	4.34	2.72	-3.16

[그림 IV-2] 연도별 준조세(사회보험료 제외) 증가율 추이

(단위: %)



도출한 결과를 통해 정부의 세수 및 GDP에서 준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연도별로 살펴보았다. <표 IV-23>을 통해 세수에서 준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정부의 세수에서 준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광의의 준조세의 경우 약 7% 내외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협의의 경우 정부의 세수에서 준조세의 비중은 1.5% 내외를 차지하며, 2006년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GDP에서 광의의 준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 내외로 나타났다. GDP에서 광의의 준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5%를 기준으로 하락하여 2009년에는 1.39%로 나타났으며, GDP에서 협의의 준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하여 2009년에는 0.29%로 나타났다.

IV. 준조세의 규모 81

〈표 IV-23〉 정부의 세수 및 GDP에서 준조세(사회보험료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억원, %)

	조세	GDP	준조세		조세 대비 준조세 비중		GDP 대비 준조세 비중	
			광의	협의	광의	협의	광의	협의
2003	1,478,000	7,671,137	93,005	18,305	6.29	1.24	1.21	0.24
2004	1,520,000	8,268,927	101,508	20,295	6.68	1.34	1.23	0.25
2005	1,634,000	8,652,409	112,647	26,424	6.89	1.62	1.30	0.31
2006	1,793,000	9,087,438	121,132	29,427	6.76	1.64	1.33	0.32
2007	2,050,000	9,750,130	145,882	30,704	7.12	1.50	1.50	0.31
2008	2,128,000	10,264,518	152,707	31,537	7.18	1.48	1.49	0.31
2009	2,097,000	10,630,591	148,047	30,540	7.06	1.46	1.39	0.29

주: 1. 조세: 100억원 이상 반올림
 2. GDP: 원화표시 명목 GDP, 2005년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준조세의 연도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표 IV-24〉와 같으며, 이는 법인세를 감안하여 도출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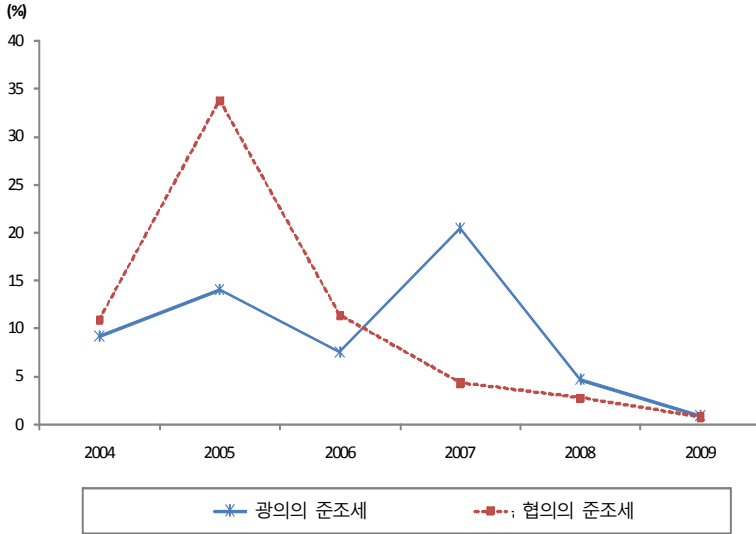
〈표 IV-24〉 법인세를 감안한 연도별 준조세(사회보험료 제외) 징수액 증가율 추이

(단위: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광의의 준조세	9.14	14.01	7.53	20.43	4.68	0.83
협의의 준조세	10.87	33.77	11.36	4.34	2.72	0.71

[그림 IV-3] 연도별 준조세(사회보험료 제외) 징수액 증가율 추이

(단위: %)



〈표 IV-23〉에서 법인세를 감안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정부의 세수에서 법인세를 감안한 준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았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기 위해 〈표 IV-25〉를 통해 세수에서 준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도출하였다.

〈표 IV-25〉를 보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정부의 세수에서 법인세를 감안한 광의의 준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 내외를 기록하며 2009년의 경우 5.51%로 나타난다. 그리고 협의의 준조세는 1.00% 내외를 기록하여 2009년에는 1.14%를 차지하였다.

GDP에서 광의의 준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0% 내외이며, 2007년 1.12%를 기준으로 하락하여 2009년에는 1.09%를 기록하였다. 반면 GDP에서 협의의 준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0.20% 내외를 보이며, 2006년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하여 2009년에는 0.22%를 기록하였다.

〈표 IV-25〉 정부의 세수 및 GDP 대비 법인세를 감안한 준조세(사회보험료 제외)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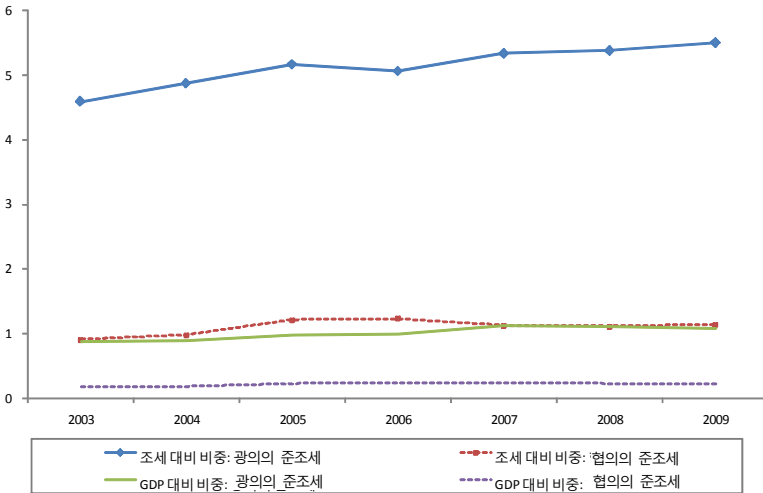
(단위: 억원, %)

	조세	GDP	광의의 준조세	협의의 준조세	조세 대비 비중		GDP 대비 비중	
					광의	협의	광의	협의
2003	1,478,000	7,671,137	67,894	13,363	4.59	0.90	0.89	0.17
2004	1,520,000	8,268,927	74,101	14,815	4.88	0.97	0.90	0.18
2005	1,634,000	8,652,409	84,485	19,818	5.17	1.21	0.98	0.23
2006	1,793,000	9,087,438	90,849	22,070	5.07	1.23	1.00	0.24
2007	2,050,000	9,750,130	109,412	23,028	5.34	1.12	1.12	0.24
2008	2,128,000	10,264,518	114,530	23,653	5.38	1.11	1.12	0.23
2009	2,097,000	10,630,591	115,477	23,822	5.51	1.14	1.09	0.22

주: 1. 조세: 100억원 이상 반올림
 2. GDP: 원화표시 명목 GDP, 2005년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V-4] 조세 및 GDP 대비 법인세를 감안한 준조세(사회보험료 제외) 비중의 변화

(단위: %)



통합재정 세입과 국세에서 법인세를 감안한 준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표 IV-26>과 같다. 통합재정 세입에서 법인세를 감안한 광의의 준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0% 내외를 보이며, 2008년에는 4.57%를 기록하였다. 반면 협의의 준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0% 내외를 보이며, 2006년 1.05%를 정점으로 다소 감소하여 2008년에는 0.94%로 나타났다. 2009년의 경우 국세에서 법인세를 감안한 광의의 준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7.02%로 나타났으며, 협의의 준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45%로 나타났다.

<표 IV-26> 통합재정 세입 및 국세 대비 법인세를 감안한
준조세(사회보험료 제외)의 비중

(단위: 억원, %)

	통합재정 세입	국세계	광의의 준조세	협의의 준조세	통합재정 세입 대비 비중		국세 대비 비중	
					광의	협의	광의	협의
2003	1,719,450	1,146,642	67,894	13,363	3.95	0.78	5.92	1.17
2004	1,787,600	1,177,957	74,101	14,815	4.15	0.83	6.29	1.26
2005	1,914,460	1,274,657	84,485	19,818	4.41	1.04	6.63	1.55
2006	2,095,730	1,380,443	90,849	22,070	4.33	1.05	6.58	1.60
2007	2,436,330	1,614,591	109,412	23,028	4.49	0.95	6.78	1.43
2008	2,507,130	1,673,060	114,530	23,653	4.57	0.94	6.85	1.41
2009	-	1,645,000	115,477	23,822	-	-	7.02	1.45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동향』, 각 호

법인세를 감안한 준조세가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표 IV-27>과 같다. 법인세 징수액에서 광의의 준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00% 내외를 기록하며, 2007년 36.61%를 기준으로 다소 감

IV. 준조세의 규모 85

소하여 2008년에는 30.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협의의 준조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광의의 경우와 유사한 형태를 기록하며, 2006년 8.32%를 정점으로 다소 감소하여 2008년에는 6.34%로 나타났다.

〈표 IV-27〉 법인세 징수액 대비 법인세를 감안한 준조세
(사회보험료 제외)의 비중

(단위: 억원, %)

	법인세 징수액	광의의 준조세	협의의 준조세	법인세 징수액 대비 비중	
				광의	협의
2003	223,461	67,894	13,363	30.38	5.98
2004	215,501	74,101	14,815	34.39	6.87
2005	267,150	84,485	19,818	31.62	7.42
2006	265,356	90,849	22,070	34.24	8.32
2007	298,851	109,412	23,028	36.61	7.71
2008	373,068	114,530	23,653	30.70	6.34
2009	-	115,477	23,822	-	-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통해 수입금액에서 법인세를 감안한 준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표 IV-28〉과 같다. 수입금액에서 광의의 준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0.40% 내외를 보이며, 2008년에는 0.41%를 기록하였다. 협의의 준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0.10% 내외이며, 2006년 0.10%를 정점으로 다소 감소하여 2008년에는 0.09%로 나타났다.

〈표 IV-28〉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 대비 법인세를 감안한
준조세(사회보험료 제외)의 비중

(단위: 억원, %)

	수입금액	결산서상	결산서상	광의의 준조세	협의의 준조세	수입금액 대비비중	
		당기순이익 수입금액	당기순손실 수입금액			광의	협의
2003	18,068,206	-	-	67,894	13,363	0.38	0.07
2004	19,108,208	-	-	74,101	14,815	0.39	0.08
2005	21,671,291	-	-	84,485	19,818	0.39	0.09
2006	22,595,602	-	-	90,849	22,070	0.40	0.10
2007	24,431,041	21,934,282	2,496,759	109,412	23,028	0.45	0.09
2008	27,756,790	25,236,007	2,520,783	114,530	23,653	0.41	0.09
2009	-	-	-	115,477	23,822	-	-

주: 2007년 이후 수입금액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중 수입금액'과 '결산서상 당기순손실 중 수입금액'을 합한 값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각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에서 준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표 IV-29〉에 나타난다.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를 감안한 광의의 준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의 경우 6.68%를 기록하였으며 협의의 준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38%로 나타났다.

〈표 IV-29〉 각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대비 준조세(사회보험료 제외)의 비중

(단위: 억원, %)

	흑자법인 당기순이익	광의의 준조세	협의의 준조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대비 비중	
				광의	협의
2003	859,219	67,894	13,363	7.90	1.56
2004	906,505	74,101	14,815	8.17	1.63
2005	1,206,530	84,485	19,818	7.00	1.64
2006	1,330,676	90,849	22,070	6.83	1.66
2007	1,493,361	109,412	23,028	7.33	1.54
2008	1,713,555	114,530	23,653	6.68	1.38
2009	-	115,477	23,822	-	-

주: 2007년 이후 당기순이익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중 당기순이익'과 '결산서상 당기순손실 중 당기순손실'을 합한 값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나. 사회보험료 포함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경우 준조세의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연도별 변화추이와 연도별 사회보험료의 준조세 규모를 정리하면 <표 IV-30> 과 같다.

<표 IV-30> 연도별 준조세 징수액 추이

(단위: 억원)

	광의의 준조세	협의의 준조세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 보험
2003	93,005	18,305	24,651	35,918	17,865	62,206	-
2004	101,508	20,295	28,961	42,404	19,628	69,977	-
2005	112,647	26,424	31,822	48,555	21,635	77,030	-
2006	121,132	29,427	37,495	55,849	23,195	84,735	-
2007	145,882	30,704	43,200	66,612	24,735	92,699	-
2008	152,707	31,537	47,349	78,598	26,809	98,809	1,765
2009	148,047	30,540	46,276	83,721	28,428	102,645	4,528

<표 IV-31> 연도별 준조세 징수액 추이(사회보험료 포함)

(단위: 억원,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광의의 준조세(A)	233,645	262,479	291,689	322,406	373,127	406,037	413,645
협의의 준조세(B)	158,945	181,266	205,466	230,701	257,949	284,867	296,138
비중(B/A)	68.03	69.06	70.44	71.56	69.13	70.16	71.59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해당 금액이 비용처리가 되어 법인세 납부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법인세율을 고려하여 사회보험료의 준조세 규모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32〉 법인세를 감안한 연도별 사회보험료의 준조세 규모

(단위: 억원, %)

	사회보험료의 준조세 규모	법인세율	법인세를 감안한 사회보험료의 준조세 규모
2003	140,640	0.27	102,667
2004	160,971	0.27	117,509
2005	179,042	0.25	134,282
2006	201,274	0.25	150,956
2007	227,245	0.25	170,434
2008	253,330	0.25	189,998
2009	265,598	0.22	207,167

기업의 부담금도 사회보장성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해당 금액이 비용처리가 되어 법인세 납부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법인세율을 고려하여 부담금의 준조세 규모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33〉 법인세를 감안한 연도별 준조세 규모(사회보험료 제외)

(단위: 억원, %)

	광의의 준조세(A)	협의의 준조세(B)	법인세율	법인세를 감안한 광의의 준조세(A)	법인세를 감안한 협의의 준조세(B)
2003	93,005	18,305	0.27	67,894	13,363
2004	101,508	20,295	0.27	74,101	14,815
2005	112,647	26,424	0.25	84,485	19,818
2006	121,132	29,427	0.25	90,849	22,070
2007	145,882	30,704	0.25	109,412	23,028
2008	152,707	31,537	0.25	114,530	23,653
2009	148,047	30,540	0.22	115,477	23,822

IV. 준조세의 규모 89

〈표 IV-32〉와 〈표 IV-33〉을 통해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준조세의 연도별 징수액을 살펴보면, 〈표 IV-34〉와 같으며, 이는 법인세를 감안하여 도출한 결과이다.

〈표 IV-34〉 법인세를 감안한 연도별 준조세(사회보험료 포함) 징수액 추이
(단위: 억원)

	광의의 준조세에 해당하는 부담금(A)	협의의 준조세에 해당하는 부담금(B)	사회보장성 보험료의 준조세 규모(C)	광의의 준조세 (D=A+C)	협의의 준조세 (E=B+C)
2003	67,894	13,363	102,666	170,560	116,029
2004	74,101	14,815	117,509	191,610	132,324
2005	84,485	19,818	134,281	218,766	154,099
2006	90,849	22,070	150,956	241,805	173,026
2007	109,412	23,028	170,434	279,846	193,462
2008	114,530	23,653	189,998	304,528	213,651
2009	115,477	23,822	207,167	322,644	230,989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준조세의 연도별 증가율은 〈표 IV-35〉에 나타나 있다. 광의 및 협의의 준조세 모두 2005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이나 광의의 경우 2007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신도시·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등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부담금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표 IV-35〉 법인세를 감안한 연도별 준조세(사회보험료 포함) 징수액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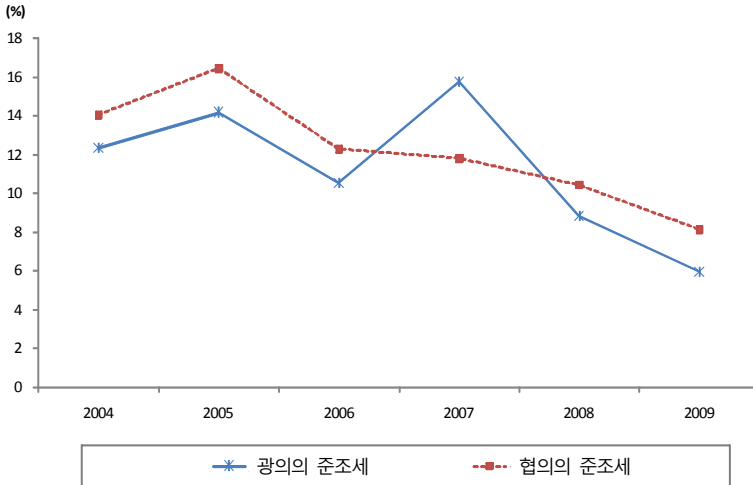
(단위: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광의의 준조세	12.34	14.17	10.53	15.73	8.82	5.95
협의의 준조세	14.04	16.46	12.28	11.81	10.44	8.11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경우와 비교해 보면 전체 추이는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2009년에 증가율은 둔화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체 준조세에서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회보험료의 변화추세가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본절에서 수행한 모든 분석에 이와 같은 결과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V-5] 법인세를 감안한 연도별 준조세(사회보험료 포함) 징수액 증가율 추이

(단위: %)



〈표 IV-36〉은 총조세 및 GDP 대비 준조세의 비중을 나타내며, GDP 대비 비중을 보면, 광의 및 협의의 준조세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9년의 경우에는 광의는 약 3.04%, 협의는 약 2.17%에 이르고 있다. 총조세 대비 비중을 보면, 광의의 준조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협의의 준조세는 2007년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9년 기준 광의는 15.39%, 협의는 11.02%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IV. 준조세의 규모 91

<표 IV-36> 정부의 세수 및 GDP 대비 준조세(사회보험료 포함)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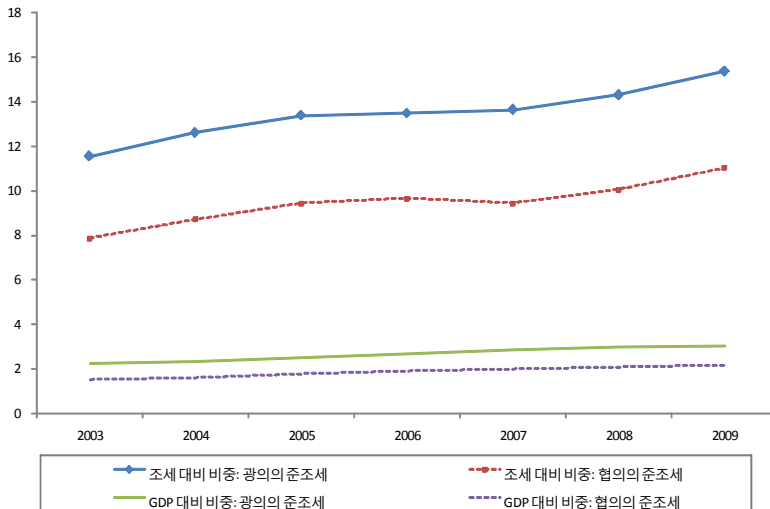
(단위: 억원, %)

	조세	GDP	광의의 준조세	협의의 준조세	조세 대비 비중		GDP 대비 비중	
					광의	협의	광의	협의
2003	1,478,000	7,671,137	170,560	116,029	11.54	7.85	2.22	1.51
2004	1,520,000	8,268,927	191,610	132,324	12.61	8.71	2.32	1.60
2005	1,634,000	8,652,409	218,766	154,099	13.39	9.43	2.53	1.78
2006	1,793,000	9,087,438	241,805	173,026	13.49	9.65	2.66	1.90
2007	2,050,000	9,750,130	279,846	193,462	13.65	9.44	2.87	1.98
2008	2,128,000	10,264,518	304,528	213,651	14.31	10.04	2.97	2.08
2009	2,097,000	10,630,591	322,644	230,989	15.39	11.02	3.04	2.17

- 주: 1. 조세: 100억원 이상 반올림
 2. GDP: 원화표시 명목 GDP, 2005년 기준
 3. 법인세를 감안하여 도출한 사회보험료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V-6] 조세 및 GDP 대비 준조세(사회보험료 포함) 비중의 변화

(단위: %)



〈표 IV-37〉은 통합재정 세입 및 국세 대비 준조세의 비중을 나타낸다. 통합재정 세입 대비 비중을 보면, 광의 및 협의 모두 2007년에 다소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의 통합재정 세입 대비 준조세의 비중은 광의는 약 12.15%, 협의는 약 8.52%에 이르고 있다.

국세 대비 비중을 보면, 광의의 준조세와 협의의 준조세 모두 2007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9년 기준 광의는 19.61%, 협의는 14.04%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표 IV-37〉 통합재정 세입 및 국세 대비 준조세(사회보험료 포함)의 비중
(단위: 억원, %)

	통합재정 세입	국세	광의의 준조세	협의의 준조세	통합재정 세입 대비 비중		국세 대비 비중	
					광의	협의	광의	협의
2003	1,719,450	1,146,642	170,560	116,029	9.92	6.75	14.87	10.12
2004	1,787,600	1,177,957	191,610	132,324	10.72	7.40	16.27	11.23
2005	1,914,460	1,274,657	218,766	154,099	11.43	8.05	17.16	12.09
2006	2,095,730	1,380,443	241,805	173,026	11.54	8.26	17.52	12.53
2007	2,436,330	1,614,591	279,846	193,462	11.49	7.94	17.33	11.98
2008	2,507,130	1,673,060	304,528	213,651	12.15	8.52	18.20	12.77
2009		1,645,000	322,644	230,989			19.61	14.04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동향』, 각 호

〈표 IV-38〉은 각 연도별 법인세수 대비 준조세의 비중을 나타낸다. 광의의 준조세는 2003년 76.33%에서 2004년 큰 폭으로 증가한 후 2005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2006년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법인세수의 변동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IV. 준조세의 규모 93

법인세수 대비 준조세의 비중은 2007년의 경우에는 93.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조세 이외의 부담이 거의 법인세수와 유사한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준조세의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원인이 있다. 협의의 준조세도 연도별 추세는 광의와 유사하며, 2008년 기준 57.27%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IV-38〉 법인세 징수액 대비 준조세(사회보험료 포함)의 비중

(단위: 억원, %)

	법인세 징수액	광의의 준조세	협의의 준조세	법인세 징수액 대비 비중	
				광의	협의
2003	223,461	170,560	116,029	76.33	51.92
2004	215,501	191,610	132,324	88.91	61.40
2005	267,150	218,766	154,099	81.89	57.68
2006	265,356	241,805	173,026	91.12	65.21
2007	298,851	279,846	193,462	93.64	64.74
2008	373,068	304,528	213,651	81.63	57.27
2009		322,644	230,989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IV-39〉는 각 연도별 수입금액 대비 준조세의 비중을 나타내며 광의의 준조세의 경우 2007년 1.15%까지 상승하였다가 2008년 1.10%로 하락하였다. 수입금액 대비 협의의 준조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이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2007년 0.79%까지 상승하였다가 2008년 0.77%로 하락하였다.

〈표 IV-39〉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 대비 준조세(사회보험료 포함)의 비중

(단위: 억원, %)

	수입금액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수입금액	결산서상 당기순손실 수입금액	광의의 준조세	협의의 준조세	수입금액 대비 비중	
						광의	협의
2003	18,068,206	-	-	170,560	116,029	0.94	0.64
2004	19,108,208	-	-	191,610	132,324	1.00	0.69
2005	21,671,291	-	-	218,766	154,099	1.01	0.71
2006	22,595,602	-	-	241,805	173,026	1.07	0.77
2007	24,431,041	21,934,282	2,496,759	279,846	193,462	1.15	0.79
2008	27,756,790	25,236,007	2,520,783	304,528	213,651	1.10	0.77
2009	-	-	-	322,644	230,989		

주: 2007년 이후 수입금액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중 수입금액'과 '결산서상 당기순손실 중 수입금액'을 합한 값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IV-40〉은 각 연도별 당기순이익 대비 준조세의 비중을 나타내며, 광의의 준조세는 2004년 21.14%까지 상승한 후 2005년 이후 18%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협의의 경우 약 13% 수준에서 광의의 준조세 비중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IV-40〉 각 사업연도 당기순이익(흑자법인) 대비 준조세
(사회보험료 포함)의 비중

(단위: 억원, %)

	흑자법인 당기순이익	광의의 준조세	협의의 준조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대비 비중	
				광의	협의
2003	859,219	170,560	116,029	19.85	13.50
2004	906,505	191,610	132,324	21.14	14.60
2005	1,206,530	218,766	154,099	18.13	12.77
2006	1,330,676	241,805	173,026	18.17	13.00
2007	1,493,361	279,846	193,462	18.74	12.95
2008	1,713,555	304,528	213,651	17.77	12.47
2009		322,644	230,989	-	-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V. 기부금의 비자발성 조사

1. 기업의 기부금 실태조사

가. 실태조사 개요

실태조사는 2009년 기준 300억원 이상 매출을 달성한 상공회의소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5,137개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 1,823개 기업에서 설문 결과가 회수되어 35.5%의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표본기업에 대한 자료 수집은 전화, 팩스, e-mail을 이용하여 설문조사지를 전달하고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0년 10월 02일부터 2010년 11월 08일까지 37일간이었다.

〈표 V-1〉 준조세 설문조사 개요 비교

	2004	2010
모 집 단	상공회의소 회원사 중 서울·경기도 및 6대 광역시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업 7,720개	300억원 이상 매출 상공회의소 회원 기업 5,137개
유 효 표 본	1,000개 *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50인 미만 9.5%, 50인 이상 300인 미만 77.2%, 300인 이상 13.3%	1,823 sample
표 본 추 출	-	Random Sampling by List
회 수 율	-	35.5%(1,823/5,137)
조 사 방 법	Fax, e-mail survey	Telephone, Fax, e-mail survey
조 사 기 간	2004년11월17일 ~ 12월7일	2010년10월2일 ~ 11월8일
조 사 기 관	-	(주)텔서치

설문조사의 표본집단은 <표 V-2>와 같으며, 이 표를 통해 상공회의소의 총회원사와 300억원 이상 매출 회원사의 구성을 알 수 있다.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상공회의소 총회원사는 66,814개로 이 중 매출 300억원 이상 기업 6,585개를 추출하였다.

<표 V-2> 설문조사 표본집단 구성

(단위: 개, %)

구분		상공회의소 총회원사		300억이상 매출 회원사	
		기업수	구성비	기업수	구성비
업종별	제조업	30,331	45.4	3,414	51.8
	건설업	7,340	11.0	569	8.6
	도소매업	15,901	23.8	1,068	16.2
	금융보험업	2,458	3.7	273	4.1
	운수업	2,100	3.1	249	3.8
	기타	8,684	13.0	1,012	15.4
	계	66,814	100.0	6,585	100.0
상장 · 비상장	거래소	651	1.0	608	9.2
	코스닥	866	1.3	618	9.4
	비상장	65,297	97.7	5,359	81.4
	계	66,814	100.0	6,585	100.0
법인 규모별	대기업	1,579	2.4	1,304	19.8
	중소기업	65,235	97.6	5,281	80.2
	계	66,814	100	6,585	200.0

표본집단을 토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성된 응답기업의 구성은 <표 V-3>에 나타나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911개로 50.0%

V. 기부금의 비자발성 조사 97

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도소매업이 283개업으로 15.5%, 건설업은 273개로 15.0%를 차지한다. 이를 법인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이 270개로 14.8%, 중소기업이 1,553개로 85.2%를 차지하였다.

응답기업을 상장·비상장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총 1,823개의 응답기업 중 거래소 상장기업은 143개이고, 코스닥 등록기업과 비상장기업은 각각 178개와 1,502개인데 각각 7.8%, 9.8%, 82.4%로 나타났다. 표본집단의 업종별·기업규모별 특성을 고려할 때 모집단의 특성과 유사하여, 설문조사 결과의 대표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V-3〉 2010년 업종 및 기업형태별 응답자 특성

(단위: 개, %)

구 분		기업 수	비 중
업종별	제조업	911	50.0
	건설업	273	15.0
	도소매업	283	15.5
	금융업	101	5.5
	운수업	69	3.8
	기타	186	10.2
	합계	1,823	100.0
법인규모별	대기업	270	14.8
	중소기업	1,553	85.2
	합계	1,823	100.0
상장·비상장	거래소	143	7.8
	코스닥	178	9.8
	비상장	1,502	82.4
	합계	1,823	100.0

아래의 <표 V-4>는 2010년 조사대상 기업의 현황을 나타내며, 응답 기업의 종업원 수·자본금·매출액·매출원가·당기순이익을 업종별·법인규모별·상장·비상장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표 V-4> 2010년 조사대상 기업 현황

(단위: 개, 명, 백만원)

		종업원 수	자본금	매출액	매출원가	당기순이익	
업 태 별	제조업	기업 수	911	911	911	889	880
		평균	178.93	13,581.19	128,257.58	110,387.47	7,594.73
	건설업	기업 수	273	273	273	273	273
		평균	173.26	15,897.07	186,897.87	158,984.17	10,119.03
	도소매업	기업 수	283	280	283	275	276
		평균	244.42	11,753.13	274,570.41	206,820.30	8,580.38
	금융업	기업 수	101	101	101	10	101
		평균	409.20	106,498.94	935,834.87	2,058,270.30	32,859.81
	운수업	기업 수	69	69	69	65	69
		평균	867.33	72,099.07	655,549.78	639,186.66	-19,452.74
	기타	기업 수	186	177	185	178	174
		평균	518.36	59,302.92	175,383.48	141,571.88	15,515.67
법 인 규 모 별	대기업	기업 수	270	267	269	265	266
		평균	1,137.86	100,690.08	981,983.72	629,099.63	40,470.26
	중소기업	기업 수	1,553	1,544	1,553	1,425	1,507
		평균	109.37	12,530.33	98,914.21	83,530.49	3,799.12
상 장 · 비 상 장	거래소	기업 수	143	142	143	138	143
		평균	1,183.62	146,125.06	1,352,624.29	832,739.54	48,063.16
	코스닥	기업 수	178	178	178	171	176
		평균	304.11	19,309.64	168,178.65	143,138.81	12,015.80
	비상장	기업 수	1,502	1,491	1,501	1,381	1,454
		평균	168.89	14,784.85	129,517.87	105,972.17	5,159.94
전체	기업 수	1,823	1,811	1,822	1,690	1,773	
	평균	261.69	25,527.93	229,290.56	169,078.32	9,300.83	

V. 기부금의 비자발성 조사 99

〈표 V-5〉는 2004년 조사대상 기업의 현황을 나타내며, 2004년에도 2010년과 마찬가지로 응답기업의 종업원 수·자본금·매출액·매출원가·당기순이익을 업종별·법인규모별·상장·비상장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표 V-5〉 2004년 조사대상기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명)

	표본 기업수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종업원 수	
		기업수	평균	기업수	평균	기업수	평균	기업수	평균
전체	1,000	999	44,426	1,000	93,001	911	8,325	1,000	217
기업규모별									
대기업	130	130	302,457	130	492,815	130	46,223	130	934
중소기업	870	869	5,825	870	33,258	781	2,017	870	101
기업형태별									
거래소	76	76	110,574	76	488,077	76	42,047	76	810
코스닥	56	56	9,002	56	79,566	56	3,994	56	211
비상장	868	867	40,915	868	59,275	779	5,346	868	166
업종별									
제조업	639	638	9,747	639	48,682	587	2,700	639	171
건설업	79	79	69,952	79	91,040	70	5,530	79	194
도소매업	82	82	6,841	82	81,900	79	3,432	82	147
금융업	52	52	273,497	52	594,337	49	57,785	52	792
운수업	125	125	138,862	125	50,646	106	3,942	125	251
기타	23	23	21,556	23	467,341	20	104,586	23	348

주: 표본기업 수가 1000개 미만인 항목은 해당 항목에 대한 무응답 때문임.

〈표 V-4〉와 〈표 V-5〉를 토대로 2010년과 2004년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한 결과는 〈표 V-6〉과 같다. 2004년에 1,0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던 것과 달리 2010년에는 1,823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표본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시켰다.

〈표 V-6〉 2010년과 2004년 조사대상 기업 현황

(단위: 개, 명, 백만원)

		2010				2004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전체	기업 수	1,823	1,811	1,822	1,773	1,000	999	1,000	911		
	평균	262	25,528	229,291	9,301	217	44,426	93,001	8,325		
업 태 별	제조업	기업 수	911	911	911	880	639	638	639	587	
		평균	179	13,581	128,258	7,595	171	9,747	48,682	2,700	
	건설업	기업 수	273	273	273	273	79	79	79	70	
		평균	173	15,897	186,898	10,119	194	69,952	91,040	5,530	
	도소 매업	기업 수	283	280	283	276	82	82	82	79	
		평균	244	11,753	274,570	8,580	147	6,841	81,900	3,432	
	금융업	기업 수	101	101	101	101	52	52	52	49	
		평균	409	106,499	935,835	32,860	792	273,497	594,337	57,785	
	운수업	기업 수	69	69	69	69	125	125	125	106	
		평균	867	72,099	655,550	-19,453	251	138,862	50,646	3,942	
	기타	기업 수	186	177	185	174	23	23	23	20	
		평균	518	59,303	175,383	15,516	348	21,556	467,341	104,586	
	법 인 규 모 별	대기업	기업 수	270	267	269	266	130	130	130	130
			평균	1,138	100,690	981,984	40,470	934	302,457	492,815	46,223
		중소 기업	기업 수	1,553	1,544	1,553	1,507	870	869	870	781
			평균	109	12,530	98,914	3,799	101	5,825	33,258	2,017
	상 장 · 비 상 장	거래소	기업 수	143	142	143	143	76	76	76	76
			평균	1,184	146,125	1,352,624	48,063	810	110,574	488,077	42,047
코스닥		기업 수	178	178	178	176	56	56	56	56	
		평균	304	19,310	168,179	12,016	211	9,002	79,566	3,994	
비상장		기업 수	1,502	1,491	1,501	1,454	868	867	868	779	
		평균	169	14,785	129,518	5,160	166	40,915	59,275	5,346	

주: 표본기업 수의 차이는 해당 항목에 대한 무응답 때문임.

나. 실태조사 결과

1) 기부금 수혜단체별 특성

2010년 설문조사 결과를 기부단체별로 나누어 자발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V-7>에 나타나 있으며, 기부단체별 자발성을 살펴보면 직접활동단체에 대한 기부가 상대적으로 비자발적임을 알 수 있다.

비자발성을 '다소 강제적'과 '완전 강제적'에 국한하여 살펴보면, 순수모금단체에 응답한 기업의 1.0%와 기타기부단체의 0.0%가 '다소 강제적' 및 '완전 강제적'에 응답한 반면, 직접활동단체의 경우 응답기업의 11.0%가 '다소 강제적'과 '완전 강제적'에 응답하였다.

<표 V-7> 기부금 수혜단체의 특성

(단위: 개, %)

		지출 동기(N/%)					전체
		완전 자발적	다소 자발적	중립적	다소 강제적	완전 강제적	
순수모금단체	빈도	1,083	545	59	16	1	1,704
	비율	63.6	32.0	3.5	0.9	0.1	100
					1.0		
					4.5		
직접활동단체	빈도	97	134	38	31	2	302
	비율	32.1	44.4	12.6	10.3	0.7	100
					11.0		
					23.6		
기타기부단체	빈도	3	14	1	-	-	18
	비율	16.7	77.8	5.6	-	-	100
					0.0		
					5.6		

주: 중복 응답한 업체가 존재하므로 각 항목별 소계의 합과 응답업체 전체 합계는 일치하지 않음.

비자발성을 ‘중립적’인 응답까지 확대하면, 순수모금단체에 응답한 기업의 4.5%와 기타 기부단체에 응답한 기업의 5.6%가 지출한 기부금이 비자발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직접활동단체의 경우 응답기업의 23.6%가 ‘중립적’, ‘다소 강제적’, ‘완전 강제적’에 응답하여 비자발적인 영역에 응답하였다.

2) 기부금별 자발성 결과

〈표 V-8〉을 통해 손금산입대상 기부금의 조사기업을 비교해보면 조사대상 기업 중 1,502개의 업체가 지정기부금에 기부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많은 업체가 지정기부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당 평균 기부액은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의 순서로 나타나 기업당 평균 기부액은 법정기부금에 더 많은 액수를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8〉 손금산입대상 기부금의 조사기업 결과

(단위: 개, 만원)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기업 수	평균	합계	기업 수	평균	합계	기업 수	평균	합계
제조업	156	35,477	5,534,489	238	32,008	7,618,009	731	12,032	8,795,450
건설업	73	75,814	54,955,410	135	11,289	1,524,061	223	4,100	914,314
도소매업	46	13,397	616,242	51	8,513	434,175	255	10,415	2,655,782
금융업	32	79,654	2,548,930	42	149,907	6,296,104	82	45,926	3,765,893
운수업	4	244,469	977,877	17	152,618	2,594,503	64	20,731	1,326,815
기타	42	16,545	694,905	67	27,771	1,860,683	147	9,931	1,459,857
대기업	86	118,489	10,190,045	114	148,815	16,964,869	229	66,678	15,269,201
중소기업	267	206,509	55,137,808	436	7,713	3,362,666	1,273	2,866	3,648,910
거래소	47	184,269	8,660,626	57	241,126	13,744,162	115	115,617	13,295,965
코스닥	41	20,272	831,168	55	23,315	1,282,339	149	9,409	1,401,955
비상장	265	210,702	55,836,059	438	12,103	5,301,034	1,238	3,409	4,220,191
합계	353	185,065	65,327,853	550	36,959	20,327,535	1,502	12,595	18,918,111

V. 기부금의 비자발성 조사 103

2010년 설문조사 결과를 기부금별로 나누어 자발성을 분석한 결과가 <표 V-9>에 나타나 있다. 기부금별 자발성을 살펴보면, 다른 기부금에 비해 법정기부금이 상대적으로 비자발적임을 알 수 있다. 지출동기가 '완전 강제적' 또는 '다소 강제적'이라는 의견은 법정기부금에서는 8.2%이지만, 특례기부금에서는 2.5%이고 지정기부금에서는 1.3%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의 성향을 고려하여 지출동기가 '완전 강제적' 또는 '다소 강제적'이라는 의견에 '중립적'이라는 의견을 포함하여 살펴보면,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18.2%, 특례기부금은 12.2%, 지정기부금은 11.3%로 비자발성이 확대됨을 알 수 있다.

<표 V-9> 기부금별 자발성 결과(2010년)

(단위: 개, %)

		지출동기(N/%)					합계
		완전 자발적	다소 자발적	중립적	다소 강제적	완전 강제적	
법정기부금	응답 수	149	161	38	31	0	379
	비율	39.3	42.5	10.0	8.2	-	100.0
		39.3	42.5	10.0	8.2		
		39.3	42.5	18.2			
특례기부금	응답 수	306	262	63	15	1	647
	비율	47.3	40.5	9.7	2.3	0.2	100.0
		47.3	40.5	9.7	2.5		
		47.3	40.5	12.2			
지정기부금	응답 수	1,186	569	198	24	1	1,978
	비율	60.0	28.8	10.0	1.2	0.1	100.0
		60.0	28.8	10.0	1.3		
		60.0	28.8	11.3			

〈표 V-10〉은 2004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나타낸다. 우선 법정기부금의 경우를 보면, 2010년 설문조사에서는 ‘완전 강제적’과 ‘다소 강제적’이라는 응답이 8.2%였으나 2004년의 경우에는 4.62%로 나타나 비자발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중립적’인 응답까지 확대하여 살펴보면 2010년에는 18.2%로 나타났지만 2004년에는 19.24%로 비자발성 정도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의 경우에는 2010년 ‘완전 강제적’과 ‘다소 강제적’이라는 응답이 각각 2.5%와 1.3%였지만 2004년에는 2.15%와 6.11%로 나타났다. 이를 ‘중립적’인 응답까지 확대하면 지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은 2010년에는 각각 12.2%와 11.3%를 차지하였지만 2004년에는 19.89%와 17.32%로 나타나 비자발성이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v-10〉 기부금별 자발성 결과(2004년)

(단위: 개, %)

		지 출 동 기(N/%)					합계
		완전 자발적	다소 자발적	중립적	다소 강제적	완전 강제적	
법정기부금	응답 수	207	63	38	10	2	260
	비율	79.62	24.23	14.62	3.85	0.77	
					4.62		
		19.24					
특례기부금	응답 수	164	28	33	4	-	186
	비율	88.17	15.05	17.74	2.15	-	
					2.15		
		19.89					
지정기부금	응답 수	534	90	66	31	5	589
	비율	90.66	15.28	11.21	5.26	0.85	
					6.11		
		17.32					

가) 법정기부금

2010년 설문조사는 법령을 기준으로 세부 항목을 분류하여 법정기부금을 국가·지자체 기증 금품,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 금품, 사립학교 등에 대한 시설비 외, 기타 기부단체로 구성하였으며, 그 결과를 빈도와 비율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업체는 353개로 이 중 국가·지자체 기증 금품 영역에 기부했다는 응답은 114개로 평균 48억 2,467만원을 기부하였다.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에는 22개 기업이 기부하였으며, 평균 1,924만원을 기부하였고, 이 중 17개 기업이 기부금 납부가 자발적·중립적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V-11〉 법정기부금 유형별 자발성 결과(2010)

(단위: 개, 만원, %)

	평균 금액	지 출 동 기(N/%)					전체	
		완전 자발적	다소 자발적	중립적	다소 강제적	완전 강제적		
국가·지자체 기증 금품	응답 수	114	25	49	20	19	0	113
	비율	482,468	22.1	43.4	17.7	16.8	-	100.0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응답 수	22	7	9	1	5	0	22
	비율	1,924	31.8	40.9	4.5	22.7	-	100.0
이재민 구호 금품	응답 수	45	21	21	2	1	0	45
	비율	8,778	46.7	46.7	4.4	2.2	-	100.0
사립학교 등에 대한 시설비 외	응답 수	174	86	70	14	4	0	174
	비율	56,217	49.4	40.2	8.0	2.3	-	100.0
기타 기부단체	응답 수	25	10	12	1	2	0	25
	비율	4,297	40.0	48.0	4.0	8.0	-	100.0

주: 1. 전체 법정기부금 납부 기업의 총합이 353개를 초과하는 까닭은 해당항목이 응답 수입에 유의.

2. 국가·지자체 기증 금품의 응답 수가 평균금액의 경우에는 114개이나 전체는 113개인 까닭은 평균금액은 기입하고, 지출동기는 기입하지 않은 답변이 있기 때문임.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업체 중 '완전 강제적'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한곳도 없었으며 '다소 강제적'이라고 응답한 응답 수는 31개로 전체 응답의 8.2%를 차지하였다. 법정기부금의 자발성을 나타낸 결과는 <표 V-11>에 있다.

<표 V-12> 2004년과 2010년 법정기부금의 지출항목별 기부금 및 강제성 정도

(단위: 개, %)

	지출항목	지 출 동 기(N/%)				
		완전 자발적	다소 자발적	중립적	다소 강제적	완전 강제적
2004	국가 또는 지자체기부금	15 (42.9)	11 (31.4)	6 (17.1)	3 (8.6)	-
	국방헌금·국군장병위문금품	6 (33.3)	5 (27.8)	3 (16.7)	2 (11.1)	2 (11.1)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133 (78.7)	24 (14.2)	11 (6.5)	1 (0.6)	-
	정당 및 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51 (54.3)	21 (22.3)	18 (19.1)	4 (4.3)	-
	세부항목 거절	2 (50.0)	2 (50.0)	-	-	-
2010	국가·지자체 기증 금품	25 (22.1)	49 (43.4)	20 (17.7)	19 (16.8)	0 -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7 (31.8)	9 (40.9)	1 (4.5)	5 (22.7)	0 -
	이재민 구호 금품	21 (46.7)	21 (46.7)	2 (4.4)	1 (2.2)	0 -
	사립학교 등에 대한 시설비 외	86 (49.4)	70 (40.2)	14 (8.0)	4 (2.3)	0 -
	기타 기부단체	10 (40.0)	12 (48.0)	1 (4.0)	2 (8.0)	0 -

주: 중복 응답한 업체가 존재하므로 각 항목별 소계의 합과 응답업체 전체 합계는 일치하지 않음

<표 V-12>는 2004년과 2010년의 설문조사에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 지출에 응답한 업체를 비교한 결과이다. 2004년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에 기부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169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0년에는 사립학교 등에 대한 시설비에

기부한 응답 수가 174개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4년의 경우에는 국방헌금·국군장병 위문금품에 지출한 기부금이 '완전 강제적'이었다고 응답한 업체가 2곳이 있었지만, 2010년의 경우 법정 기부금의 전체 영역에서 '완전 강제적'에 응답한 기업은 존재하지 않았다.

유사한 지출항목을 대상으로 비자발성을 '중립적'까지 확대하여 2004년과 2010년의 결과를 비교하면, 국방헌금과 이재민 구호금품의 경우 비자발성이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반면 국가 또는 지자체 기부금의 경우 2010년에 비자발성이 더 크게 나타나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 특례기부금

조사대상 기업 중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 지출에 응답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 V-13>에 나타나 있다. 특례기부금에 응답한 업체가 가장 많은 기부금을 기부한 영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239개 회사가 이 영역에 기부했다고 응답하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뒤를 이어 대학기부금을 지출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88개가 있다. 특례기부금은 그 대상이 다양하여 기타 영역에 속하는 곳에 기부금을 납부했다는 응답도 39개나 되었다.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업체 중 '완전 강제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사립학교병원(사립학교병원·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서울대치과병원·대한적십자병원·국립암센터·지방의료원 시설비·교육비·연구비 영역, 이하 사립학교 병원)에 기부한 기업 중 한 곳이 있었으며, '다소 강제적'이라고 응답한 수도 15개 기업이 있었다.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했다고 응답한 8개 기업 중 1개 기업만이 '다소 자발적'이라고 응답했고 나머지 7개 기업은 '다소 강제적'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이외에는 사립학교병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문화예술진흥기금,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기부금 등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표 V-13〉 특례기부금의 유형별 자발성 결과(2010)

(단위: 개, 만원, %)

		평균금액	지출동기(N/%)					전체
			완전 자발적	다 소 자발적	중립적	다 소 강제적	완 전 강제적	
사립학교병원	응답 수	39	22	9	6	1	1	39
	비율	5,175.46	56.4	23.1	15.4	2.6	2.6	100.0
한국과학 기술원 등	응답 수	4	2	1	1	0	0	4
	비율	375.00	50.0	25.0	25.0	-	-	100.0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응답 수	239	100	128	9	1	0	238
	비율	27,246.69	42.0	53.8	3.8	0.4	-	100.0
문화예술진흥 기금	응답 수	28	14	8	5	1	0	28
	비율	99,980.64	50.0	28.6	17.9	3.6	-	100.0
사내근로복지 기금	응답 수	108	67	33	8	0	0	108
	비율	70,826.78	62.0	30.6	7.4	-	-	100.0
특정연구기관	응답 수	4	2	1	0	1	0	4
	비율	26,800.00	50.0	25.0	-	25.0	-	100.0
정부출연연구 기관	응답 수	5	3	1	0	1	0	5
	비율	1,164.00	60.0	20.0	-	20.0	-	100.0
한국교육방송 공사	응답 수	2	1	1	0	0	0	2
	비율	225.00	50.0	50.0	-	-	-	100.0
한국국제교류 재단	응답 수	26	16	7	3	0	0	26
	비율	12,622.15	61.5	26.9	11.5	-	-	100.0
복지증진 비영리법인	응답 수	35	25	8	2	0	0	35
비율	1,024.23	71.4	22.9	5.7	-	-	100.0	
국민신탁법인	응답 수	1	1	0	0	0	0	1
	비율	1.00	100.0	-	-	-	-	100.0
박물관미술관	응답 수	4	2	2	0	0	0	4
	비율	1,125.00	50.0	50.0	-	-	-	100.0
국제행사조직 위원회	응답 수	2	1	1	0	0	0	2
	비율	330.00	50.0	50.0	-	-	-	100.0
휴면예금관리 재단	응답 수	8	0	1	0	7	0	8
	비율	93,625.00	-	12.5	-	87.5	-	100.0
저소득층 생활안정 비영리법인	응답 수	16	11	5	0	0	0	16
	비율	1,844.69	68.8	31.3	-	-	-	100.0
대학기부금 대상	응답 수	88	24	42	21	1	0	88
	비율	16,561.48	27.3	47.7	23.9	1.1	-	100.0
기타기부단체	응답 수	41	15	14	8	2	0	39
	비율	10,851.27	38.5	35.9	20.5	5.1	-	100.0

〈표 V-14〉는 2004년 손금산입 대상 특례기부금의 지출항목별 기부금 및 강제성 정도를 나타낸다. 2004년과 2010년의 조사결과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기부금 대상이 세분화 되어 직접적인 비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표 V-14〉 손금산입 대상 특례기부금의 지출항목별 기부금 및 강제성 정도(2004년)

(단위: 개, 만원, %)

	응답 업체 수	금액		지출동기(N/%)				
		전체	평균	완전 자발적	다소 자발적	중립적	다소 강제적	완전 강제적
사립학교 등	66	695,357	10,536	55 (83.3)	7 (10.6)	4 (6.1)	-	-
사내근로복지 기금	33	3,131,520	94,895	18 (54.5)	8 (24.2)	7 (21.2)	-	-
문화예술진흥 기금	8	21,225	2,653	4 (50.0)	-	4 (50.0)	-	-
특정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등)	8	89,420	11,178	7 (87.5)	-	1 (12.5)	-	-
사회단체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등)	93	221,366	2,380	69 (74.2)	8 (8.6)	13 (14.0)	3 (3.2)	-
정부출연연구 기관	5	850	170	3 (60.0)	1 (20.0)	-	1 (20.0)	-
기타 조특법상 기부금	13	39,342	3,026	8 (61.5)	1 (7.7)	4 (30.8)	-	-
세부항목거절	3	1,216,000	405,333	-	3 (100.0)	-	-	-
소계	186	5,415,080	29,113	164	28	33	4	0

주: 1. 중복 응답한 업체가 존재하므로 각 항목별 소계의 합과 응답업체 전체 합계는 일치하지 않으며 합계 업체 수 754개에는 기부금 세부항목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1개 업체가 포함되어 있음.

2. 지출동기 각각의 소계는 각 분야별 응답의 단순 합으로 중복응답이 존재하여 이것의 합계는 응답업체 수와 일치하지 않음.

다) 지정기부금

〈표 V-15〉 지정기부금의 유형별 자발성 결과(2010)

(단위: 개, 만원, %)

	평균금액	지 출 동 기(N/%)						전체
		완 전 자발적	다소 자발적	중립적	다소 강제적	완전 강제적		
사회복지시설	빈도	468	270	168	25	4	0	467
	비율	11,389	57.8	36.0	5.4	0.9	-	100.0
						0.9		
						6.3		
블우이웃돕기 결연기관	빈도	448	315	95	34	1	0	445
	비율	2,346	70.8	21.3	7.6	0.2	-	100.0
						0.2		
						7.8		
재정부장관 지정단체	빈도	578	333	172	63	7	0	575
	비율	17,681	57.9	29.9	11.0	1.2	-	100.0
						1.2		
						12.2		
기획재정부령 지정기부금단체	빈도	278	169	61	43	3	0	276
	비율	660	61.2	22.1	15.6	1.1	-	100.0
						1.1		
						16.7		
특별회비, 임의단체 회비	빈도	75	31	21	22	1	0	75
	비율	10,622	41.3	28.0	29.3	1.3	-	100.0
						1.3		
						30.6		
기타 기부단체	빈도	140	68	52	11	8	1	140
	비율	9,553	48.6	37.1	7.9	5.7	0.7	100.0
						6.4		
						14.3		

조사대상 기업 중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설문조사를 지정기부금 유형 별로 분류한 결과는 <표 V-15>에 나타나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납부한 지정기부금이 '완전 강제적'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한 곳이 있었으며, '다소 강제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4개였다.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기업의 경우 전체 468개 기업 중 4개만이 다소 강제적이라고 응답하여 0.9%를 차지하였고,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한 기부의 경우에는 한 개 기업만이 '다소 강제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사회복지법인, 학교, 학술·장학·기술진흥, 문화예술·환경단체, 종교, 의료법인, 주무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등에 기부한 기업은 578개로 이 중 7개, 1.2%만이 '다소 강제적'이라고 대답하였으며 '완전 강제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른 기부금에 비하여 자발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16> 손금산입 대상 지정기부금의 지출항목별 기부금 및 강제성 정도(2004년)

(단위: 개, 만원, %)

	응답 업체 수	금액		지 출 동 기(N/%)					
		전체	평균	완전 자발적	다소 자발적	중립적	다소 강제적	완전 강제적	
지 정 기 부 금	불우이웃 돕기성금	367	8,880,646	24,198	312 (85.0)	39 (10.6)	15 (4.1)	1 (0.3)	-
	학술단체	28	85,905	3,068	21 (75.0)	5 (17.9)	1 (3.6)	1 (3.6)	-
	문화단체	15	47,681	3,179	10 (66.7)	1 (6.7)	4 (26.7)	-	-
	종교단체	36	90,619	2,517	34 (94.4)	-	1 (2.8)	1 (2.8)	-
	사회단체	135	124,567	923	92 (68.1)	19 (14.1)	16 (11.9)	5 (3.7)	3 (2.2)
	기타지정 기부금	141	32,552,178	230,867	62 (44.0)	25 (17.7)	29 (20.6)	23 (16.3)	2 (1.4)
	세부항목 거절	4	2,402,600	600,650	3 (75.0)	1 (25.0)	-	-	-
소계	589	44,184,196	75,016	534	90	66	31	5	

- 주: 1. 중복 응답한 업체가 존재하므로 각 항목별 소계의 합과 응답업체 전체 합계는 일치하지 않으며 합계 업체수 754개에는 기부금 세부항목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1개 업체가 포함되어 있음.
 2. 지출동기 각각의 소계는 각 분야별 응답의 단순합으로 중복응답이 존재하여 이것의 합계는 응답업체 수와 일치하지 않음.

〈표 V-16〉은 2004년 손금산입 대상 지정기부금의 지출항목별 기부금 및 강제성 정도를 나타낸다. 지정기부금의 자발성 정도는 2004년과 2010년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업종별 자발성 결과

〈표 V-17〉 업종별 자발성 결과

(단위: 개, %)

		지 출 동 기(N/%)					합계
		완전 자발적	다소 자발적	중립적	다소 강제적	완전 강제적	
제조업	응답 수	810	405	115	19	2	1,351
	비율	60.0	30.0	8.5	1.4	0.1	100
		60.0	30.0	8.5	1.5		
		60.0	30.0	10			
건설업	응답 수	225	194	73	32	0	524
	비율	42.9	37.0	13.9	6.1	0	100
		42.9	37.0	13.9	6.1		
		42.9	37.0	20			
도소매업	응답 수	224	219	59	4	0	506
	비율	44.3	43.3	11.7	0.8	0	100
		44.3	43.3	11.7	0.8		
		44.3	43.3	12.5			
금융업	응답 수	95	65	26	13	0	199
	비율	47.7	32.7	13.1	6.5	0	100
		47.7	32.7	13.1	6.5		
		47.7	32.7	19.6			
운수업	응답 수	102	12	2	1	0	117
	비율	87.2	10.3	1.7	0.9	0	100
		87.2	10.3	1.7	0.9		
		87.2	10.3	2.6			
기타	응답 수	185	97	24	1	0	307
	비율	60.3	31.6	7.8	0.3	0.0	100
		60.3	31.6	7.8	0.3		
		60.3	31.6	8.2			
합계	응답 수	1,641	992	299	70	2	3,004
	비율	54.6	33.0	10.0	2.3	0.1	100.0

〈표 V-17〉을 통해 2010년의 업종별 자발성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기부금의 경우 건설업에서 기부금의 강제성에 응답한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다. 건설업과 금융업에서 ‘다소 강제적’과 ‘완전 강제적’에 응답한 비율이 각각 6.1%, 6.5%로 조사되어 이 두 업종이 다른 영역에 비해 기부금에 대한 자발성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소 강제적’과 ‘완전 강제적’에 응답한 비율에 ‘중립적’이라고 응답한 비율까지 포함하면 건설업의 경우 20.0%이고, 금융업의 경우 19.6%로 제조업 10.0%, 도소매업 12.5%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법인규모 및 기업 형태별 자발성 결과

〈표 V-18〉을 통해 법인규모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완전 강제적’과 ‘다소 강제적’에 응답한 업체의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2.7%p 높으며, 중립적인 영역까지 확대할 경우에도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5.7%p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완전 강제적’에 응답한 대기업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의 기업이 응답하였다.

〈표 V-18〉 법인규모별 자발성 결과

(단위: 개, %)

		지출 동기(N/%)					합계
		완전 자발적	다소 자발적	중립적	다소 강제적	완전 강제적	
대기업	응답 수	253	237	73	27	0	590
	비율	42.9	40.2	12.4	4.6	-	100.0
		42.9	40.2	12.4	4.6		
		42.9	40.2	17.0			
중소기업	응답 수	1,388	755	226	43	2	2,414
	비율	57.5	31.3	9.4	1.8	0.1	100.0
		57.5	31.3	9.4	1.9		
		57.5	31.3	11.3			
합계	응답 수	1,641	992	299	70	2	3,004
	비율	54.6	33.0	10.0	2.3	0.1	100.0

기업의 상장 여부에 따라 분류하여 기부금의 지출동기를 조사한 결과 <표 V-19>에 나타나 있다. '중립적'까지 확대할 경우 거래소 기업은 14.7%, 코스닥 기업은 10.6%, 비상장기업은 12.2%에 해당하며 거래소 기업의 비자발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 기업의 비자발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V-19> 상장·비상장별 자발성 결과

(단위: 개, %)

		지 출 동 기(N/%)					합계
		완전 자발적	다소 자발적	중립적	다소 강제적	완전 강제적	
거래소	응답 수	148	119	39	7	0	313
	비율	47.3	38.0	12.5	2.2	-	100.0
		47.3	38.0	12.5	2.2		
		47.3	38.0	14.7			
코스닥	응답 수	140	131	30	2	0	303
	비율	46.2	43.2	9.9	0.7	-	100.0
		46.2	43.2	9.9	0.7		
		46.2	43.2	10.6			
비상장	응답 수	1,353	742	230	61	2	2,388
	비율	56.7	31.1	9.6	2.6	0.1	100.0
		56.7	31.1	9.6	2.6		
		56.7	31.1	12.2			
합계	응답 수	1,641	992	299	70	2	3,004
	비율	54.6	33.0	10.0	2.3	0.1	100.0

5) 기부금 결정과 세제혜택의 관계

조사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기부 결정과 세제혜택의 관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V-20>과 같다. 운수업의 경우 전체 69개의 운수업 중 40개 응답이 기업의 기부 결정과 세제혜택

이 전혀 무관하다고 조사되었고, 27개가 다소 무관하다고 응답하여 각각 58.0%와 39.1%를 차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운수업 중 중립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2곳으로 기부와 세제의 영향에 대해 정(+)¹의 관계에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는 운수업의 2009년 당기순이익이 음수인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V-20〉 기업의 기부 결정과 세제혜택의 관계 설문조사 결과

(단위: 개, %)

		지 출 동 기(N/%)					전체	
		상당한 영향	다소 영향	중립적	다소 무관	전혀 무관		
업종별	제조업	빈도	2	297	171	279	162	911
		비율	0.2	32.6	18.8	30.6	17.8	100.0
	건설업	빈도	0	101	29	54	89	273
		비율	-	37.0	10.6	19.8	32.6	100.0
	도소매업	빈도	5	113	36	123	6	283
		비율	1.8	39.9	12.7	43.5	2.1	100.0
	금융업	빈도	0	28	10	14	49	101
		비율	-	27.7	9.9	13.9	48.5	100.0
	운수업	빈도	0	0	2	27	40	69
		비율	-	-	2.9	39.1	58.0	100.0
기타	빈도	1	84	32	58	11	186	
	비율	0.5	45.2	17.2	31.2	5.9	100.0	
법인규모별	대기업	빈도	5	113	46	76	30	270
		비율	1.9	41.9	17.0	28.1	11.1	100.0
	중소기업	빈도	3	510	234	479	327	1,553
		비율	0.2	32.8	15.1	30.8	21.1	100.0
상장·비상장	거래소	빈도	3	69	22	30	19	143
		비율	2.1	48.3	15.4	21.0	13.3	100.0
	코스닥	빈도	0	80	34	36	28	178
		비율	-	44.9	19.1	20.2	15.7	100.0
	비상장	빈도	5	474	224	489	310	1,502
		비율	0.3	31.6	14.9	32.6	20.6	100.0
전체	빈도	8	623	280	555	357	1,823	
	비율	0.4	34.2	15.4	30.4	19.6	100.0	

금융업의 경우 전체 101개 기업 중에서 49개 기업은 전혀 무관하다고 응답하였고, 14개 기업은 다소 무관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0개 기업은 중립적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결과 전체 101개 기업 중 28개, 즉 27.7%만이 다소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1,828개 기업 중 단 8개 기업만이 기업의 기부 결정과 세제혜택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여 0.4%를 차지하였으며, 623개 기업은 다소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전체의 34.6%만이 기업의 기부 결정과 세제혜택이 상당한 영향 또는 다소 영향을 미친다고 조사되었다.

6) 기부금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지출

기부금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기부금성 지출을 조합 또는 협회비·지방자치단체 지원비·규제담당 공무원 대상 지출의 3가지로 분류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표 V-21>에 나타난다. 각 분류에서 비자발성의 측면에서 1위를 차지한 영역을 기록해 놓았다. 조합 또는 협회비를 지출한 기업 중 '다소 강제적', '완전 강제적'으로 응답한 기업 중에서 비자발성이 가장 높은 업종은 25%를 차지한 금융업이었으며, 중립적인 응답까지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56%를 차지한 건설업의 비자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경우 전체 업종에서 '다소 강제적'·'완전 강제적'이라는 응답은 없었으며, 중립적인 영역까지 포함할 경우 도소매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응답수가 2개에 불과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타의 경우에도 도소매업과 기타의 응답 수가 1개로 유의미한 해석을 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표 V-21〉 기부금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지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단위: 만원, 개, %)

		금액	지 출 동 기(N/%)					전체	비자발성 상위 영역	
			완전 자발적	다소 자발적	중립적	다소 강제적	완전 강제적		다소 강제적, 완전 강제적	중립적, 다소 강제적, 완전 강제적
조합 또는 협회비	빈도	580	173	244	121	41	1	580	금융업	건설업
	비율	2,988	29.8	42.1	20.9	7.1	0.2	100.0	25.0	56.0
지방자치단체 지원	빈도	13	2	5	6	-	-	13	전체업종	도소매업
	비율	3,463	15.4	38.5	46.2	-	-	100.0	0.0	100.0
규제담당 공무원 대상 지출	빈도	-	-	-	-	-	-	-	-	-
	비율	-	-	-	-	-	-	-	-	-
기타	빈도	8	-	4	3	-	-	7	전업종	도소매업 기타
	비율	4,953	-	57.1	42.9	-	-	100.0	0.0	100.0

주: 1.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경우 도소매업 응답 수가 2임에 유의
 2. 기타의 경우 도소매업과 기타의 응답 수가 1임에 유의

7) 분야별 기부금

〈표 V-22〉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분야별 기부금과 각 분야별 기부금에 대한 빈도와 비율을 나타낸다.

분야별 설문조사의 문항은 giving USA 및 UK giving과 같은 외국의 기부 관련 서적의 분류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빈도는 각 영역에

대한 기부기업의 수를 나타내며, 비율은 각 분야에 기부한 기부액에서 지출동기의 자발성을 나타낸다. 또한 복지 영역은 장애인 복지, 영유아 및 아동복지, 노인복지, 노숙자 자활사업의 네 가지로 분류했다.

분야별 기부금의 자발성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표 V-23>에 부분합을 도표에 기록해 놓았다.

종교 분야의 경우 '다소 강제적' 또는 '완전 강제적'에 응답한 기업이 없었으며, 1.00%만이 '중립적'에 응답하였다. 전체 기부 분야 중 가장 강제성이 높은 분야는 '환경 생태계 보전' 영역으로 '다소 강제적' 또는 '완전 강제적'에 응답한 기업이 33.30%를 차지하며, '중립적'에 응답한 기업까지 더하면 전체 기부 기업의 44.40%가 기부금이 강제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전체 기부 분야 중 두번째로 강제성이 높은 분야는 '지역사회 발전' 영역으로 '다소 강제적' 또는 '완전 강제적'에 응답한 기업의 경우에는 4.60%에 불과하지만, '중립적'이라고 응답한 기업까지 계산할 경우에는 33.50%의 기업이 해당 기부금이 강제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국제적·전국적 범위에서 활동하는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기타 영역은 '중립적'이라고 응답한 기업까지 계산할 경우에 13.20%에 불과하지만, '다소 강제적' 또는 '완전 강제적'에 응답한 기업은 7.20%에 이른다. 기타 분야에 속하는 항목은 사격장사고성금, 한국인협회, 우리사주조합, 우리민족돕기운동, 한국노총, 상조금, 육군발전협회, 석유화학협회, 재해피해기금, 남북농업발전협회, 지역공단 행사 지원금 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V. 기부금의 비자발성 조사 119

〈표 V-22〉 분야별 기부금에 대한 빈도와 비율

(단위: 만원, 개, %)

	평균 금액	지출동기					전체		
		완전 자발적	다소 자발적	중립적	다소 강제적	완전 강제적			
종교	빈도	98	65	32	1	0	0	98	
	비율	7,648	66.3	32.7	1.0	-	-	100.0	
교육학술	빈도	464	195	230	33	6	0	464	
	비율	29,555	42.0	49.6	7.1	1.3	-	100.0	
시민사회 구축사업	빈도	68	51	12	2	1	1	67	
	비율	93,062	76.1	17.9	3.0	1.5	1.5	100.0	
건강	빈도	23	16	6	1	0	0	23	
	비율	13,020	69.6	26.1	4.3	-	-	100.0	
예술·문화	빈도	63	25	27	10	1	0	63	
	비율	116,303	39.7	42.9	15.9	1.6	-	100.0	
국제구호	빈도	195	92	88	9	1	0	190	
	비율	4,868	48.4	46.3	4.7	0.5	-	100.0	
환경생태계보전	빈도	9	2	3	1	3	0	9	
	비율	8,308	22.2	33.3	11.1	33.3	-	100.0	
복지	전체	빈도	681	394	210	71	4	0	679
		비율	22,029	58.0	30.9	10.5	0.6	-	100.0
	장애인 복지	빈도	236	147	83	3	1	0	234
		비율	4,953	62.8	35.5	1.3	0.4	-	100.0
	영유아 및 아동복지	빈도	314	174	126	6	1	0	307
		비율	2,345	56.7	41.0	2.0	0.3	-	100.0
	노인 복지	빈도	110	65	39	3	1	0	108
		비율	1,786	60.2	36.1	2.8	0.9	-	100.0
	노숙자 자활사업	빈도	6	4	2	0	0	0	6
		비율	1,711	66.7	33.3	-	-	-	100.0
	스포츠	빈도	27	8	14	3	1	0	26
		비율	3,601	30.8	53.8	11.5	3.8	-	100.0
병원 및 의료산업	빈도	105	58	33	13	1	0	105	
	비율	2,779	55.2	31.4	12.4	1.0	-	100.0	
지역사회 발전	빈도	367	151	93	106	15	2	367	
	비율	152,388	41.1	25.3	28.9	4.1	0.5	100.0	
건전 경제활동촉진	빈도	11	2	9	0	0	0	11	
	비율	69,645	18.2	81.8	-	-	-	100.0	
기타	빈도	87	44	28	5	5	1	83	
	비율	9,389	53.0	33.7	6.0	6.0	1.2	100.0	

〈표 V-23〉 분야별 자발성 설문조사 결과

(단위: %)

	지 출 동 기(N/%)					전체	
	완전 자발적	다소 자발적	중립적	다소 강제적	완전 강제적		
종교	66.3	32.7	1.0	0.0	0.0	100.0	
	66.3	32.7	1.0	0.0			
	66.3	32.7	1.0				
교육학술	42.0	49.6	7.1	1.3	0.0	100.0	
	42.0	49.6	7.1	1.3			
	42.0	49.6	8.4				
시민사회 구축사업	76.1	17.9	3.0	1.5	1.5	100.0	
	76.1	17.9	3.0	3.0			
	76.1	17.9	6.0				
건강	69.6	26.1	4.3	0.0	0.0	100.0	
	69.6	26.1	4.3	0.0			
	69.6	26.1	4.3				
예술·문화	39.7	42.9	15.9	1.6	0.0	100.0	
	39.7	42.9	15.9	1.6			
	39.7	42.9	17.5				
국제구호	48.4	46.3	4.7	0.5	0.0	100.0	
	48.4	46.3	4.7	0.5			
	48.4	46.3	5.2				
환경생태계보전	22.2	33.3	11.1	33.3	0.0	100.0	
	22.2	33.3	11.1	33.3			
	22.2	33.3	44.4				
복지	전체	58.0	30.9	10.5	0.6	0.0	100.0
		58.0	30.9	10.5	0.6		
		58.0	30.9	11.1			
	장애인 복지	62.8	35.5	1.3	0.4	0.0	100.0
		62.8	35.5	1.3	0.4		
		62.8	35.5	1.7			
	영유아 및 아동복지	56.7	41.0	2.0	0.3	0.0	100.0
		56.7	41.0	2.0	0.3		
		56.7	41.0	2.3			

〈표 V-23〉의 계속

		지출 동 기(N/%)					전체	
		완전 자발적	다소 자발적	중립적	다소 강제적	완전 강제적		
노인 복지		60.2	36.1	2.8	0.9	0.0	100.0	
		60.2	36.1	2.8	0.9			
		60.2	36.1	3.7				
	노숙자 자활사업		66.7	33.3	0.0	0.0	0.0	100.0
			66.7	33.3	0.0	0.0		
			66.7	33.3	0.0			
스포츠		30.8	53.8	11.5	3.8	0.0	100.0	
		30.8	53.8	11.5	3.8			
		30.8	53.8	15.3				
병원 및 의료산업		55.2	31.4	12.4	1.0	0.0	100.0	
		55.2	31.4	12.4	1.0			
		55.2	31.4	13.4				
지역사회 발전		41.1	25.3	28.9	4.1	0.5	100.0	
		41.1	25.3	28.9	4.6			
		41.1	25.3	33.5				
건전 경제활동촉진		18.2	81.8	0.0	0.0	0.0	100.0	
		18.2	81.8	0.0	0.0			
		18.2	81.8	0.0				
기타		53.0	33.7	6.0	6.0	1.2	100.0	
		53.0	33.7	6.0	7.2			
		53.0	33.7	13.2				

준조세성 기부금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의 핵심목표와는 다소 차별화되지만, 기부금의 분야별 지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포함한 설문
문의 조사결과는 부록에 정리되어 있다.

다. 준조세 산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한 기부금 지출의 강제성 정도를 통해 실제 기부금 지출액 중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을 산출하고자 한다. 기부금 중 준조세 성격의 금액은 기부금 총액에 '완전 강제적'과 '다소 강제적'이라고 응답한 업체 수의 비중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표 V-24〉 강제적 성격의 기부금 규모(완전 강제적·다소 강제적)(2009년)

(단위: 억원, %)

		2009 기부금액 ¹⁾	법인세율	지출동기 ²⁾	준조세에 포함되는 규모
완전 강제적 다소 강제적	법정기부금	9,437	22	8.2	604
	특례기부금	9,516	22	2.5	186
	지정기부금	15,054	22	1.3	153

주: 1) 2009년 기부금액은 해당연도에 법인세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위 표의 2009년 기부금액이란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에 속하는 신고분을 의미함.

2) 지출동기는 '완전 강제적' 또는 '다소 강제적'이라고 응답한 응답수의 비율을 말함.

〈표 V-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출 동기가 '완전 강제적' 또는 '다소 강제적'이라고 응답한 업체의 비중을 이용하여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2009년 기부금 신고액은 3조 4,007억원으로 이 중 법정기부금 신고액은 9,437억원이며, 특례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각각 9,516억원과 1조 5,054억원을 기록하였다. 각 기부금별로 손금산입의 한도에 차이가 있으나 기업기부의 대부분이 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여 전액 손금산입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법정기부금 중 비자발적인 비중은 8.2%로 비자발적 기부금의 규모

V. 기부금의 비자발성 조사 123

는 $9,437\text{억원} \times 0.082$ (비자발적 비중)을 계산하면 774억원이며, 이에 손금산입을 고려하여 $(1-0.22)$ 를 곱하면 준조세의 규모를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약 604억원이 준조세의 규모에 포함된다.

같은 방법으로 특례기부금 중 비자발적인 기부금의 규모를 구하면 $9,516\text{억원} \times 0.025$ (비자발적 비중) $\times(1-0.22)$ 로 186억원이 준조세의 규모에 포함된다.

지정기부금도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도출하면 1조 5,054억원 $\times 0.013$ (비자발적 비중) $\times(1-0.22)$ 을 계산하여 약 153억원이 준조세의 규모에 포함된다.

〈표 V-25〉는 비자발적 기부금의 범위를 '중립적'으로 응답한 기부금으로 확대할 경우 준조세에 포함되는 각 기부금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표 V-25〉 강제적 성격의 기부금 규모(완전강제적·다소강제적·중립적)(2009년)

(단위: 억원, %)

		2009 기부금액 ¹⁾	법인세율	지출동기 ²⁾	준조세에 포함되는 규모
완전 강제적 다소 강제적 중립적	법정기부금	9,437	22	18.2	1,340
	특례기부금	9,516	22	12.2	906
	지정기부금	15,054	22	11.3	1,327

주: 1) 2009 기부금액은 해당연도에 법인세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위 표의 2009년 기부금액이란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에 속하는 신고분을 의미함.

2) 지출동기는 '완전 강제적', '다소 강제적', '중립적'이라고 응답한 응답 수의 비율을 말함.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정기부금 중 비자발적인 기부금의 규모를 구하면 $9,437\text{억원} \times 0.182$ (비자발적 비중) $\times(1-0.22)$ 을 통해 약 1,340억원이 준조세의 규모에 포함된다. 특례기부금 중 비자발적인 기부금의 규모는 $9,516\text{억원} \times 0.122$ (비자발적 비중) $\times(1-0.22)$ 로 약 906억원이 준조

세의 규모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지정기부금 중 비자발적인 기부금의 규모를 구하면 1조 5,054억원×0.113(비자발적 비중)×(1-0.22)로 이를 계산하면 약 1,327억원이 준조세의 규모에 포함된다.

이상에서 산출한 비자발적인 기부금의 규모를 부담금 및 사회보험료를 기반으로 산출한 준조세의 규모에 추가하여 최종적인 준조세의 규모를 도출하면 <표 V-26>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V-26> 강제적 성격의 기부금 규모(2009년)

(단위: 억원)

		기부금 준조세액
기부금 I	완전 강제적, 다소 강제적	943
기부금 II	완전 강제적, 다소 강제적, 중립적	3,573

- 주: 1. 기부금 I은 '다소 강제적' 및 '완전 강제적' 응답을 기준으로 산출
2. 기부금 II는 기부금 I에 '중립적' 응답을 포함하여 산출

<표 V-27> 기부금을 고려한 준조세 규모(2009년)

(단위: 억원)

		분류	준조세액
기부금 제외	사회보험료 제외	광의의 준조세	115,477
		협의의 준조세	23,822
	사회보험료 포함	광의의 준조세	322,644
		협의의 준조세	230,989
기부금 I 포함	사회보험료 제외	광의의 준조세	116,420
		협의의 준조세	24,765
	사회보험료 포함	광의의 준조세	323,587
		협의의 준조세	231,932
기부금 II 포함	사회보험료 제외	광의의 준조세	119,050
		협의의 준조세	27,395
	사회보험료 포함	광의의 준조세	326,217
		협의의 준조세	234,562

- 주: 1. 기부금 I은 '다소강제적' 및 '완전강제적' 응답을 기준으로 산출
2. 기부금 II는 기부금 I에 '중립적' 응답을 포함하여 산출
3. 모든 수치는 법인세 소득공제를 고려한 것임.

라. 개인부담을 고려한 준조세

본절에서는 앞에서 규모를 산출한 준조세 중에서 실질적인 부담주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기업 이외에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준조세의 종류를 파악하고, 그 규모를 산출하여 준조세의 범위에 포함된 부담 중에서 실질적인 기업의 부담과 개인의 부담을 구분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준조세를 구성하고 있는 부담금, 사회보험료 및 비자발성기부금 중에서 부담금의 경우 기업과 개인이 동시에 부담하는 사례의 가능성이 있어 부담금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을 수행한다.

2009년 현재 운용되고 있는 99개의 부담금 중에서 개인 부담의 가능성이 있는 부담금은 <표 V-28>에 있는 13개의 부담금이 해당한다. 이 중에서 개인만이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국제교류기여금, 재건축부담금, 전기사용자일시부담금을 꼽을 수 있다.

국제교류기여금은 여권을 발급받을 때 부담하는 비용으로 일정부분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의 경우도 재건축지역에 주거를 희망하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개인만이 부담의 대상이라고 간주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지역에 있는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는 전기사용자부담금은 전기공급에 대한 대가로 정액으로 1회 부담하는 것으로 대부분 개인이 부담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10개의 부담금은 개인과 기업이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각 부담의 비중과 규모는 관련 통계가 존재해야 산출할 수 있다. 10개의 부담금에 대해서는 입수 가능한 최대한의 자료 및 통계를 활용하여 개인과 기업이 부담하는 비중과 규모를 산출한다.

〈표 V-28〉 개인 부담 부담금(2009년)

(단위: 백만원)

부담금명 (설치연도)	설치근거	설치목적	부과기관	부과대상	부과기준 (부과요율)	징수기관	귀속주체	징수액 ('09년)	
								협의 포함 여부	
1. 국제교류 기여금 (1991년)	한국국제교류 재단법 제16조	한국국제교류 재단의 국제교류 기금조성	한국국제교류 재단	여권을 발급 받는 자	여권 종류에 따라 2,000~15,000원	한국국제교 류재단	중앙정부: 국제교류기금 (100%)	36,746	○
2. 국제빈곤 퇴치 기여금 (2007년)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8조의2	개발도상국의 빈곤 및 질병 퇴치를 지원	외교통상부	공형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	출국 항공권 1매당 1,000원	외교통상부 (위탁)	한국국제협력 단(100%)	14,206	○
3. 출국 납부금 (1997년)	관광진흥개발 기금법 제2조	관광사업의 발전 및 관광외화 수입의 증대	한국항공공사, 인천국제공항 공사, 부산항만 공사, 인천항만공사, 지방해양항공청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	1인당 1만원 (선박이용시 1천원)	한국항공공사, 인천국제공항 공사, 부산항만 공사, 인천항만공사, 지방해양항공청	중앙정부: 관광진흥개발 기금 (100%)	138,450	○

〈표 V-28〉의 계속

부담금명 (설치연도)	설치근거	설치목적	부과기관	부과대상	부과기준 (부과요율)	징수기관	귀속주체	징수액 (09년) 협의 포함 여부
4. 회원제골프장 골프장 시설 임장료에 대한 부가금 (1982년)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23조 및 55조	고소득계층으 로 주대상이 제한되는 회원제골프장 임장료에 대한 부가금 사업을 통해 체육기금 조성	국민체육진흥 공단	회원제골프장 시설 이용자	1인 1라운드로당 차등 부과 · 1만원~2만원 : 1,000원 · 2만원~3만원 : 1,500원 · 3만원~4만원 : 2,000원 · 4만원~5만원 : 2,500원 · 5만원 이상 : 3,000원	국민체육 진흥공단	중앙정부: 국민체육진흥 기금(97.8%) 공단 등 기타: 개별회원제 골프장운영자 (2.2%)	20,024 ○
5. 농어촌친기공급 사업촉진법 제3조 (1984년)	농어촌친기공급 사업촉진법 제3조	친기미공급 지역의 친기공급을 촉진하여 농어민의 생활향상 도모	한국전력공사	농어촌친기 공급사업 지역에 있는 친기 사용자	정액(16만4천원)	한국전력공사	공단 등 기타: 한국전력공사 (100%)	4 ×
6.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2000년)	친기사업법 제51조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	한국전력공사	친기사용자	전기요금 × 37/1,000	한국전력공사	중앙정부: 전력산업기반 기금(100%)	1,191,734 ×

〈표 V-28〉의 계속

부담금명 (설치연도)	설치근거	설치목적	부과기관	부과대상	부과기준 (부과요율)	징수기관	귀속주체	징수액 ('09년) 협의 포함 여부
7. 물이용 부담금 (한강수계) (1999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한강수계 상수원지역 수질 개선사업 및 주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시·군 수도사업자 및 한국수자원공사	공공 지역에서 취수된 유수(流水)를 사용하는 최종수요자	물사용량 × 부과요율(160원/톤)	시·군 수도사업자 및 한국수자원공사	중앙정부: 한강수계관리 기금(100%)	397,652 ×
8. 환경개선 부담금 (1991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경유 등 환경오염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배출자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 추진책임 부과	시·군·구	법에 의거한 시설 소유자 (연면적 160㎡) 및 경유 자동차 소유자	〈시설물〉 연료(용수)사용량×단위당 부과금액×연료(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 〈자동차〉 대당 기본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차량계수×지역계수	시·군·구 환경개선특별회계(100%)	619,196 ○	

〈표 V-28〉의 계속

부담금명 (설치연도)	설치근거	설치목적	부과기관	부과대상	부과기준 (부과요율)	징수기관	귀속주체	징수액 ('09년) 협의 포함 여부
9. 물이용 부담금 (금강수계) (2002년)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제 30조	금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 으로 추진	시·군 수도사업자 및 한국 수자원공사	공공수역에서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	물사용량 × 부과요율 (160원/톤)	시·군 수도사업자 및 한국수자원 공사	중앙정부: 금강수계관리 기금(100%)	83,729 ×
10. 물이용 부담금 (낙동강 수계) (2002년)	낙동강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낙동강수계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사업을 효율적 으로 추진	시·군 수도사업자 및 한국수자원공 사	공공수역에서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	물사용량 × 부과요율 (150원/톤)	시·군 수도사업자 및 한국수자원 공사	중앙정부: 낙동강수계관 리기금(100%)	184,527 ×

〈표 V-28〉의 계속

부담금명 (설치연도)	설치근거	설치목적	부과기관	부과대상	부과기준 (부과요율)	징수기관	귀속주체	징수액 ('09년) 협의 포함 여부
11. 물이용 부담금 (영산강 ·섬진강 수계) (2002년)	영산강·섬진강 수계물관리및주 민지원등에관한 법률 제30조	영산강·섬진 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시·군 수도사업자 및 한국수자원 공사	공공수역에서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	물시용량 × 부과요율(170원/톤)	시·군 수도사업자 및 한국 수자원공사	중앙정부: 영산강·섬진 강수계관리기금 (100%)	62,483 ×
12. 혼잡 통행료 (1995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	도심으로 진입 하는 자동차를 감축시키거나 우회하도록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혼잡을 완화	서울특별시	교통혼잡 지역으로 진입하는 자동차의 운행자	당해 지자체의 조례 (남산 1·3호 터널 통과차량에 대해 2,000원 부과)	서울특별시 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00%)	서울특별시:도 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00%)	15,805 ×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가 부담하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과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가 부담하는 출국납부금의 경우 <표 V-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관광공사가 수행하는 ‘국민 해외여행 실태조사’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해외여행 주목적의 비중에 따라 그 비중을 구한다.

<표 V-29> 해외여행 주목적(2005~2008년)

(단위: %)

구분	2008	2007	2005
여가/위락/휴가	46.8	60.5	66.8
사업/전문활동	30.4	26.4	20.7
친구/친지 방문	12.3	8.8	8.7
교육/어학연수	8.5	2.3	2.1
종교/순례	1.7	1.7	1.4
건강/치료	0.3	0.1	-
기타	0.0	0.2	0.3
계	100.0	100.0	100.0

주: 2008년 조사시 교육/어학연수 항목 추가. 2005년 2007년은 교육/어학연수 항목이 별도로 있지 않고, 기타 응답에서 집계한 ‘교육/연수’와 비교하였음

자료: 한국관광공사, 「국민 해외여행 실태조사」, 2008

해외여행 주목적 중에 사업 및 전문활동에 해당하는 비중이 기업이 부담하는 비중이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분류하면, 기업이 부담하는 비중은 약 30.4%에 해당하고, 개인이 부담하는 비중은 약 69.6%에 해당한다. 이를 토대로 부담금의 규모를 산출하면 국제빈곤 퇴치기여금의 경우 총 142억원 부담금 중 기업의 부담은 43.2억원이고, 출국납부금의 경우 총 1,385억원 중 기업의 부담은 421.0억원에 해당한다.

V. 기부금의 비자발성 조사 133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의 경우 개인과 기업이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표 V-30>에서 보여주는 계약종별 판매수입의 통계를 활용하여 개인과 기업이 부담하는 비중을 추정한다. 계약종별 판매수입 중에서 기업과 관련된 것은 산업용(46.31%) 전체와 일반용(26.77%) 중 극히 일부분인데 구체적인 통계가 없기 때문에 약 50%를 기업이 부담하는 비중으로 간주하여 규모를 산출한다. 그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의 2009년 징수액 1조 1,917억원 중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규모가 5,958.5억원이고, 개인이 부담하는 규모가 5,958.5억원에 이른다.

<표 V-30> 계약종별 판매수입(2009년)

(단위: 백만원, %)

구분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계
판매수입액	6,801,454	8,827,082	540,273	15,270,617	407,448	226,431	901,714	32,975,019
비율	20.63	26.77	1.64	46.31	1.24	0.69	2.73	100.00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속보」 384호, 2010년 10월

공공수역에서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가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의 경우 개인과 기업 모두 부담하고 있으나, 그 비중을 추정할 수 있는 관련통계가 없어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에서 추정된 개인 및 기업의 비중을 준용하여 그 규모를 추정한다. 물이용부담금은 수계별로 한강수계,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및 영산강·섬진강수계의 4개 부담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각각의 물이용부담금에 50%의 비중을 적용하여 규모를 산출하면 총 7,284억원의 물이용부담금 중 기업의 부담은 3,642억원이고, 개인의 부담은 3,642억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부과되고 있는데, 시설물의 경우 대부분 기업이 부담하고 있고, 경유자동차의 경우 기업과 개인이 모두 부담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2009년 총징수액 6,191.96억원 중에서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규모가 경유자동차에 의한 징수액이 4,586.29억원이고, 시설물에 의한 징수액이 1,605.67억원이다.

경유자동차는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로 구분되며, 이 중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대부분 기업이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고 비사업용 경유승용차만이 개인이 소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 기준 전체 경유자동차 등록대수인 628만 4,554대 중 비사업용 승용차는 261만 6,940대이다. 오염유발계수와 차령계수 및 지역계수의 가중치를 기준치인 1로 놓고 비사업용승용차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계산하면, 전체 비사업용승용차 수 \times 20,250원(부담금액) \times 2(납부 횟수)의 식이 도출된다. 이를 계산하면 1,059.86억원이 나온다.

따라서 경유자동차에 의한 징수액 4,586.29억원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규모는 1,059.86억원으로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분은 3,526.43억원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 총 징수액 6,191.96억원 중에서 개인의 부담분은 1,059.86억원이고 기업이 부담하는 규모는 5,132.10억원으로 추정된다.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의 경우 회원골프장 시설이 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기업과 개인이 모두 부담하고 있으나 그 비중을 알 수 있는 관련통계가 없어 추정에 어려움이 있고, 교통혼잡지역으로 진입하는 자동차의 운행자에게 부과하는 혼잡통행료도 기업과 개인이 모두 부담하고 있으나 관련통계가 없어 추정에 어려움이 있다.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과 혼잡통행료의 경우 자료의 제약으로 추정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업과 개인의 비중을 각각 50% 가정하고 그 규모를 산출한다. 부담규모를 산출하면,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의 경우 기업과 개인이 부담하는 규모가

V. 기부금의 비자발성 조사 135

100.12억원에 해당하고, 혼잡통행료의 경우 기업과 개인이 부담하는 규모가 79.03억원에 이른다.

이상에서 산출한 순수 기업부담의 규모를 토대로 광의 및 협의의 준조세를 재산출하고, GDP 대비, 법인세수 대비, 수입금액 대비, 당기순이익 대비 비중을 재산출하여 분석한다.

2009년 기준 사회보험료의 준조세 규모인 26조 5,598억원을 부담금 규모에 합산하면, <표 V-31>과 같이 광의 및 협의의 준조세 규모를 도출할 수 있다.

사회보험료를 제외할 경우 2009년 기업의 준조세 규모는 광의의 경우 13조 5,857억원에 이르고 협의의 경우 2조 7,951억원에 이르고 있다. 사회보험료를 포함할 경우 기업의 준조세 부담은 광의의 경우 40조 1,455억원이고 협의는 29조 3,549억원이다.

<표 V-31> 개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감안한 준조세 규모(2009년)

(단위: 억원)

	분류	부담금액
사회보험료 제외	광의의 준조세	135,857
	협의의 준조세	27,951
사회보험료 포함	광의의 준조세	401,455
	협의의 준조세	293,549

2009년 사회보험료에 법인세를 고려하면 20조 7,167억원이 도출되며, 부담금의 경우에도 법인세를 고려하여 준조세성 부담금의 규모를 도출하면, <표 V-32>가 산출된다.

〈표 V-32〉 준조세에 해당하는 부담금 규모(2009년)

(단위: 억원, %)

	준조세에 해당하는 부담금	법인세 최고세율	법인세를 감안한 부담금
광의	135,857	0.22	105,968
협의	27,951	0.22	21,801

이 결과를 종합하여 법인세를 고려한 2009년 준조세의 규모를 도출한 결과는 다음의 〈표 V-33〉에 나타나 있다. 사회보험료를 포함할 경우 2009년 기업의 준조세 부담은 광의의 경우 31조 3,135억 원이고, 협의의 경우에는 22조 8,968억 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2009년 기업의 준조세 부담은 광의의 경우 10조 5,968억 원이고, 협의의 경우에는 2조 1,801억 원에 이른다.

〈표 IV-33〉 법인세를 감안한 부담금 규모(2009년)

(단위: 억원)

	분류	부담금액
사회보험료 제외	광의의 준조세	105,968
	협의의 준조세	21,801
사회보험료 포함	광의의 준조세	313,135
	협의의 준조세	228,968

〈표 V-34〉를 통해 총조세 및 GDP 대비 법인세를 감안한 준조세의 비중을 보면, 조세 대비 비중은 광의는 약 5.05%, 협의는 약 1.04%에 이르고 GDP 대비 비중은 광의는 약 1.00%, 협의는 약 0.21%에 달하고 있다.

V. 기부금의 비자발성 조사 137

국세에서 법인세를 감안한 준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광의의 준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44%로 나타나며, 협의의 준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33%로 나타난다.

〈표 V-34〉 정부의 세수·GDP·국세 대비 법인세를 감안한 준조세(사회보험료 제외)의 비중(2009년)

(단위: 억원, %)

	금액	비중	
		광의	협의
조세	2,097,000	광의	5.05
		협의	1.04
GDP	10,630,591	광의	1.00
		협의	0.21
국세	1,645,000	광의	6.44
		협의	1.33
광의의 준조세	105,968		
협의의 준조세	21,801		

- 주: 1. 조세: 100억원 이상 반올림
 2. GDP: 원화표시 명목 GDP, 2005년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동향』, 각 호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준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표 V-35〉를 통해 볼 수 있다. 2009년의 경우 총조세 대비 준조세의 비중은 광의는 약 14.93%, 협의는 약 10.92%에 이르고 있다. GDP와 비교하면 광의는 2.95%, 협의는 2.15%의 비중을 나타내며, 국세의 경우 광의는 19.04%, 협의는 13.92%의 비중을 보인다.

〈표 V-35〉 정부의 세수·GDP·국세 대비 법인세를 감안한
준조세(사회보험료 포함)의 비중(2009년)

(단위: 억원, %)

	금액	비중	
		광의	협의
조세	2,097,000	광의	14.93
		협의	10.92
GDP	10,630,591	광의	2.95
		협의	2.15
국세	1,645,000	광의	19.04
		협의	13.92
광의의 준조세	313,135		
협의의 준조세	228,968		

주: 1. 조세: 100억원 이상 반올림

2. GDP: 원화표시 명목 GDP, 2005년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동향』, 각 호

〈표 V-36〉 강제적 성격의 기부금 규모(2009년)

(단위: 억원)

		기부금 준조세액
기부금 I	완전 강제적, 다소 강제적	943
기부금 II	완전 강제적, 다소 강제적, 중립적	3,573

주: 1. 기부금 I은 '다소 강제적' 및 '완전 강제적' 응답을 기준으로 산출

2. 기부금 II는 기부금 I에 '중립적' 응답을 포함하여 산출

개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준조세 규모에 강제적 성격의 기부금 규모를 합산하면, 〈표 V-37〉이 도출되며, 총 준조세 규모는 31조 6,708억원에 이른다.

〈표 V-37〉 기부금을 고려한 준조세 규모(2009년)

(단위: 억원)

		분류	준조세액
기부금 제외	사회보험료 제외	광의의 준조세	105,968
		협의의 준조세	21,801
	사회보험료 포함	광의의 준조세	313,135
		협의의 준조세	228,968
기부금 I 포함	사회보험료 제외	광의의 준조세	106,911
		협의의 준조세	22,744
	사회보험료 포함	광의의 준조세	314,078
		협의의 준조세	229,911
기부금 II 포함	사회보험료 제외	광의의 준조세	109,541
		협의의 준조세	25,374
	사회보험료 포함	광의의 준조세	316,708
		협의의 준조세	232,541

- 주: 1. 기부금 I은 '다소강제적' 및 '완전강제적' 응답을 기준으로 산출
 2. 기부금 II는 기부금 I에 '중립적' 응답을 포함하여 산출
 3. 모든 수치는 법인세 소득공제를 고려한 것임.

VI. 요약 및 정책방향

본 연구는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조세 이외의 부담에 해당하는 준조세의 실태를 분석하고, 규모를 정확히 산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준조세의 범위를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고, 각각의 규모를 산출하였으며 준조세의 추이를 파악하고, 준조세가 GDP 및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준조세가 법인세수 및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여 조금 더 미시적으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준조세의 부담 규모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자발적인 기부금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 규모를 각 기부금별로 산출하였고, 이를 광의 및 협의의 준조세에 포함하여 최종 준조세의 규모를 산출하였다.

조세 이외의 모든 부담을 포함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사회보험의 사업주 부담분, 부담금 및 비자발적인 기부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을 기준으로 그 규모를 산출하였다.

사회보험의 경우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을 모두 합하고 법인세를 고려하면 20조 7,167억원에 이른다. 또한 부담금의 경우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담금의 총합계에서 법인세를 고려하면 11조 5,477억원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기부한 기부금 중 설문조사 결과 비자발적으로 나타난 비중에 해당하는 준조세성 기부금의 규모는 비자발성의 범위에 따라 943억원 또는 3,573억원에 이른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광의의 준조세 규모는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20조 7,167억원, 부담금 11조 5,477억원, 비자발적 기부금 943억

또는 3,573억원을 합계한 것으로 32조 3,587억원 또는 32조 6,217억원에 달함을 알 수 있다.

협의를 준조세는 광의의 준조세에서 사업자의 부담이 1) 사업자가 받게 되는 이득에 대한 보상이 아니며, 2) 사업자의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닌 것으로 정의된다. 이 정의에 따르면 협의의 준조세에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부담금(부담금, 분담금, 부과금, 부가금, 예치금, 기금출연금, 기여금 등) 중 수익자부담이나 원인자부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사회보험료 중 기업의 부담분, 비자발적 기부금이 포함된다. 협의의 준조세 정의를 기준으로 준조세 규모를 산출하면 부담금 2조 3,822억원, 사회보험 사업주 부담분 20조 7,167억원, 비자발적 기부금 943억 또는 3,573억원으로 총 23조 1,932억원 또는 23조 4,562억원에 이르고 있다.

GDP 대비 준조세의 비중을 보면, 광의 및 협의의 준조세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에 광의는 약 3.04%, 협의는 약 2.17%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총조세 대비 비중을 보면, 협의의 준조세는 2007년 일시적으로 감소 이후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협의 및 광의의 준조세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 기준 광의는 15.39%, 협의는 11.02%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법인세수 대비 준조세의 비중은 법인세수의 등락에 따라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광의의 경우 2007년 93.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 조세 이외의 부담이 거의 법인세수와 유사한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준조세의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협의의 준조세도 연도별 추세는 광의의 준조세와 유사하며, 2008년 기준 법인세수 대비 57.27%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IV-40〉은 각 연도별 당기순이익 대비 준조세의 비중을 나타낸다. 광의의 준조세는 2004년 21.14%까지 상승하였다가 2005년 이후

18%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협의의 경우 약 13% 수준에서 광의의 준조세 비중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매출 300억원 이상 상공회의소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부금 지출의 비자발성 정도를 파악하고, 실제 기부금 지출액 중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 규모를 추정하였다. 기부금 중 준조세 성격의 금액은 기부금 총액에 '완전 강제적'과 '다소 강제적'이라고 응답한 업체 수의 비중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른 기부금에 비해 법정기부금이 상대적으로 비자발적이며, 지출동기가 '완전 강제적' 또는 '다소 강제적'이라는 의견은 법정기부금에서는 8.2%, 특례기부금에서는 2.5%, 지정기부금에서는 1.3%의 순서로 나타났다. 비자발성을 '중립적'이라는 응답까지 확대하는 경우, 비자발성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경우 18.2%, 특례기부금은 12.2%, 지정기부금은 11.3%로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 기부금의 자발성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법정기부금의 경우 건설업에서 기부금의 강제성에 응답한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으며, 기부금의 비자발성을 '다소 강제적' 이상으로 할 경우 건설업과 금융업에서 각각 6.1%, 6.5%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중립적'까지 포함하면 건설업의 경우 20.0%이고, 금융업의 경우 19.6%로 제조업 10.0%, 도소매업 12.5%에 비해 비자발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부금의 자발성을 법인규모별로 보면, '다소 강제적' 이상은 대기업의 경우 4.6%, 중소기업의 경우 1.9%의 비중을 보이고, '중립적'까지 확대할 경우 대기업은 17%, 중소기업은 11.3%로 대기업의 비자발성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분야별로 기부금의 자발성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 기부 분야 중 가장 강제성이 높은 분야는 '환경 생태계 보전' 영역으로 '다소 강제적' 이상에 응답한 기업이 33.3%를 차지하며, '중립적'에 응답한 기업까지 포함하면, 전체 기부 기업의 44.4%가 기부금이 비자발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두번째로 강제성이 높은 분야는 '지역사회 발전' 영역으로 '다소 강제적' 이상으로 응답한 기업이 4.6%에 불과하지만, '중립적'까지 확대할 경우 33.5%의 기업이 해당 기부금이 비자발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지출 동기가 '완전 강제적' 또는 '다소 강제적'이라고 응답한 업체의 비중을 이용하여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을 추정하면 943억원에 이르고, 비자발적 기부금의 범위를 '중립적'으로 응답한 기부금으로 확대할 경우 준조세에 포함되는 기부금의 규모 3,573억원에 해당한다.

이상에서 산출한 비자발적인 기부금의 규모를 앞에서 구한 준조세의 규모에 추가하여 최종 준조세의 규모를 산출하면 최대 32조 6,217억원에 달함을 알 수 있다.

제Ⅱ장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를 조세 이외에 비자발적으로 기업이 지는 부담으로 정의하였지만, 수익자부담원칙 및 원인자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의 경우 외부효과의 교정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담으로 분류되고, 사회보험료의 경우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조세 또는 유사한 형태로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요구되는 준조세 부담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2009년 기준으로 볼 때 개선이 요구되는 준조세 부담의 규모는 2조 3,822억원 정도이며, 비자발적인 기부금의 규모를 추가하면 전체 규모가 2조 4,765억원 또는 2조 7,395억원에 해당한다.

개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준조세의 규모에서 제외하고 최종 준조세의 규모를 산출하면 최대 31조 6,708억원에 이른다. 개인 부담 부담금을 고려하지 않고 산출했을 경우의 32조 6,217억원과 비교하여 약 9,509억원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는 0.09%, 협의는 0.02%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나 그 변화의 폭은 미미한 수준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볼 때, 정확한 준조세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은 이를 통해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조세 이외의 부담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기업과 관련된 조세정책 및 각종

부담금을 포함한 조세 이외의 부담과 관련된 정책을 운영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시적인 시각에서 보면, 개선이 요구되는 협의의 준조세에 포함된 부담금에 대한 정책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며, 협의에 포함되지 않는 부담금 운영이 도입 취지 및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역시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이 요구된다. 현재 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담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며, 부담금관리기본법 도입 이후 부담금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부담금이 상당수 있으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개별 부담금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은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부담금운용평가단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별 부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였으며, 개선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부담금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부담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강증진부담금의 경우 부담금 부과 취지인 국민건강증진사업에는 31.3%가 사용되는 반면, 건강보험재정을 위해 51.7%가 사용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경우도 대부분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지만 보건복지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하므로 부담금보다는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도입 취지를 보면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입 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부담금의 취지가 구체적이지 못하여 부담금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또한 부과대상을 보면, 시설물 사용자가 아닌 시설물 소유자가 부과대상이며, 경유자동차의 경우도 경유자동차 사용에

대한 부과가 아니고 소유에 대한 부과로 원인자부담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추가로 부과방법을 보면, 부담금 도입 취지에서 밝힌 오염저감을 통한 환경개선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므로 본 부담금은 환경세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준조세를 축소하려는 노력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우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부담금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부담금을 조세로 전환하여 조세 법률주의에 입각한 부과가 가능해지고, 동시에 지출도 예산의 틀 내에서 결정할 수 있어서 부과 및 지출 모두 근거가 명확해지고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주요 통계』, 각 연도
고용이, 『주요 기업의 법정준조세 부담실태와 개선방향』, 전국경제인
연합회, 2008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통계연보』, 각 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 각 연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 고용징수 실적분석(분석 및 통계표)』, 각
연도
-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 각 연도
손원익 · 김상헌 · 김진수 · 박기백 · 한도숙, 『준조세의 실태와 정책방
향』, 한국조세연구원, 1998. 12
손원익 · 정재호 · 김형준 · 김상헌, 『기업의 준조세 부담과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4. 12
신영수, 『준조세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한국법제
연구원, 2007
신종익, 『준조세의 실태와 정비 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6
아름다운재단, 「Giving Korea」, 2010
전경련, 「기업 ·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2008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or.kr>

GivingUSA foundation, "Giving USA 2009", 2009

Schick, Allen, "Off-Budget Expenditure: An Economic and Political Framework,"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 7, No. 3, 2007, pp. 1~32.

UK Giving 2009

〈부록〉 기업의 기부금 실태조사 설문 결과

1. 기부금별 설문 결과

가. 법정기부금

〈부표 1〉 법정기부금의 납부기업 결과

(단위: 개, 만원)

업종	기업 수	평균	합계
제조업	156	35,477	5,534,489
건설업	73	752,814	54,955,410
도소매업	46	13,397	616,242
금융업	32	79,654	2,548,930
운수업	4	244,469	977,877
기타	42	16,545	694,905
대기업	86	118,489	10,190,045
중소기업	267	206,509	55,137,808
거래소	47	184,269	8,660,626
코스닥	41	20,272	831,168
비상장	265	210,702	55,836,059
합계	353	185,065	65,327,853

〈부표 2〉 법정기부금 자발성 설문조사 결과

(단위: 개, %)

		지 출 동 기(N/%)					합계		
		완전 자발적	다소 자발적	중립적	다소 강제적	완전 강제적			
업태별	제조업	응답 수	79	77	9	5	0	170	
		비율	46.5	45.3	5.3	2.9	-		
	건설업	응답 수	10	28	17	22	0	77	
		비율	13.0	36.4	22.1	28.6	-		
	도소매업	응답 수	20	27	3	1	0	51	
		비율	39.2	52.9	5.9	2.0	-		
	금융업	응답 수	7	16	9	1	0	33	
		비율	21.2	48.5	27.3	3.0	-		
	운수업	응답 수	4	0	0	1	0	5	
		비율	80.0	-	-	20.0	-		
	기타	응답 수	29	13	0	1	0	43	
		비율	67.4	30.2	-	2.3	-		
	법인 규모별	대기업	응답 수	34	43	9	12	0	98
			비율	34.7	43.9	9.2	12.2	-	
중소기업		응답 수	115	118	29	19	0	281	
		비율	40.9	42.0	10.3	6.8	-		
상장 · 비상 장별	거래소	응답 수	20	26	5	2	0	53	
		비율	37.7	49.1	9.4	3.8	-		
	코스닥	응답 수	16	23	2	1	0	42	
		비율	38.1	54.8	4.8	2.4	-		
	비상장	응답 수	113	112	31	28	0	284	
		비율	39.8	39.4	10.9	9.9	-		
합계	응답 수	149	161	38	31	0	379		
	비율	39.3	42.5	10.0	8.2	-	100.0		

나. 특례기부금

〈부표 3〉 특례기부금의 납부기업 결과

(단위: 개, 만원)

	기업 수	평균	합계
제조업	238	32,008	7,618,009
건설업	135	11,289	1,524,061
도소매업	51	8,513	434,175
금융업	42	149,907	6,296,104
운수업	17	152,618	2,594,503
기타	67	27,771	1,860,683
대기업	114	148,815	16,964,869
중소기업	436	7,713	3,362,666
거래소	57	241,126	13,744,162
코스닥	55	23,315	1,282,339
비상장	438	12,103	5,301,034
합계	550	36,959	20,327,535

〈부표 4〉 특례기부금 자발성 설문조사 결과

(단위: 개, %)

		지 출 동 기(N/%)					합계		
		완전 자발적	다소 자발적	중립적	다소 강제적	완전 강제적			
업태별	제조업	응답 수	143	95	25	6	1	270	
		비율	53.0	35.2	9.3	2.2	0.4	100.0	
	건설업	응답 수	49	80	23	2	0	154	
		비율	31.8	51.9	14.9	1.3	-	100.0	
	도소매업	응답 수	28	33	2	0	0	63	
		비율	44.4	52.4	3.2	-	-	100.0	
	금융업	응답 수	16	27	6	7	0	56	
		비율	28.6	48.2	10.7	12.5	-	100.0	
	운수업	응답 수	18	5	0	0	0	23	
		비율	78.3	21.7	-	-	-	100.0	
	기타	응답 수	52	22	7	0	0	81	
		비율	64.2	27.2	8.6	-	-	100.0	
	법인 규모별	대기업	응답 수	65	64	17	5	0	151
			비율	43.0	42.4	11.3	3.3	-	100.0
중소기업		응답 수	241	198	46	10	1	496	
		비율	48.6	39.9	9.3	2.0	0.2	100.0	
상장 · 비상 장별	거래소	응답 수	36	33	7	1	0	77	
		비율	46.8	42.9	9.1	1.3	-	100.0	
	코스닥	응답 수	22	34	9	1	0	66	
		비율	33.3	51.5	13.6	1.5	-	100.0	
	비상장	응답 수	248	195	47	13	1	504	
		비율	49.2	38.7	9.3	2.6	0.2	100.0	
합계	응답 수	306	262	63	15	1	647		
	비율	47.3	40.5	9.7	2.3	0.2	100.0		

다. 지정기부금

〈부표 5〉 지정기부금의 응답기업 구성

(단위: 개, %)

업종	지정기부금		
	기업 수	평균	합계
제조업	731	12,032	8,795,450
건설업	223	4,100	914,314
도소매업	255	10,415	2,655,782
금융업	82	45,926	3,765,893
운수업	64	20,731	1,326,815
기타	147	9,931	1,459,857
대기업	229	66,678	15,269,201
중소기업	1,273	2,866	3,648,910
거래소	115	115,617	13,295,965
코스닥	149	9,409	1,401,955
비상장	1,238	3,409	4,220,191
합계	1,502	12,595	18,918,111

〈부표 6〉 지정기부금 자발성 설문조사 결과

(단위: 개, %)

		지 출 동 기(N/%)					합계	
		완전 자발적	다소 자발적	중립적	다소 강제적	완전 강제적		
업태별	제조업	588	233	81	8	1	911	
		64.5	25.6	8.9	0.9	0.1	100.0	
	건설업	166	86	33	8	0	293	
		56.7	29.4	11.3	2.7	0.0	100.0	
	도소매업	176	159	54	3	0	392	
		44.9	40.6	13.8	0.8	0.0	100.0	
	금융업	72	22	11	5	0	110	
		65.5	20.0	10.0	4.5	0.0	100.0	
	운수업	80	7	2	0	0	89	
		89.9	7.9	2.2	0.0	0.0	100.0	
	기타	104	62	17	0	0	183	
		56.8	33.9	9.3	0.0	0.0	100.0	
	법인 규모별	대기업	154	130	47	10	0	341
			45.2	38.1	13.8	2.9	0.0	100.0
중소기업		1,032	439	151	14	1	1,637	
		63.0	26.8	9.2	0.9	0.1	100.0	
상장 · 비상 장별	거래소	92	60	27	4	0	183	
		50.3	32.8	14.8	2.2	0.0	100.0	
	코스닥	102	74	19	0	0	195	
		52.3	37.9	9.7	0.0	0.0	100.0	
	비상장	992	435	152	20	1	1,600	
		62.0	27.2	9.5	1.3	0.1	100.0	
합계	1,186	569	198	24	1	1,978		
	60.0	28.8	10.0	1.2	0.1	100.0		

〈부표 7〉 각각의 기부금으로 분류된 업종별 자발성 결과

(단위: 개, %)

		완전 자발적	다소 자발적	중립적	다소 강제적	완전 강제적	합계		
법정 기부금	제조업	응답 수	79	77	9	5	0	170	
		비율	46.5	45.3	5.3	2.9	-		
	건설업	응답 수	10	28	17	22	0	77	
		비율	13.0	36.4	22.1	28.6	-		
	도소매업	응답 수	20	27	3	1	0	51	
		비율	39.2	52.9	5.9	2.0	-		
	금융업	응답 수	7	16	9	1	0	33	
		비율	21.2	48.5	27.3	3.0	-		
	운수업	응답 수	4	0	0	1	0	5	
		비율	80.0	-	-	20.0	-		
	기타	응답 수	29	13	0	1	0	43	
		비율	67.4	30.2	-	2.3	-		
	특례 기부금	제조업	응답 수	143	95	25	6	1	270
			비율	53.0	35.2	9.3	2.2	0.4	100.0
건설업		응답 수	49	80	23	2	0	154	
		비율	31.8	51.9	14.9	1.3	-	100.0	
도소매업		응답 수	28	33	2	0	0	63	
		비율	44.4	52.4	3.2	-	-	100.0	
금융업		응답 수	16	27	6	7	0	56	
		비율	28.6	48.2	10.7	12.5	-	100.0	
운수업		응답 수	18	5	0	0	0	23	
		비율	78.3	21.7	-	-	-	100.0	
기타		응답 수	52	22	7	0	0	81	
		비율	64.2	27.2	8.6	-	-	100.0	
지정 기부금		제조업	응답 수	588	233	81	8	1	911
			비율	64.5	25.6	8.9	0.9	0.1	100.0
	건설업	응답 수	166	86	33	8	0	293	
		비율	56.7	29.4	11.3	2.7	0.0	100.0	
	도소매업	응답 수	176	159	54	3	0	392	
		비율	44.9	40.6	13.8	0.8	0.0	100.0	
	금융업	응답 수	72	22	11	5	0	110	
		비율	65.5	20.0	10.0	4.5	0.0	100.0	
	운수업	응답 수	80	7	2	0	0	89	
		비율	89.9	7.9	2.2	0.0	0.0	100.0	
	기타	응답 수	104	62	17	0	0	183	
		비율	56.8	33.9	9.3	0.0	0.0	100.0	

〈부표 8〉 각각의 기부금으로 분류된 법인 규모별 자발성 결과

(단위: 개, %)

			완전 자발적	다소 자발적	중립적	다소 강제적	완전 강제적	합계
법정 기부금	대기업	응답 수	34	43	9	12	0	98
		비율	34.7	43.9	9.2	12.2	-	100.0
	중소기업	응답 수	115	118	29	19	0	281
		비율	40.9	42.0	10.3	6.8	-	100.0
특례 기부금	대기업	응답 수	65	64	17	5	0	151
		비율	43.0	42.4	11.3	3.3	-	100.0
	중소기업	응답 수	241	198	46	10	1	496
		비율	48.6	39.9	9.3	2.0	0.2	100.0
지정 기부금	대기업	응답 수	154	130	47	10	0	341
		비율	45.2	38.1	13.8	2.9	0.0	100.0
	중소기업	응답 수	1,032	439	151	14	1	1,637
		비율	63.0	26.8	9.2	0.9	0.1	100.0

〈부표 9〉 각각의 기부금으로 분류된 상장·비상장별 자발성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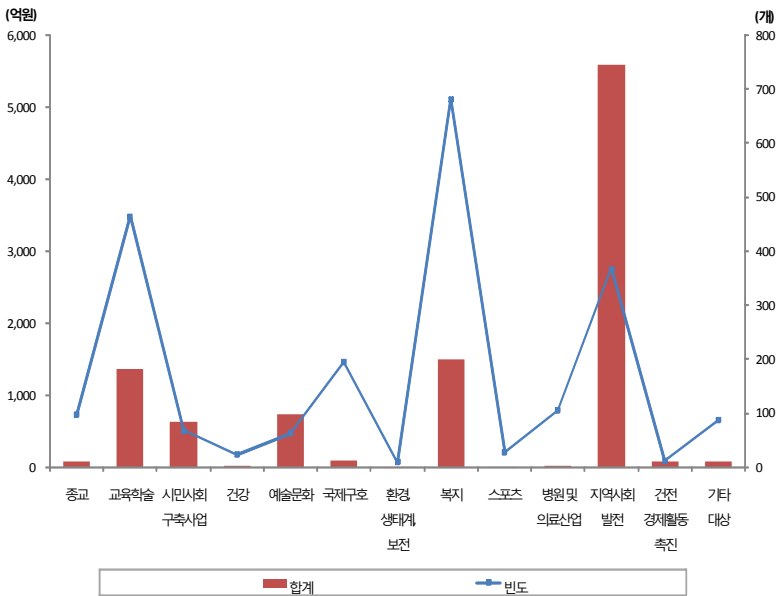
(단위: 개, %)

			완전 자발적	다소 자발적	중립적	다소 강제적	완전 강제적	합계
법정 기부금	거래소	응답 수	20	26	5	2	0	53
		비율	37.7	49.1	9.4	3.8	-	
	코스닥	응답 수	16	23	2	1	0	42
		비율	38.1	54.8	4.8	2.4	-	
	비상장	응답 수	113	112	31	28	0	284
		비율	39.8	39.4	10.9	9.9	-	
특례 기부금	거래소	응답 수	36	33	7	1	0	77
		비율	46.8	42.9	9.1	1.3	-	100.0
	코스닥	응답 수	22	34	9	1	0	66
		비율	33.3	51.5	13.6	1.5	-	100.0
	비상장	응답 수	248	195	47	13	1	504
		비율	49.2	38.7	9.3	2.6	0.2	100.0
지정 기부금	거래소	응답 수	92	60	27	4	0	183
		비율	50.3	32.8	14.8	2.2	0.0	100.0
	코스닥	응답 수	102	74	19	0	0	195
		비율	52.3	37.9	9.7	0.0	0.0	100.0
	비상장	응답 수	992	435	152	20	1	1,600
		비율	62.0	27.2	9.5	1.3	0.1	100.0

2. 기부금의 분야별 지출현황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기부금을 나타내면 <부표 10>과 같이 도출되며, 분야별 기부금을 업종별, 법인규모별, 기업 형태별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각 분야별 기부금을 알 수 있으며, 기부 빈도를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 복지 영역에 가장 많은 기업이 기부하였으며, 교육·학술 영역이 2위를 차지하였고 지역사회발전 영역이 3위를 차지하였다. 이를 도식화한 결과는 [부그림 1]과 같다.

[부그림 1] 분야별 기부금 지출금액



<부표 10> 분야별 기부금 지출금액

(단위: 개, 만원)

	종교	교육 학술	시민 사회 구축 사업	건강	예술 문화	국제 구호	환경 생태계 보전	복지				스포츠	병원 및 의료 산업	지역 사회 발전	진전 경제 활동 촉진	기타 대상		
								합계	장애인 복지	영유아 아동 복지	노인 복지						노숙자 자활 사업	
제조업	빈도	62	195	53	13	31	102	7	192	138	171	54	2	9	72	202	-	48
	합계 금액	567520	6227024	6116114	113160	6218025	398394	24070	1137166	205662	319502	93980	520	8620	47479	363591	-	107071
건설업	빈도	6	99	-	5	5	29	1	217	8	11	1	-	12	3	52	1	6
	합계 금액	9600	1410600	-	22810	7090	43135	700	925345	20850	9180	1000	-	20420	150	54512850	600	21455
도소 매업	빈도	18	73	5	1	14	48	1	108	42	63	28	1	4	13	13	2	24
	합계 금액	81730	889088	188530	100	127221	36083	50000	1212921	155167	170551	12512	43	16700	219911	90159	15500	319961
금융업	빈도	1	34	-	1	-	6	-	92	-	4	-	-	-	1	6	8	3
	합계 금액	10000	2625650	-	1400	-	3680	-	8856597	-	6100	-	-	-	12000	8500	750000	337000
운수업	빈도	3	17	-	1	5	-	-	14	10	14	2	-	-	1	48	-	1
	합계 금액	3236	1511044	-	150000	877477	-	-	1239255	548855	44599	10159	-	-	10	509791	-	4769
기타	빈도	8	46	10	2	8	10	-	58	38	51	25	3	2	15	46	-	5
	합계 금액	77400	1050113	23595	12000	97260	79900	-	1630126	238380	186533	78798	9700	51500	122292	441331	-	26577

〈부표 10〉의 계속

	종교	교육 학술	시민 사회 구축 사업	건강	예술 문화	국제 구호	환경 생태계 보전	복지				스포츠	병원 및 의료 산업	지역 사회 발전	진전 경제 활동 촉진	기타 대상		
								합계	장애인 복지	영유아 아동 복지	노인 복지						노숙자 자활 사업	
대기업	빈도	13	102	7	3	23	17	3	115	53	65	31	3	2	14	68	4	25
	합계 금액	528255	11418417	6191040	166300	7173897	167240	56700	12850151	773917	235790	86538	9700	11000	17258	1417036	590000	623745
중소 기업	빈도	85	362	61	20	40	178	6	566	183	249	79	3	25	91	299	7	62
	합계 금액	221231	2295102	137199	133170	153176	781952	16070	2151259	394997	500675	109911	563	86240	274524	54509186	176100	198088
저래소	빈도	7	48	9	4	16	15	2	50	30	37	9	-	2	9	36	2	9
	합계 금액	384570	9928820	6202980	153040	7107664	429779	57000	9356191	670486	186936	24047	-	2100	5220	721253	200500	263167
코스닥	빈도	9	63	6	3	8	17	1	55	34	47	13	1	4	6	40	-	9
	합계 금액	111970	748292	16289	40010	75650	15188	4000	1447728	150788	129153	32768	500	4090	4125	679150	-	60761
비상장	빈도	82	353	53	16	39	163	6	576	172	230	88	5	21	90	291	9	69
	합계 금액	252946	3041407	108970	106420	143759	504225	13770	4197491	347640	420376	139634	9763	91050	282437	54525619	565600	492915
합계	빈도	98	464	68	23	63	195	9	681	236	314	110	6	27	105	367	11	87
	합계 금액	749486	13713519	6328239	299470	7327073	949192	74770	15001410	1168914	736465	196449	10263	97240	291782	55926222	766100	816833

분야별 기부금 지출 비율을 살펴본 결과는 <부표 11>과 같으며, 기부빈도와 총기부금액으로 분류하여 구성하였다.

기부빈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응답 수의 30.98%가 복지 분야에 지출했다고 응답하여 많은 기업이 복지 분야에 기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1.11%의 기업이 교육 및 학술 분야에 기부했다고 응답하였다. 교육·학술의 뒤를 이어 지역사회 발전과 국제구호가 각각 16.70%와 8.87%를 차지하여 3위와 4위를 기록하였다.

총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부금 합계액의 54.65%가 지역사회 발전 영역에 기부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복지 분야에 기부된 금액은 전체 금액의 14.66%를 차지하여 2위를 기록하였다. 교육·학술 분야에 기부된 금액은 13.40%로 조사되었고, 예술·문화 분야에 기부된 기부금액은 7.16%로 조사되어 3위와 4위로 나타났다.

<부표 11> 분야별 기부금 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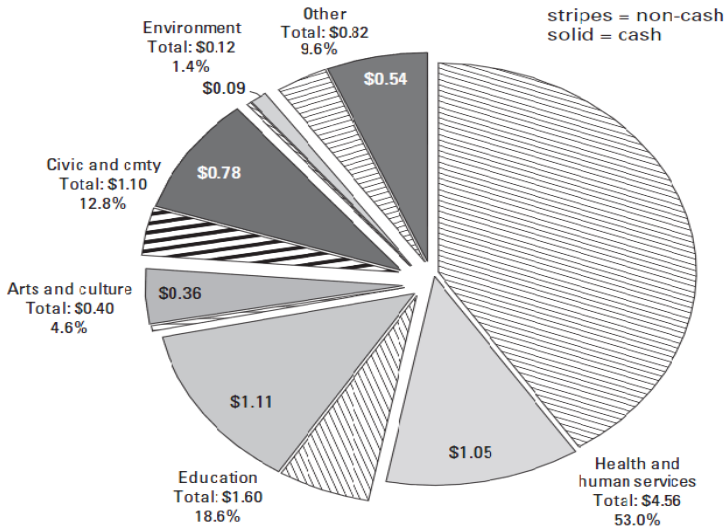
(단위: %)

	기부빈도 기준 비율	총기부금액 기준 비율
종교	4.46	0.73
교육·학술	21.11	13.40
시민사회구축사업	3.09	6.18
건강	1.05	0.29
예술문화	2.87	7.16
국제구호	8.87	0.93
환경생태계보전	0.41	0.07
복지	30.98	14.66
스포츠	1.23	0.10
병원 및 의료산업	4.78	0.29
지역사회발전	16.70	54.65
건전 경제활동 촉진	0.50	0.75
기타 대상	3.96	0.80
전체	100.00	100.00

가. Giving USA

Giving USA의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의 기부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이는 2007년 기업의 기부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2007년 설문조사 대상 기업의 전체 기부액은 10.97십억달러로 나타났다.

[부그림 2] 미국 기업의 분야별 기부현황 (n=197)
(단위: billion)



Data: The Conference Board, *The 2008 Corporate Contributions Report*, Tables 19-25

인적자원 개발은 다음의 영역에 대한 법원 및 법률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기부를 포함하며, 다음 영역이란 고용(실업)과 직업훈련, 식품과 영양, 장기 주택과 임시 보호소, 공공안전과 지역사회 재해구호, 레크레이션 및 스포츠, 청소년 계발, 가족 및 어린이에 관한 서비스, 가족을 위한 긴급 지원, 여성, 노인, 퇴역군인(veterans)과 장애인에 대한 독립적이고 자급자족적인 생활 지원 등을 말한다.

〈부표 12〉 미국의 분야별 기부 비율

(단위: 금액기준 %)

분야	비율
건강·인적자원 개발	53.00
교육	18.60
예술·문화	4.60
시민사회 및 공동체 진흥(Civic and community)	12.80
환경	1.40
기타	9.60
합계	-

주: Giving USA 2009

〈부표 13〉 미국과 한국 기업의 분야별 기부 비율 비교
(Giving USA, 조세연구원)

(단위: 금액기준 %)

미국	금액 기준 비율	한국	총기부금액 기준 비율
교육	18.60	교육·학술	13.40
예술·문화	4.60	예술문화	7.16
시민사회 및 공동체 진흥 (Civic and community)	12.80	시민사회구축사업	6.18
		건전 경제활동촉진	0.75
		합계	6.93
환경	1.40	환경생태계보전	0.07
건강·인적자원 개발	53.00	지역사회발전	54.65
		복지	14.66
		건강	0.29
		병원 및 의료산업	0.29
		합계	69.89
기타	9.60	국제구호	0.93
		종교	0.73
		스포츠	0.10
		기타 대상	0.80
		합계	2.56
합계	-	전체	100.00

나. 전경련 『사회공헌백서』

2008 전경련 『사회공헌백서』를 통해 분야별 기부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사회복지, 교육·학교·학술연구,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에 대한 기부 비중이 전체 기부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표 14〉에 나타난 2008년 분야별 기업기부 현황을 통해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분야별 지출액의 비중을 도출하면 〈부표 15〉와 같다. 2008년에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기부가 41.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학교·학술연구 분야가 31.06%를 차지했고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가 11.82%를 기록하였다.

〈부표 14〉 분야별 기업기부 현황(2008)

(단위: 백만원)

분야	총 집행액	기업평균 집행액
사회복지	322,657	1,844
교육, 학교, 학술연구	244,066	1,395
문화예술 및 체육	92,889	531
의료보건	65,658	375
기타	25,964	148
환경보전	17,177	98
응급 및 재난구호	7,218	42
국제구호활동	5,134	29
농촌지원활동	5,086	29
계	785,849	4,491

주: 해당항목 응답기업 175개사 기준
 자료: 전경련,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부표 15〉 기업기부의 분야별 지출액 비중(2008)

(단위: 백만원, %)

분야	총 집행액	금액 기준 비율
사회복지	322,657	41.06
교육, 학교, 학술연구	244,066	31.06
문화예술 및 체육	92,889	11.82
의료보건	65,658	8.36
기타	25,964	3.30
환경보전	17,177	2.19
응급 및 재난구호	7,218	0.92
국제구호활동	5,134	0.65
농촌지원활동	5,086	0.65
계	785,849	100.00

주: 해당항목 응답기업 175개사 기준

자료: 전경련, 2008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재구성

〈부표 15〉를 한국조세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부표 16〉이 도출된다. 분류 기준을 살펴보면, 전경련의 문화예술 및 체육 영역에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예술문화 영역과 스포츠 영역을 포함시켰으며 의료보건 영역에는 건강 영역과 병원 및 의료산업 영역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두 기관의 설문조사를 비교할 수 없는 분야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부표 16〉 설문조사 결과 비교(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조세연구원)

(단위: 금액기준 %)

전경련 분류	총집행액 기준 비율	한국조세연구원 분류	총기부금액 기준 비율		
사회복지	41.06	복지	14.66		
		지역사회발전	54.65		
		합계	69.31		
교육, 학교, 학술연구	31.06	교육·학술	13.40		
문화예술 및 체육	11.82	예술문화	7.16		
		스포츠	0.10		
		합계	7.26		
의료보건	8.36	건강	0.29		
		병원 및 의료산업	0.29		
		합계	0.58		
환경보전	2.19	환경생태계보전	0.07		
국제구호활동	0.65	국제구호	0.93		
기 타	응급 및 재난구호	0.92	기 타	시민사회구축사업	6.18
	농촌지원활동	0.65		종교	0.73
	기타	3.30		건전 경제활동 촉진	0.75
	합계	4.87		기타 대상	0.80
				합계	8.46
계	100.00	전체	100.00		

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연구결과는 2008년도 기준이고, 한국조세연구원의 결과는 2009년 결과임에 유의.

다.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재단에서 발간한 『Giving Korea 2010』와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실시한 2010년 설문조사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개인의 기부와 기업의 기부 분야를 비교해보았다. 아름다운재단의 개인의 기부 분야를 살펴보면 <부표 17>과 같다. 아름다운재단은 기부 분야에 부랑인에 대한 기부, 친척·친구·이웃에 대한 지출, 경조사비, 종교단체에 현금 및 보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부표 18>은 개인의 기부 분야에 대해 기부응답뿐만 아니라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그 구성을 살펴보고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분야별 비율을 도출하였다.

〈부표 17〉 개인의 기부 분야

(단위: 만원, %)

	기부 응답 (N=247, 비율)	기부금액	금액기준 비율
자선단체	27.0	6.5	2.16
부랑인	29.2	2.5	0.83
종교단체를 통한 기부	24.8	25.8	8.57
해외구호	15.3	13.0	4.32
친척, 친구, 이웃	9.7	25.9	8.61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5.7	18.2	6.05
정치단체	3.3	22.4	7.44
교육기관	3.2	24.3	8.08
시민단체	3.2	6.5	2.16
의료기관	0.7	14.8	4.92
문화예술단체	0.2	1.0	0.33
경조사비	91.2	58.8	19.54
종교단체에 현금 및 보시	40.6	81.2	26.99
합계		300.9	100.00

자료: 아름다운재단, 『Giving Korea 2010』 재구성

〈부표 18〉 개인의 기부 분야(특정 분야 제외)

(단위: 만원, 금액기준 %)

	기부 응답 (N=247, 비율)	기부금액	금액기준 비율
자선단체	27.0	6.5	4.91
종교단체를 통한 기부	24.8	25.8	19.47
해외구호	15.3	13.0	9.81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5.7	18.2	13.74
정치단체	3.3	22.4	16.91
교육기관	3.2	24.3	18.34
시민단체	3.2	6.5	4.91
의료기관	0.7	14.8	11.17
문화예술단체	0.2	1.0	0.75
합계		132.5	100.00

주: 부랑인, 친척·친구·이웃에 대한 지출, 경조사비, 종교단체에 현금 및 보시 제외

자료: 아름다운재단, 『Giving Korea 2010』 재구성

아름다운재단의 설문조사는 기부 분야에 부랑인에 대한 기부, 친척·친구·이웃에 대한 지출, 경조사비, 종교단체에 현금 및 보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항목을 제외하고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도출하였으며, 새롭게 도출한 구성 비율은 〈부표 19〉와 같다.

분야에서 부랑인, 친척·친구·이웃에 대한 지출, 경조사비, 종교단체에 현금 및 보시를 제외한 아름다운재단의 설문조사 결과와 한국조세연구원의 2010년 기업기부 설문조사를 비교한 결과는 〈부표 19〉와 같다.

〈부표 19〉 개인과 기업의 기부 분야 비교

(단위: 금액기준 %)

		아름다운재단 (금액기준 비율)		한국조세연구원 (금액기준 비율)	
종교단체를 통한 기부		19.47	종교	0.73	
교육기관		18.34	교육·학술	13.40	
시민단체		4.91	시민사회구축사업	6.18	
			건전 경제활동촉진	0.75	
			환경생태계보전	0.07	
			합계	7.00	
문화예술단체		0.75	예술문화	7.16	
해외구호		9.81	국제구호	0.93	
자선단체		4.91	복지	14.66	
의료기관		11.17	병원 및 의료산업	0.29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13.74	지역사회발전	54.65	
기타	정치단체	16.91	기타	스포츠	0.10
				건강	0.29
				기타 대상	0.80
				합계	1.19
합계		100.00	전체	100.00	

3. 기업의 기부금 실태조사 설문지

〈기업의 기부금 실태조사표〉

❖ 안녕하세요?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기업이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부담하고 있는 준조세 범위를 재정립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준조세 부담을 축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준조세의 실태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번 대한상공회의소 협조 하에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이상과 같은 본 조사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응답에 누락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공표되는 일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유의사항 -

❖ 준조세란 '기업에 생산활동에 수반되는 직접적인 생산비용 및 조세를 제외한 모든 부담'으로서 기부금·성금·부담금 등 실질적인 자원부담을 의미합니다.

❖ 이번 조사의 설문은 세무상 손비로 인정되는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세무상 손비로 처리되지 않는 준조세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공과금적 성격의 부담금(부과금)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I. 일반조사사항

※ 해당하는 항목에 V표시 하십시오.

업 체 명		작성자	직위	
전화번호	()		성명	
업 종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건설업 <input type="checkbox"/> 도소매업 <input type="checkbox"/> 금융업 <input type="checkbox"/> 운수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기업형태	대 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거래소 <input type="checkbox"/> 코스닥 <input type="checkbox"/> 비상장 <input type="checkbox"/>			
기업코드 (거래소·코스닥)				
종업원수				
자본금(납입)				
매출액				
매출원가				
당기순이익				

※ 2009년말 기준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II. 귀사가 지출한 기부금 수혜단체의 특성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분 야	금액 (만원)	지출동기				
		1. 완전 자발적	2. 다소 자발적	3. 중립적	4. 다소 강제적	5. 완전 강제적
1. 순수모금단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 다운재단, 대한적십자사, 굿 네이버스, 유니세프, 아름다운 재단, 국제기아대책기구, 실업극복국민재단 등						
2. 직접활동단체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립 암센터 등						
3. 기타 기부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칸에 항목별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합 계						

※ 귀사가 지출한 기부금 수혜단체의 분류가 모호할 경우 3번 기타 부문에 기록하
시기 바랍니다.

Ⅲ. 귀사가 지출한 기부금(손금처리가 된 기부금)의 항목별 금액과 지출동기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종 류	금액 (만원)	지출동기				
		1. 완전 자발적	2. 다소 자발적	3. 중립적	4. 다소 강제적	5. 완전 강제적
법 정 기 부 금	1. 국가·지자체 기증 금품					
	2.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3. 이재민 구호금품					
	4. 사립 학교·외국교육기 관·산학협력단 등에 대 한 시설비·교육비·장학 금·연구비					
	5. 기타 기부 단체					
합 계						
특 례 기 부 금	6. 사립학교병원·국립대 병 원·서울대병원·서울대치 과병원·대한적십자병원· 국립암센터·지방의료원 시설비·교육비·연구비					
	7. 한국과학기술원 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					
	9. 문화예술진흥기금					
	10. 사내근로복지기금					
	11. 독립기념관					
	12. 특정연구기관·한국생산 기술연구원/한국한의학 연구원·전문생산기술연 구소·한국과학창의재 단·연구개발특구지원본 부·산업안전연구원·한 국정보화진흥원					
	13. 정부출연연구기관					
	14. 한국교육방송공사					
	15. 한국국제교류재단					

종 류	금액 (만원)	지출동기				
		1. 완전 자발적	2. 다소 자발적	3. 중립적	4. 다소 강제적	5. 완전 강제적
16. 결식아동 결식 해소·빈 곤층아동 복지증진 비영 리법인						
17. 국민신탁법인						
18. 박물관·미술관						
19. 국제행사조직위원회						
20. 휴면예금관리재단						
21. 저소득층생활안정을 위 한 비영리법인 등						
22.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조건으로 설정한 신탁						
23. 대학기부금(『고등교육 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에 시설비·교육비·장 학금·연구비)						
24. 기타 기부 단체						
합 계						
지 정 기 부 금	25. 사회복지시설					
	26.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한 기부					
	27. 사회복지법인, 학교, 학 술·장학·기술진흥, 문 화예술·환경단체, 종교, 의료법인,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경부장관 이 지정하는 단체 등					
	28.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 정기부금 단체(예: 대한적 십자사, 대한결핵협회·대 한법률구조공단 등)					
	29. 학교장이 추천한 개인의 교육비 등, 공익신탁기부 금, 공익목적으로 지출하 는 기부금으로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영업자단체에 대한 특별 회비, 임의단체 회비					
30. 기타 기부 단체						
합 계						

IV. 귀사가 지출한 기부금의 분야별 금액과 지출동기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분 야	금액 (만원)	지출동기				
		1. 완전 자발적	2. 다소 자발적	3. 중립적	4. 다소 강제적	5. 완전 강제적
1. 종교						
2. 교육·학술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시 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Human services)						
4. 건강						
5. 예술·문화						
6. 국제구호 ※ 월드비전과 같은 국제구호 단체에 대한 기부금 포함						
7. 환경·생태계 보전						
8. 복지						
장애인복지						
영유아 및 아동복지						
노인복지						
노숙자 자활사업						
9. 스포츠						
10. 병원 및 의료산업, 호스피 스 사업(의료 연구 포함)						
11. 지역사회 발전						
12. 소비자보호 등 건전한 경 제활동 촉진						
13. 기타 기부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칸에 항목별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합 계						

V. 기업의 기부결정과 세제혜택의 관계에 대해 의견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향력				
	1. 상당한 영향	2. 다소 영향	3. 중립적	4. 다소 무관	5. 전혀 무관
기부 결정에 세제상의 혜택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VI. 세무상 손금처리가 불가능한 준조세의 항목별 금액과 지출 동기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종 류	금액 (만원)	지출동기				
		1. 완전 자발적	2. 다소 자발적	3. 중립적	4. 다소 강제적	5. 완전 강제적
1. 조합 또는 협회비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3. 규제담당공무원(경찰서, 소방서, 건축, 보건, 위생, 환경, 세무 등)에 대한 금전적 지출						
4. 기타 손비로 인정되지 않는 준조세 항목(손비처리 안된 정치후원금 등)에 대해서는 다음 칸에 항목별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합 계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조세연구원: (우) 138 -774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9-6 한국조세연구원

손원익 선임연구위원: TEL (02) 2186-2208

남 희 연구원: TEL (02) 2186-2307

기업의 준조세 실태와 정책방향

손원의

본 연구는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조세 이외의 부담에 해당하는 준조세의 실태를 분석하고, 규모를 정확히 산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준조세의 범위를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고, 각각의 규모를 산출하였으며 준조세의 추이를 파악하고, 준조세가 GDP 및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준조세가 법인세수 및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준조세의 부담 규모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자발적인 기부금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 규모를 각 기부금별로 산출하였다. 또한 이를 광의 및 협의의 준조세에 포함하여 최종 준조세의 규모를 산출하였으며, 기부금의 자발성을 기부금별, 업종별, 법인규모별, 상장·비상장별, 분야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지출 동기가 '완전 강제적' 또는 '다소 강제적'이라고 응답한 업체의 비중을 이용하여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을 추정하면 943억원에 이르고, 비자발적 기부금의 범위를 '중립적'이라고 응답한 업체까지 확대할 경우 준조세에 포함되는 기부금의 규모는 3,5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광의의 준조세 규모는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20조 7,167억원, 부담금 11조 5,477억원, 비자발적 기부금 943억 또는 3,573억원을 합계한 것으로 32조 3,047억원 또는 32조 6,217억원에 이른다. 협의의 준조세를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 부담금 2조 3,822억원, 사회보험 사업주 부담

분 20조 7,167억원, 비자발적 기부금 943억원 또는 3,573억원으로 총 23조 1,932억원 또는 23조 4,56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볼 때 정확한 준조세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은 이를 통해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조세 이외의 부담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기업과 관련된 조세정책 및 각종 부담금을 포함한 조세 이외의 부담과 관련된 정책을 운영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미시적인 시각에서 보면 개선이 요구되는 협의의 준조세에 포함된 부담금에 대한 정책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며, 협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부담금 운영이 도입취지 및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준조세를 축소하려는 노력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부담금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부담금을 조세로 전환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부과가 가능해지고, 동시에 지출도 예산의 틀 내에서 결정할 수 있어서 부과 및 지출 모두 근거가 명확해지고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Corporation's Quasi Tax Burden and Policy

Wonik Son

This research aims for analyzing corporation's quasi-tax burden aside from regular taxation and for measuring its size. A scope of quasi tax is categorized in broad and narrow senses and development of quasi tax is examined. The paper scrutinizes importance of quasi-tax on GDP and tax revenues and how it changes over time. By examination of quasi-tax's percentage on corporate taxation and net profit during the term, the study discusses a scale of quasi-tax that corporation actually covers.

The paper conducts a survey with businesses to grasp a size of involuntary contributions. Based on the results, volume of quasi-tax subscriptions was calculated by each donation types. The estimated contributions were included in broad and narrow sense of quasi tax for measuring the size of total quasi tax. Discretionary donations are classified and reviewed by diverse categories: donations, sizes of corporation, listed or unlisted businesses, and industrial fields.

Various reports indicate that estimated corporation's quasi-tax reaches 94.3 million Korean won by using responses that donation is 'compulsory' or 'somewhat coercive.' Contributions in quasi-tax amount to 357.3 million Korean won when companies that involuntary donation is 'neutral' are included.

Scale of quasi-tax in broad sense reaches approximately 32.4 trillion won, equivalent to adding up social insurance costs borne by business owner's, 20.7 trillion won, Corporation's cost of burden, 11.5 trillion won, and involuntary contributions, 94.3 billion or 357.3 billion won. In narrow sense, overall quasi-tax amounts to about 23.1 trillion won. The total amounts are consisted of social insurance cost of company owners, 20.7 trillion won, corporation's cost of burden, 2.4 trillion won, and involuntary contributions, 94.3 billion or 357.3 billion won.

In a broad perspective, accurate analysis of quasi-tax and its volume could provide the government with significant implications related to management on policies that include future taxation and diverse costs of burden because the examination assures financial burdens other than taxation. In a microscopic viewpoint, on the other hands, suggestion of alternative policy about cost of burden included in quasi-tax is needed. In a case that cost of corporation's financial burden works against its intention, new policy is also required.

The paper intends to address diverse social benefits followed by endeavors on quasi-tax reduction. The tax deduction will ease companies' burdens of taxation that establish better industry favored environment and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In addition, converting expenses discrepant from the traits of cost of burden into tax allows the government to impose tax based on 'no taxation without law' and to determine governmental expenses within allocated budget. As a result, the study anticipates precise causes of taxation and expenditure and improvement of financial transparency.

〈著者略歷〉

손원익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 석사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업의 준조세 실태와 정책방향

2010년 12월 23일 인쇄

2010년 12월 30일 발행

저 자 손원익

발행인 원윤희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전화 : 2186-2114(대), www.kipf.re.kr

등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일지사

인쇄

© 한국조세연구원 2010

ISBN 978-89-8191-504-9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6,000원